

2021 로스쿨 면접대비
必合格
시사 및 예상문제
100선

목 차

[헌 법]

(자유와 평등)

001	평등1(배분의 정의)	2
002	평등2(코로나 19 백신 배분)	4
003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6
004	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 채용 의무화 방안, 청년고용활당제	8
005	기본소득제	10

(민주주의, 정치)

006	개헌(대통령 4년 중임, 의원내각제)	12
007	숙의민주주의	14
008	주민참여 예산제(숙의민주주의vs참여민주주의)	16
009	광장정치	18
010	추첨제 민주주의	20
011	국민동의청원	22
012	국민소환제(주민소환제)	24
013	주민투표(국민투표)	26
014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법	28
015	의무투표제	30
016	데미니 투표(Demeny voting, 가족투표권 제도)	32
017	균중심리(밴드왜건 효과)	34
018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대안(1인 1표 개방명부 비례대표제)	36
019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38
020	외국인의 피선거권	40
021	수형자 선거권(권한과 책임)	42
022	부정부패 무공천법(박원순·오거돈 방지법)	44
023	법관퇴임 후 선출직 또는 중앙행정직에 진출	46
024	국회의원의 복장에 대한 '최소주의적 규정'	48

(기본권, 인권, 생명권)

025	낙태죄 전면 폐지	50
026	잊혀질 권리(자기정보통제권)	52
027	CCTV 설치(수술실 등)	54
028	생명권(선택)	56
029	동성혼(동성애)	58
030	트랜스젠더 군인의 전역처분	60
031	초등학생 성교육 교재	62
032	양심이란, 평화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64
033	병역특례제(BTS)	66
034	모병제	68
035	무함마드 풍자 만평과 부르카 금지법	70
036	베이비 박스	72

037	장기기증	74
038	코로나19 실험용 백신 투여	76
039	비만세	78
040	독신세	80
041	대리모	82
042	김영란법(직무관련성, 불고지죄)	84
043	퍼블리시티권	86

[민 법]

044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88
045	구하라법(민법상 유산 상속 결격 사유)	90
046	친권의 범위	92
047	미성년자 성적 침해(민법 개정)	94
048	부모체벌금지	96
049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자녀 특별채용	98
050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100

[형 법]

051	5·18역사왜곡처벌법(4·3 역사 왜곡처벌법)	102
052	가짜뉴스 처벌법	104
053	기업살인법	106
054	디지털교도소와 배드 파더스	108
055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여부	110
056	법외곡죄(도구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	112
057	박형순 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114
058	사형제도(형사소송법상 6개월 이내 사형 집행)	116
059	성인지 감수성	118
060	소년법(권한과 책임)	120
061	수치심 형벌(신상공개)	122
062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124
063	조두순 격리법	126
064	일수벌금제와 황제노역	128
065	전자보석 제도	130
066	엔(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	132
067	집단휴진으로 인한 사망 책임	134
068	피해자가 반대하는 국민참여재판(강제추행 사건)	138
069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140

[경제(민주화)]

070	공유경제와 공유지의 비극, 제주도 클린하우스	142
071	규제샌드박스	144
072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	146
073	리니언시 제도, 의무고발요청제도	148
074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50
075	부유세와 토지초과이득세	152

076	스튜어드십 코드	154
077	해로운 외부성	156
078	임금피크제	158
079	최저임금제, 최고임금제, 생활임금제	160
080	고용허가제	162
081	가사노동자	164
082	지역화폐	166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083	AI 판사	168
084	로봇세	170

[국 제]

085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172
086	전시작전권	174
087	강제징용배상판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176

[환경과 개발]

088	지속가능한 발전(환경, 노동)	180
089	국책사업과 건강권	182
090	데이터센터 건립(경남, 환경과 개발)	184
091	젠트리피케이션	186

[공공정책]

(일반)

092	블라인드 채용	188
093	혐오시설(남비와 핏비)	190

(교육)

094	국공립대 통합(대학의 자율성)	192
095	인재양성(총부,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	194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096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196
-----	----------------------	-----

(의료)

097	연명의료결정법	198
098	(의사) 국가고시 대응시	200
099	코로나19 구상권 청구	202

(반려동물)

100	반려동물등록세, 반려동물 허가제	204
-----	-------------------------	-----

[헌 법]

(자유와 평등)

001 평등 1(배분의 정의)

A에게는 아들 X, Y와 딸 Z가 있다. X는 10세, Y는 8세, Z는 6세이다. A는 퇴근길에 아이들을 위해 아이스크림을 종종 사갔는데 A의 자녀들은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하여 누가 더 많이 먹었는가를 놓고 다툼이 심하였다. 이러한 다툼에 질린 A는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항상 평등하게 나누어 줄 것을 약속하였다. 이후 A는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각각 1개씩 나누어 주었고, 이후 아이들은 더는 다툼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어느 때처럼 평소 사가던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렀다가, 돈이 부족하여 아이스크림을 2개밖에 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은 값싼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아 값싼 아이스크림을 사갈 수는 없었다. A는 아이스크림을 사가지 않을지(방법 1), 2개만 사갈지(방법 2) 고민하기 시작했다.

[문제] 지원자가 A라면, 평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아이들과의 약속을 고려할 때 위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방법 2를 선택할 경우 어떠한 방법에 따라 2개의 아이스크림을 3명에게 나누어 줄 것인가? (단, 아이스크림을 3등분하는 등의 방법은 제외하고, 3명 중 2명에게만 아이스크림을 줄 수 있다.)

.....
[답변예시]

이 사례는 평등의 문제이다.

평등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로 정의할 수 있다.

'같은 것은 같게'를 형식적 평등이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를 실질적 평등이라 한다.

형식적인 평등은 모든 이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며,

실질적 평등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차등 대우 또는 사회적 환경과 제도에 따른 차등 대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적 환경과 제도에 따른 차등 대우에 있어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역차별의 문제를 안고 있는 법과 제도는 부당할 수 있다.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관용과 분리가 있다.

관용은 역차별의 당사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며, 분리는 권리가 충돌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한편 사회적·역사적으로 특정계층이나 집단에 대해 지속적인 차별이 인정되는 경우,

설령 역차별이 존재한다손 치더라도 반대급부로 그들에 대한 지원하는 법과 제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에서 (방법 2)로 판단하면 2개를 둘째와 셋째에게 주고, 첫째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아이스크림외의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

(방법 1)은 형식적 평등을 의미한다.

002 평등 2(코로나 19 백신 배분)

세계 각국의 백신 확보 노력은 필사적이다. 노골적으로 백신을 사재기 중인 미국은 벌써 5개 제약사와 7억회 분, 3억 3천만 국민 모두가 2번 이상 맞을 수 있는 양을 계약해 뒀다고 한다. 환자가 30만 명을 넘어선 영국, 매일 새 확진자가 1천명 넘게 쏟아지는 일본도 백신에 손을 뻗어, 전 세계에 갈 곳이 정해진 물량은 13억회 분에 이른다.

이런 각축전 속에 과연 한국에 올 백신은 남아있을까.

우리 정부의 1차 복안은 WHO,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백신공급 협의체 코백스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일찌감치 가입한 탓에 인구의 20%, 즉 1천만 명 분의 백신은 보장한다는 약속을 잠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다음 문제는 확보된 백신을 누구에게 먼저 맞힐까이다. 11년 전 신종플루 유행 때는 현장 의료진이 먼저 맞은 뒤 전염력이 높은 초중고 학생에게 접종했지만, 코로나 19의 경우 오히려 고령자 치명률이 높다는 점 때문에 우선순위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

[문제] 본인이 정책결정자라면 다음 보기 중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단, 나이, 성별 관계없이 치사율은 동일하며, 여러 개가 가능하다면 우선순위를 들어 말할 것.)

- (1) 선착순
- (2) 추첨식
- (3) 사회적 기여도
- (4) 사회적 약자 배려

[답변예시]

실질적 평등을 적용하여 (4)-(2), (1)은 배제. 단, 사회적 기여도가 현장에서 치료하는 의료진을 의미한다면 (3)-(4)-(2) 여기서 (2)는 기회균등의 원칙.

003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가) 우리나라에 차별과 관련된 개별법들이 있어 그것으로 충분한 듯 착시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개별법으로는 복합적인 사유로 인한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가 어때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노동 현장의 차별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고용형태, 성별, 연령, 장애, 임신·출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차별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평등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를 지나고 있는 사회에 방역만큼 중요한 것은 감염병으로 더욱 심화된 차별과 배제, 소외를 이야기할 안전한 공간이었다. 차별금지법은 그러한 공간을 열고 넓혀갈 것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재난 상황에서 21대 국회가 차별받고 배제되는 사람을 한 명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의지로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나)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 또는 ‘평등’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핵심은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즉,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제3의 성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징계와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역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차별금지법은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의 해석과 적용에 의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대다수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다. 차별금지법이 적용된 해외 사례가 아래와 같은 술한 문제점과 폐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첫째, (표현의 자유 억압) 동성 간 성행위의 보건의적 유해성 사실 전달, 윤리적 문제 제기,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의견을 괴롭힘과 차별로 간주하고, 이단, 사이비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도 금지한다.

둘째, (급진적 성교육 도입)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성교육을 실시하게 되고, 아동과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과 성전환이 증가하게 된다.

셋째, (국가 안보 약화) 군인 간 동성 성행위를 허용하게 된다. (중략)

수십 가지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입법이 되어 있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 소수의견과 반대의견을 금지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건전한 비판, 논의를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존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위협한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같은 독소조항이 없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반대한다.

[문제] [제시문]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찬반 주장이다. (가)와 (나) 중 하나의 입장을 정하고 다른 주장에 대해 반박하라.

[답변예시]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2조 3항]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사안에서 남아선호사상, 싱가포르의 저학력 여성에 대한 출산 제한은 '합리적 이유'의 차별이라 할 수 없다.

인권은 보편성과 특수성으로 구분된다.

보편적인 영역은 생명과 관련되거나 국제사회의 합의, 또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수락함으로써 확정된다.

성별, 학력, 장애 등에 관한 차별금지 UN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우리가 수락(난민은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우리에게서 보편적 영역의 인권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 국가와 국민은 이에 대해 책무를 지게 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되어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책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선언적). 이에 대한 책임규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일 수 있다.

(나)에 대한 반박논거로서

- 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를 제재하는 것임
- ② 성에 대한 정체성은 자라면서 확립되는 것으로 오히려 교육을 통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동성애와 군의 사기간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004 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 채용 의무화 방안, 청년고용할당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인력채용시에 해당 시·도학교 출신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로 지역인재를 뽑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선발비율을 2020년까지 3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으로, 지역인재란 혁신도시가 있는 시·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고등학교 등 출신을 말한다. 또한 양질의 인재채용을 위해 점수의 하한선 등을 도입하여 제도가 가질 역기능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방안은 적극적 우대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역인재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참고 : 고등학교까지 지역을 나왔으나 서울로 대학을 간 경우 최종학력이 적용되어 지역인재 채용으로 는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문제] ‘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 채용 의무화 방안’에 대해 평가하라.

.....
[답변예시]

지역인재 우선 채용은 수도권 대학생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된다.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인재 지원 가능 범위를 넓히는 게 필요하다. 해당 지역에서 나고 자랐다면 지역인재로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제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청년고용할당제 사건(2013헌마553)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로 재판관 4(합헌) : 5(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되었다. 합헌의견에 따르면 "청년할당제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입법목적에 정당하다"며 "청년할당제는 청년실업을 완화하는 데 다소나마 기여해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고 "청년할당제는 모든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만 적용되고 3년간 한시적으로만 시행돼 불이익을 최소화했다"며 "35세 이상 지원자들이 공공기관 취업기회에서 청년할당제 시행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005 기본소득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5월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8월,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DNC)에서 연설에 나선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 앤드루 양의 발언에 청중석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개인에게 월 1천 달러를 지급한다.’ 바로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이다. 앤드루 양은 지난 2월 후보직에서 사퇴했지만, 자본주의의 심장으로 일컬어지는 미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공론장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의 불안정 노동 체제로는 ‘일자리 = 생존’이라는 등식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을뿐더러, 생태적 위기로 인해 물질적 성장 지향 사회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의 정의는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무조건성’과 ‘정기성’, ‘지속가능성’이 핵심 요소이다.

[문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찬/반 입장을 정하고 토론하라.

[답변예시]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세 가지 점에서 기존 생활보장제도(수당제)와 다르다.

- ① 기본소득은 보편적 보장소득이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모든 해당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이다.
- ② 무조건적 보장소득이다. 즉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 ③ 개별적 보장소득이다. 즉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과 관심이 커지는 이유는 신자유주의의 특징인 불안정노동체제와 금융시장 자본주의(제로섬 게임)의 본격화에서 찾을 수 있다. 좋은 삶을 위해 '소득이란 일한 대가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명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모든 권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명권이나 생존권이다.

모든 사람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자신의 노동력 상품을 팔 수 있다면 큰 문제는 드러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경기 변동에 따라 나타나는 임금 등락은 말할 것도 없고,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아예 일자리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게다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런 경향은 심화된다. 여기에 더해 또 다른 현실은 노동력 상품 판매자가 보통 말하는 '을'의 지위를 차지하며, 이는 노동 과정에서의 소외, 부당한 대우까지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빠지게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권을 박탈당하거나 불안정하게밖에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에 빠질 수 있다.

기본소득은 이런 현실의 논리를 뒤집고, 정치라는 관점에서 모든 구성원의 생존 혹은 생존의 물질적 조건을 보장하는 방도로 제출된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보편적 복지를 의미하며, 수당은 선별적 복지를 의미한다.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대상이므로 역차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본소득이 생명권이나 생존권의 문제라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해도 항상 자원마련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 자원마련은 소득 누진세(부유세)와 토지초과이득세를 통해 충당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대기업이 투자를 이끌어 내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부유세 및 토지초과이득세는 [문 75번] 참고

(민주주의, 정치)

006 개헌(대통령 4년 중임, 의원내각제)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으로 영국의 내각책임제,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 미국의 4년 중임 대통령제 등이 있다.

또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선 임기말 레임덕 발생으로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임기 1년차엔 정부, 내각 인선과 정책 구상이 이루어진다. 2~4년차에 들어서서는 대통령이 정책을 수행한다. 문제는 임기 5년차다. 대선 등 정치 일정과 전현직 교체기로 정국에 혼란이 발생한다. 따라서 국정운영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불안한 상태가 된다. 대통령 4년 중임을 허용하면 임기는 4년+4년이다. 현 대통령의 정책수행이 안정적, 연속적으로 가능해진다. 특히 외교안보나 대북정책처럼 지속적인 정책기조를 상황에 따라 유지해야 하는 분야에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문제 1]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중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문제 2] 대통령 4년 중임제, 현행 5년 단임제 중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답변예시]

[문제 1]

[의원내각제]

우리나라는 내각제가 가미되었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제이다. 물론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의회가 견제할 수 있으나 대통령이 고집을 부릴 때 어려운 면이 있고 더욱이 여당이 다수당일 때는 더욱 그렇다. 다수결원칙인 의회주의에서 여당이 다수당이라면 국가정책이라는 이름아래 대통령의 의지는 거의 견제 없이 시행되던 것이 우리의 헌정사였고 이러한 사례는 민주화에 의한 민선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으며 더욱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했던 노무현 정권에서도 이런 사례는 예외가 아니었다. 민주화 시대에서 그것도 의회가 확고한 견제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있는 것은 국회 의원의 공천권을 당이 장악하고 있고 그 당의 실질적인 권한 자는 대통령이라는 구도로 인한 것이다.

내각책임제는 글자 그대로 내각이 정치 현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치 체제이다.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치현장에 나설 수 없고, 비록 지지를 받아 현장에 섰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지지를 받지 못하면 물러나야 하는 것이 그 원리다. 인기인이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무대에서 내려와야 하는 이치와 같다.

[이원집정부제] 여대야소의 상황에서는 대통령제로,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는 의원내각제 형태로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국정운영의 효율성(정책집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여대야소의 상황에서는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갖게 된다.

[문제 2]

(찬성)

1. 책임성 및 안정성 확보 : 현행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짧다. 이로 인해 대통령은 장기적인 정책보다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정책들에만 매진할 가능성이 높다. 또 정책이 완성되지 않은 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정책의 결과에 따른 책임을 따지기가 힘들다. 또 매번 집권당이 달라지므로 정책의 방향 또한 5년마다 변경되고 이에 따라 이전 정책 폐기, 대북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한 혼란이 심각하다.
2. 장기적 정책 실현 가능 : 현행 대통령제로는 장기적인 정책 수행이 불가능하다. 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지만 초기의 적응 과정과 말기의 레임덕 현상으로 정책 수행 능력이 힘들 것을 고려하면 실상은 약 4년여 정도로 볼 수 있다.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게 될 경우 정책 수행만 잘 한다면 총 8년이라는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대규모 정책 또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반대)

1. 독재 가능성 : 국정 농단 이후 현 정권이 들어서고, 개헌에 관한 주장이 제기된 것은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여 국정 농단과 같은 사건의 발생을 막자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현 정권이 주장하는 대통령 중임제는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초기의 개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비록 선진국인 미국이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중임제를 악용하여 독재를 꾀한 전적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한 제도에 해당한다. 훌륭한 제도라 하더라도 나라마다 나타나는 효과가 다른 것처럼 대통령 중임제가 훌륭한 제도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독재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개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2. 포퓰리즘 정책(떼법, 감성법) 확산 : 대통령을 중임할 수 있다면 대통령들은 본인의 소신은 저버린 채, 선거를 고려하여 여론이 관심을 가지는 인기 있는 정책에만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대통령직을 매우 잘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회는 혼란을 겪게 된다.

007 속의민주주의

- (가) 사회적 합리성 없는 과학적 합리성은 공허하며, 과학적 합리성 없는 사회적 합리성은 맹목적이다. 사회적 합리성과 과학적 합리성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으나 한편으로는 의존하고 있다. 과학적 합리성은 사회적 논의에 관심 기울이고 사회적 합리성은 과학적 논쟁에 근거한다. 사회적 합리성 없는 과학적 합리성은 공허하며, 과학적 합리성 없는 사회적 합리성은 맹목적이다.(울리히 벡, 위험사회)
- (나) 최근 원자력발전소를 운영을 정지해야 된다는 의견에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원자력 사업자는 안전을 위한 시설투자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과학적 합리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 시민단체는 사고의 위험성만을 부각해 과학적 합리성이 없는 맹목성이 느껴지고, 원자력 사업자는 과학적 안전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해 사회적 합리성이 없는 공허함이 묻어 나온다.
- (다)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공론화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은 합리적 공론과 집단지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어 사회갈등해결모델로서 가능성이 제시되었다고 평가되었다. 이번 사례는 한국사회에서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해 시민의 속의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정부가 직접 수용한 최초의 사례로 속의민주주의를 잘 보여준 예에 해당한다.

[문제 1] 사회적 맹목성과 과학적 공허함이 충돌하는 예시를 들고(원전 사례 제외), 그러한 충돌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라.

[문제 2] (다)에서 속의민주주의(공론조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

.....
[답변예시]

숙의민주주의란 단순히 투표(참여민주주의)가 아니라 논변이나 심의와 같은 숙의 과정이 의사 결정에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이다. 이는 단순히 다수결의 원칙(투표)이 아니라 실제적 숙의가 입법 과정의 적법성을 판별하는 중요한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 차별화된다. 오늘날 사이버 공론장의 발달로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숙의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와 충돌한다.

- (1) 민주주의란 국민주권주의이다.
- (2)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써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대의제, 의회민주주의)가 있다.
- (3) 우리나라는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참여민주주의 방식으로 의회민주주의의 보완하고 있다.
- (4) 숙의민주주의(공론화위원회)란 직접민주주의 방식이다.
- (5) 따라서 의회민주주의와 충돌한다.
- (6) 그러나 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국민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다.
- (7) 따라서 신고리 원전의 사례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타당할 수 있다.

[문제 1] 전자주민카드 : 주민 등록증, 인감 증명서, 운전면허증, 의료 보험증, 지문 등과 같은 개인 정보가 IC칩에 한꺼번에 저장된 신분증 대용 카드. 과학적 효율성과 사회적 역기능에 대한 충돌

[문제 2] 우선은 이끌어 낸 합의가 곧 정책결정이 되어야 한다. 논의 당사자들의 전문성, 공감 등(토론의 요건)이 필요하다.

숙의민주주의 vs 참여민주주의는 [문 7번] 참고

008 주민참여 예산제(숙의민주주의 vs 참여민주주의)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한 제도로서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시민 운영위원들의 투표를 거쳐 30% 이상이 득표를 얻은 사업 중 다득표 순으로 사업을 선정하기로 하는 ‘30%룰’을 만들었다. 하지만 위원회 의결 결과, 기존에 배정된 예산 500억에 크게 못 미치는 36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선정되었다. 지자체는 결국 ‘30%룰’을 무시하고 500억 예산 모두를 사용하는 사업을 다시 선정하였다.

[문제 1] 위 사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문제 2] 주민참여 예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겠는가?

.....
[답변예시] 속의민주주의 vs 참여민주주의

현대 민주 정치는 대의 민주제를 기본으로 한다. 즉,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하면, 의회에서 법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하는 의회 민주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국민 투표제와 같은 직접 민주제적 요소로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나 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할 때 외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제한되어 있고, 정치에 대한 시민의 무관심이 심화하면서 국민의 의사에 따른 정치라는 민주 정치 본래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시민 혁명을 비롯한 여러 시민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 정치의 역사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유와 권리의 확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 사실은 시민의 정치 참여가 민주 정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 준다. 최근에 전자 민주주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사안의 쟁점은 주민참여 예산제(참여민주주의)의 결정이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행정기관은 주민위원회(공론화위원회) 등 속의민주주의 기구를 앞 다퉈 만들고 있다. 주민위원회 등은 대의(의회)민주주의의 한계에 대안으로 적극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사안에서처럼 주민참여 예산제의 결정을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유명무실한 제도일 수밖에 없게 된다.

속의민주주의의 성공적 안착은 대의제 주체와의 소통 및 전문성의 보강이며, 속의민주주의를 통한 결정이 곧 결과가 되어야 할 것이다.

009 광장정치

촛불집회는 광장정치의 상징이 되었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진행하는 집회이다. 대표적인 촛불집회로는 1988년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렸던 촛불시위가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한 여중생 추모집회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으며, 2008년 FTA로 인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는 역대 최대규모로 열렸다. 2011년에는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위한 집회를 열었고,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도 있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의 진상 규명을 밝히기 위한 촛불집회가 있었다. 2016년에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염원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린 바 있다.

[문제] 광장정치에 대해 평가하라.

.....
[답변예시]

광장의 요구를 만들어 낸 곳은 정치권이다.

(답변의 흐름) 민주주의란? → 대의민주주의란?(간접) → 광장정치(직접)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 해결방법은 국회의 책임을 복원하는 것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각자의 방식대로 정책결정에 대한 당파성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통치의 역할을 맡은 지도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역할로 해결되어야 할 정치는 어디에 사라져버렸다. 민생법안을 다루고 해결해야 함에도 본연의 정치행위는 뒷전이 되어 버렸다. 즉,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쪽 편을 들어 광장정치에 편승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것이다.

분노에 찬 지지자들의 세 대결은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통합에 시간과 기회비용이 지불될 수밖에 없다. 지지자들을 대리해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광장의 정치를 국회의 정치력으로 복원시켜야 한다. 정치정상화, 사회정상화는 대의제도를 위임받은 국가가 당연한 책임 몫이다. 국민들이 광장의 정치로 나서지 않을 수 있는 소통의 정치와 설득의 정치를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

010 추천제 민주주의

제비뽑기란 권력이 집중되는 곳에 우연성을 도입하는 것이며, 우연성에 의해 권력의 고정화를 저지하는 것이다.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는 매수를 없앨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증대시킨다. 그러나 추천에 의해 뽑는다면 매수라든가 압력 같은 수단의 효과가 사라진다. 물론 전체를 매수해버리면 추천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테네 사람들은 용의주도하게도 그런 위험에 대비해서 매수를 무효로 하는 복잡한 제비뽑기 방식을 고안했다.

추천제는 유능함이 '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시킨다. '선거+추천'의 경우, 무능한 사람이 뽑힐 염려는 없다. 물론 발군의 사람이 뽑히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아니다. 그것보다 무능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마치 유능한 것처럼 행동하는 시스템 쪽이 견디기 힘들고, 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게다가 능력은 다양한 차원에서 존재한다. 음악이나 수학의 천재여도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능한 경우가 많다. 다른 예를 들자면 미국의 대학에서는, 학장은 학무적 업적보다는 경영관리 능력이 있는 비교적 젊은 사람이 뽑힌다고 한다. 그러므로 특별히 존경받지는 않지만 경멸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단지 적격이나 아니냐가 문제인 것이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주목한 것처럼 영국에서는 삼권분립이 성립해 있었다. 물론 삼권분립은 서로 권력을 제한하려고 해온 역사적인 계급투쟁의 결과로 형성된 일종의 균형이고, 따라서 설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삼권분립이라는 생각만으로 삼권분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 권력, 행정 권력, 사법 권력은 분리되어 있어도 결국 하나의 권력으로 수렴되고 만다. 소련 연방의 헌법에 삼권분립이 실린 것은 그로테스크한 우스개라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일본에서 최고재판소가 어떻게 선출되는지, 관청의 사무차관이 어떻게 선출되는지를 보면 된다. 일본에 삼권분립이 있다고 하는 것도 거의 우스개나 다름없다.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그러한 표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삼권분립이 철저하게 실현되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행정이나 사법에서 실시된 제비뽑기였다.

[문제] 선거식 관료선발과 비교할 때, 추천식 관료선발의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라.

[답변예시]

(장점)

추첨제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의 부작용에 대한 대안) : 추첨을 통해 관직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제도를 이르는 말이다. 역사 속에서 추첨 민주주의는 다수 발견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1,000개 이상의 관직 대부분을 추첨으로 뽑았으며, 고대 로마와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도시 공화국에서도 추첨 민주주의의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많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법 배심제 역시 추첨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 볼 수 있다. 2014년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추첨으로 구성된 시민총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선거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가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과 소수 엘리트 집단의 권력 독점을 낳자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첨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추첨 민주주의」의 저자 어니스트 칼렌바크·마이클 필립스는 추첨 민주주의의 장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 ① 추첨을 하면 국민 전체의 구성과 근접한 국회를 구성할 수 있어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 지금처럼 선거 비용을 댈 수 있는 부자, 학벌 좋은 전문직 엘리트, 텔레비전 카메라가 돌아갈 때만 입에 침을 튀기는 '미디어형 인물'이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부터 전업주부까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② 추첨을 하면 부패가 줄어들 수 있다. 입후보하려면 일정 금액을 기탁해야 하고, 선거자금 없이도 운동원을 둘 수 없는 현재의 선거 시스템은 원천적으로 부패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데, 추첨 민주주의에서는 돈과 무관하게 당선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 ③ 추첨 민주주의에서는 사실상 재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는 행위나 소속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수기 역할이 사라진다.
- ④ 누구나 한번쯤은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추첨 민주주의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추첨제는 파벌 싸움이나 특정 세력이 집단을 대표하는 선거제의 부작용이나 한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의 하나로 검토해볼 만하다는 주장이다.

(단점)

비전문가들로 구성될 가능성(중우화)과 비자발적 선발로 행정집행의욕이 결여될 수 있는 점이다.

011 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으로 2020년 1월 9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국민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국민동의청원은 SNS 등을 통해 30일 동안 100명의 찬성을 받아야 청원 내용이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된 날부터 30일 동안 10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국민동의청원의 상임위 심사 기간은 최장 90일이고 시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문제] 국민동의청원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논하라.

[답변예시]

참여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보완책으로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 등이 있다.

사안의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발안의 방법이다.

012 국민소환제(주민소환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소환 투표권자에 속하는 사람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선거권이 있는 자다. 주민소환투표는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일단 확정되면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직위를 상실하며, 그로 인해 실시하는 해당 보궐선거에 후보자로도 등록될 수 없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 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문제] 현재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주민소환제를 지역의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시행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라.

[답변예시]

주민소환제도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주민소환권이라고 한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의 확대 및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이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100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150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0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 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며,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 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그리고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민소환제에 대한 평가] 국민소환제도는 직접민주주의의 중요한 3요소 중 하나이다.(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와 지역의 대표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현 대의민주주의(의회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소환은 대리인에 대한 무능, 부정의, 무기력에 대해 감시 장치로 작동할 것이다.

다만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해선 개헌까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헌법에 국민소환제가 명시돼 있지 않아 국회의원을 국민 전체의 대표로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도록 한 '자유위임원칙'에 충돌할 수 있다고 본다. (자유위임원칙)

1.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의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46조 제2항이다. 위 헌법조항은 "국가가이익을 우선하여"의 표현을 통하여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의원의 지위를,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표현을 통하여 의원직의 행사에 있어서 법적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는 '자유위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국회의원 헌법적 지위의 핵심적 내용은 '전국민 대표성'과 '자유위임'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선거를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대의기관의 자유위임은 대의제의 본질에 속한다. 그러나 국민이 대표자에 대하여 임기 중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만, 대표자의 자유위임은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국민에 의하여 수인될 수 있다. 대의제에서 대의기관은 일단 선출된 다음에는 국민의 현실적 의사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가 국민의 현실적 의사를 무시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의기관이 임기 중에도 그 행위와 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현실적 의사를 '내용적으로' 존중하고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국민이 국가기관을 통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대의제에서 선거에 의하여 획득되는 '형식적 대의'는 임기 중에도 국민의 현실적 의사를 고려하는 '내용적 대의'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이로써 '민주적 대의'의 개념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으로,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와 문답, 반응의 과정이며 국민과의 소통과정이다. 즉, 대의제에서 자유위임은 국민의사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성이 아니라 '의원의 법적 자유와 독립성'과 '주기적인 선거 및 유권자의 여론 형성'에 의한 사실상의 '구속' 사이에서 항상 새롭게 실현되어야 하는 조화를 의미한다.

즉, 국민소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013 주민투표(국민투표)

천안 일봉산공원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30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교통섬에서 일봉산 지키기 주민투표운동 시민홍보단 발대식을 갖는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8일 일봉산공원에서는 '일봉산 주민투표 운동본부' 출범식이 열렸다.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일봉산공원지키기 시민대책위, 천안 및 전국 환경·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다. 이들은 투표 참여 홍보 펼침막을 내걸고, 홍보 전단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 일봉산의 가치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일봉산 주민투표는 오는 21, 22일 사전 투표와 26일 본 투표가 진행된다. 유권자는 일봉산 주변 지역인 일봉·신방·중앙·봉명·청룡·쌍용1동 등 6개 동의 만19살 이상 주민 12만7천여 명이다. 일봉산 주민투표는 민간 사업자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인 일봉산의 약 30%를 개발해 얻은 이익금으로 나머지 70%를 공원화해 기부채납한다는 민간특례사업에 관한 주민의 뜻(찬성·반대)을 묻는 투표다. 찬성이 많으면 개발, 반대가 많으면 민특사업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 투표 대상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하다.

이번 투표는 지난 3일 박○○ 천안시장이 낸 주민 투표안을 천안시의회 본회의가 재적 의원 25명 가운데 찬성 13명, 반대 12명으로 의결해 이뤄졌다. 주민투표안은 지난해 11월 천안시의회 본회의와 지난 2일 상임위원회에서도 부결된 바 있다. 일봉산 민특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보완까지 이뤄져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여서 이번 주민투표는 일봉산을 보전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문제] 주민투표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해 평가하라.

[답변예시]

의회민주주의의 보완책으로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 등이 있다.

사안에서의 주민투표는 참여민주주의의 방식으로써의 의미를 갖는다.

문제점으로는

- ① 주민투표의 결과가 곧 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참여민주주의의 한계).
- ② 또한 투표의 속성상 제3의 의견들이 묵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014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법

여야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4선 연임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일제히 나오고 있다. 윤○○·민○○ 의원은 국회의원 신뢰회복의 계기로 국회의원 4회 연속 당선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공동발의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미래통합당도 정강정책특위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 중이다.

윤 의원은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연임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 역시 “그동안 4선 연임 금지를 지자체장에게만 적용했는데, 늦었지만 국회에도 적용하는 것이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며 “정치 신인의 등장을 돕는 정치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개정안에는 현재 21대 국회 현역 의원은 선수와 관계없이 1회 당선된 것으로 간주하는 부칙이 담겼다.

[문제]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법’에 대해 검토하라.

[답변예시]

(찬성)

3선 이상 의원을 통상 '중진'이라 부른다. 국회의장·부의장은 물론이고 국회의 꽃이라는 상임위·특위 위원장 중진 의원들의 몫이다. 상대적으로 몸이 편해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 자리도 중진에게 먼저 돌아간다.

그러나 중진과 생산성은 비례하지 않는다. 의원 1인당 국회 회의 참석률과 법안 발의 건수는 선수가 올라갈수록 똑똑 떨어지게 일반적이다.

21대 국회의 화두로 떠오른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법'은 아예 4선 의원 등장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다. 3선까지만 하고 국회를 깔끔하게 떠나라는 취지다. 그러나 4선 의원이 사라지기만 하면 '일하는 상생의 국회'가 될까?

4선 연임 제한의 목적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4선 이상 의원을 떠나보내는 대신, 더 많은 정치 신인을 발굴해 국회를 쇄신하자는 뜻이다. 중진 의원들이 의정활동 평가를 보면 고개가 고덕여지기도 한다. 20대 국회의 의원 1인당 법안 대표 발의 평균 건수를 보면, 초선 의원은 61.6개, 재선 80.6개, 3선 47.8개, 4선 43.2개였다. 국회 회의의 평균 결석률도 4선 의원(9.4%)이 가장 높았다.

다선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 또는 숙의하는 과정보다 당내 헤게모니 장악이나 지역구 관리에 더 신경을 쓴다. 따라서 의원 임기 제한으로 공식 순환근무가 실현되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반대)

우선 중진 의원들의 정치 경험과 입법 전문성이 대변에 사장된다. 모든 중진 의원이 '청산 대상'은 아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도 '의원 다선 제한법'은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정치 경력은 33년이다. 미국은 15개 주에서 주의회 의원 임기를 제한하고 있지만, 연방의회 의원 임기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3선'이라는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3선까지 제한한 것에서 따왔다. 기계적 '1대 1 대입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지자체장은 예산권·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왕적 권력을 막기 위해 3선 이상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의원은 다르다"는 주장과 "국가 행정력을 견제하고, 관료 민주주의를 깨기 위해서라도 국회엔 경험 많은 의원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사회정치적 비용 문제도 있다. "보통 국회의원 한명과 그의 보좌진을 공부 시키는 데 1년에 10억 원이 들어간다. 의원이 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발휘할 시기에 임기를 제한하면 국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판단)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인위적인 임기 제한'이 유일한 방도는 아니다. 정당별로 의원 평가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고, 총선 공천 과정에서 실적을 검증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대충 일하다 3선까지 하고 떠나는' 의원들을 양산하기보다 '열심히 일해서 4선, 5선까지 살아 남는' 의원들을 지키는 것이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015 의무투표제

의무투표제는 선거일에 유권자가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세시대 스위스의 시민 의회에 기원을 둔다. 당시 시민들은 칼을 차고 시민의회에 참석하도록 요구받았고, 시민의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칼을 차고 오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무료 만찬을 먹을 수 없었다.

‘민주주의 선거 지원 국제기구(IDEA)’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벨기에·브라질·싱가포르·아르헨티나·이집트·호주 등 26개국이 헌법이나 선거법에 ‘국민은 모두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해 의무투표제를 시행한다. 이들 나라에선 기권 의사가 있는 유권자라도 원칙적으로는 투표장까지는 가야 한다. 투표 불참자에게 소명 요구, 주의, 공표, 벌금, 참정권 제한, 공직취업 제한 등 다양한 제재 조치를 사용한다. 예컨대 벨기에에선 15년 동안 선거에 4번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시민권이 박탈당할 수 있으며, 볼리비아에선 투표했다는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급여 계좌에서 돈을 못 찾을 수도 있다.

의무투표제는 투표율을 끌어올려 유권자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지만, 모두가 다 의무투표제에 대해 찬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쟁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2015년 3월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한 타운홀 미팅에서 “의무투표제는 단기적으로 선거에서 돈의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라면서 “무엇보다 금권선거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모든 유권자가 투표장에 간다면 미국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의무투표제를 ‘강제투표제(compulsory voting)’로 규정하면서 유권자에게 투표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맞섰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는 “투표하지 않는 것, 즉 기권도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택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이 발언이 시사하듯, 의무투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의무투표제가 정치적 선택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강조한다. 기권은 법률로 제약할 수 없는 유권자의 권리인데, 의무투표제는 유권자의 기권할 권리를 박탈하는 비민주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의무투표제의 그런 ‘비민주적 성격’에도 투표율이 현저하게 낮은 한국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의무투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문제] 의무투표제 도입에 대해 찬/반 입장을 정하고 토론하라.

.....
[답변예시]

(찬성)

1. 투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대의민주제를 표방하는 우리정치제도 하에서, 투표는 거의 유일한 참여의 방법이다. 투표하지 않을 개인의 자유를 논하기에는 그 명분에서 투표의 참여의무가 가지는 무게가 훨씬 무겁고 중요하다. 투표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야 한다.
2.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민의의 반영이 가능하다. 저조한 투표율은 필연적으로 민의의 왜곡을 가져온다. 정치인들은 이 점을 악용하여 정책보다는 내 편을 투표장에 끌어오기 바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투표가 의무화되고 투표율이 높아지면 질수록, 진짜 민심이 정치와 정책에 반영될 것이다.

(반대)

1. 국민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민이 주인인 정치제도이다. 항상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제재나 통제의 방식이 아닌 자유의지의 보장이다. 투표를 의무화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이며, 결코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2. 투표율은 정치권의 각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의무투표화는 저조한 투표율에 관한 원인과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저열한 해법이다. 투표장에 국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권의 과제이다. 권한을 제한하는 방식의 의무화 도입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뿐이다.

(판단)

투표는 개인의 권리이며, 투표를 하지 않는 것 또한 권리의 행사라 할 것이다. 권리는 책임과 비례한다. 즉, 기권도 결과에 책임을 지게 된다. 개인의 권리행사를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이다.

016 데미니 투표(Demeny voting, 가족투표권 제도)

- (가) 평등은 사회 경제학적으로 상대적 평등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본다는 말이다. 개인의 능력이 탁월하고 더 중요한 사람으로 평가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더 많은 것들을 부여할 수 있다. 반면 능력이 없고 덜 중요한 사람으로 평가 받는다면 그는 상대적으로 적은 권리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투표에 관해 적용되는 평등의 관점은 다르다. 정치학적으로 선거권에 대해서는 평등을 절대적인 평등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현대사회의 민주주의 국가는 개개인에게 동일한 한 개의 투표권만을 인정한다. 그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여성 남성, 장애인 비장애인 여부와 무관하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투표장에서는 모두 한 표의 평등한 권리를 행사할 뿐이다.
- (나) 가족투표권 제도가 있다. 한 학자가 미성년자의 정치 참여 권리를 주장하며 시작된 논의이다. 미성년 자녀에게 성인과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대신 미성년 자녀의 투표권은 부모가 대리하여 행사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정치에 무관심한 사회 구성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의 투표권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할 지 부모와 논의하며 공적 사안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또 현재 사회의 출산율이 낮고 사회 인구구조가 노령화 되는데 이 제도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투표권이 부여됨으로서 미래세대의 의사가 투표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갈수록 노년층이 늘어나며 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에 표를 던질 때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제도다.

[문제] 가족 투표권 제도에 대해 찬/반 입장을 정하고 토론하라.

[답변예시]

어린이에게 연방 총선거나 주의회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놓고 독일 정치권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자유민주당 신자유주의자 그룹의 클라우스 하우프트, 헤르만 오토 솔름스하원의원 등이 최근 제출한 '가족투표권법안'에 따르면 갓난아이부터 11세의 어린이에게도 투표권을 주되 부모가 이를 대리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2~17세의 청소년은 직접 투표할 수도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독일의 투표 연령은 18세다. 하우프트 의원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 정신에 따라 어린이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현재 독일인 5명중 1명에게 투표권이 없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Demeny voting이라고 한다. 이 아이디어를 제창한 Demeny라는 인구학자의 이름을 딴 것이다.

가족투표권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 투표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국민은 누구나 한 장씩의 투표권을 갖는다.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 정신에 따르면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을 근거가 없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아직 투표를 직접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지 않다면, 그들의 이익과 권리를 대신 대표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대리투표해주어야 한다. 바로, 그들의 보호자, 법적대리인이다. 보호자는 각종 법적인 절차와 행정분야에서 미성년자를 대리한다. 금융 거래, 부동산 거래, 납세, 의료 문제, 교육 문제 등에서는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서 대리 계약을 체결한다. 법적으로 그렇게 허용되어 있다. 이를 투표권에 적용한다고 해도 아무 무리가 없다.

[참고] 현재의 입장 : 2014년 4월, "미성년자는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고 경험·적응능력 부족으로 인해 의사 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거권 제한은 타당하다.

017 군중심리(밴드왜건 효과)

군중은 일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집합이다. 조직화된 집단은 아니지만,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 서로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군중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며 특정 계기를 통해 집합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집합행동이란 다수의 사람이 일으키는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말한다. 대개구성원들의 감정이 개입되면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며 사회 규범에서 이탈한 행동이 대다수이다. 사회문제로 인한 폭동이나 시위,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한 뒤의 즉흥적인 응원 등이 집합행동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상은 선거에서도 나타난다.

[문제] 군중심리에 흔들리고 쉽게 선동되는 문제점에도 선거제도에서 다수결이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의 유효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가?

[답변예시]

군중심리에 따라 대세를 따르는 행위를 밴드왜건 효과(편승 효과)라 한다.

밴드왜건은 서커스 행렬의 선두에 선 악대차를 이르는 말이다. 1848년 미국 대선에서 후보인 재커리 테일러의 선거 유세에서 서커스 악대차를 내세워 군중을 모았던 사례에서 유래했다. 악대차를 본 군중들은 별 생각없이 그 뒤를 따랐으며 이는 선거 유세에 큰 도움이 되었다. 현재도 '악대차에 올라탄다(Jump on the bandwagon)'는 말은 '시류를 타다, 편승하다, 우세한 후보자에 붙다, 유행을 따르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밴드왜건 효과와 같은 군중심리는 다수에 속해있어야 안전하다는 심리에 기반한다. 무리에서 떨어지면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단, 이런 현상은 합리적인 선택과는 거리가 있으며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유도하는 단점도 있다.

군중심리의 가장 큰 이유는 다수를 따르는 편이 이익이 된다는 생각이다.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 선택으로 받는 이익을 (굳이 어떤 이익인지 확인하지 않아도) 나 역시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판단)

군중심리는 남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관찰하여 그대로 맹종하는 우둔한 심리를 말한다. 그러나 이를 우둔하다고 혹은 맹목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칠 수도 있다. 우리가 소위 '대세'라는 말을 쓰는 것은 과연 내가 어떤 편에 속해야 나에게 이득일까를 아주 냉정히 판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어느 '줄'에 서야 나에게 이득일까를 따질 때 당연히 승리하는 쪽으로 평가가 기울어지기 때문이고, 이에 대한 판단은 결국 개인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가짜뉴스 등 불법적인 의도가 군중심리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도 하지만 과연 그런 정도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것도 대세에 따르려는 각자의 이기심의 발로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선거에서의 군중심리도 개인의 이익추구에 의한 판단인 것이다.

018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대안(1인 1표 개방명부 비례대표제)

4·15 총선 비례대표 투표 결과는 비례위성정당을 내세운 여야 거대 정당의 승리로 끝났다. 총선 뒤 준연동형 비례제의 개선 등 선거법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국회에서 통과된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완전히 퇴색된 것이다. 애초 선거법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낸 정당을 제외한 소수정당의 지지표가 모조리 사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구 당선 숫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이를 통해 유권자 표심이 국회의원 의석수에 더 가깝게 반영돼 다양한 군소정당에 원내 진입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에 찬성하지 않았던 미래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꼼수’를 쓰자 여당인 민주당마저 비례정당 창당에 합류했고,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빛을 바랬다.

[문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대안에 대해 검토하라.

[답변예시]

2020년 총선에서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평가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좋지 못하므로, 선거법은 재 개정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1인 2표 투표방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위성정당의 등장을 막기가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1인 1표 개방명부 비례대표제가 있다.

우선 1인 1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위성정당은 원천봉쇄한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정당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까지 고를 수 있는 개방명부 방식을 도입하여, 밀실공천의 문제점도 해결한다.

이런 방식의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실시하여 지역대표성도 확보한다. 즉, 현재 25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권역별 비례대표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광주권역, 대구권역의 비례대표를 뽑아서 지역대표성도 확보할 수 있다. 서울, 경기의 경우에는 5~6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누면 된다.

그리고 현재 47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보정의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로는 당선되기 어려울 수 있는 소수정당은 이 전국 단위 보정의석을 배분받음으로써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개방명부-권역별 비례대표-보정의석 방식은 덴마크, 스웨덴 등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덴마크는 175석(섬 지역에서 선출하는 4석은 제외)의 국회의원 중 135석은 10개 권역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로 선출하고, 40석의 보정의석으로 전국 단위 득표율과 의석 비율을 맞춰준다. 덴마크의 2007년 총선에서 2.84%를 득표한 새동맹(New Alliance)은 권역별로는 의석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보정의석을 통해 5석을 확보했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349석의 국회의원 중 310명은 29개 권역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로 선출하고, 39석은 보정의석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우리도 253석의 지역구 의석을 권역별 비례대표로 전환하고, 47석을 보정의석으로 활용하면, 300석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아도 제대로 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개방명부 방식을 도입하면, 유권자들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다.

지방선거에서도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이 필요하다. 2018년 40~50%대의 정당득표율로 80~90%의 시·도의회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부산시의회 사례는 '세계 최악의 불비례성'을 보여주는 선거이다.

이 선거제도를 방치하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특정정당이 80~90% 의석을 차지하는 사례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광역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하승수 변호사,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

019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연계하여 정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의기제인 정당정치의 실천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정당공천제의 도입 의의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제는 밀실공천, 국회의원과 의 종속관계에 매몰되어 건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2021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시 논쟁이 뜨겁다.

[문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하라.

[답변예시]

(문제점)

- ① 지방자치의 중앙정당에의 예속
- ② 정당공천제로 인하여 유능한 인재의 지방선거 진출기회 박탈
- ③ 정당공천제는 지역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공약과 상관없이 당선되는 구조
- ④ 여러 가지 형태의 공천비리 발생
- ⑤ 기초 지방의회 대립심화 및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가신그룹 전략
- ⑥ 지역주의 및 분열과 대립의 심화, 사회통합에 역행

(개선방안)

- ① 기초단체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극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하루 속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② 기초 자치행정 단위인 시군·자치구 수행업무의 대부분이 행정의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 ③ 자치 선진국화를 앞당겨 국격 상승에 일조하는 시너지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판단)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론자 중에는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이므로 기초단체 정당공천을 없애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타당치 않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란 고대 그리스에서 생겨난 말로서 모든 민중이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민중의 지배, 통치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정당 정치로부터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당이 민주주의 구현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르러 기존정당들은 일반 유권자들의 의사를 충실히 표명해주는 수단으로서나 유효한 정책형성 기관으로서도 불충분한 것으로 인식되어 '탈 정당화시대'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민주주의가 반드시 정당정치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김용채, 한양대학교)

020 외국인의 피선거권

2018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체류외국인은 약 2,320,000명이고,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은 1,220,000명으로 이렇게 점증하는 외국인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그들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으로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등록외국인에게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오랫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선거권만이 아니라 피선거권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들에게 이미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권만이 아니라 피선거권도 부여하고 있다. 이에 국회의원 A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국내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지방의회의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즉, 선거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경과한 등록 외국인에게는 지방의회선거의 피선거권을 부여하려는 내용의 법안이다.

[문제]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들에게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라.

[답변예시]

[헌법] 제25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공무원임권이 있음을 보장하고 있다.

한국 국민의 피선거권은 「공직선거법」 제16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 국적과 연령, 주소지가 피선거권자의 요건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외국인은 영주권 취득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없다.

즉, 사안의 쟁점은 피선거권의 요건인 '국민' 여부이다. 피선거권의 요건을 국민으로 한정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의 문제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권한과 더불어 책임을 요한다. 당시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체류 여부는 보장할 수 없을뿐더러 계속 체류여부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국적국과의 이해충돌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우선하리라는 보장 또한 없다(책임을 지울 수 없다. 예를 들어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사드설치 반대 조례를 입안하려고 할 때 중국국적의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원(광역 & 기초)이다. 즉, 정책입안 및 결정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책임(임기동안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생태문화환경 포함)여야 한다.

021 수형자 선거권(권한과 책임)

각 나라의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 여부

- 호주와 이탈리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
- 미국 연방대법원: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
- 독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관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부가적인 제재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선거권 제한을 선고할 수 있음
- 이스라엘, 스웨덴: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
- 캐나다: 모든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해 오다가 1993년과 2002년 두 번에 걸쳐 대법원의 위헌판결로 현재 모든 수형자가 선거권 부여
-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4년 모든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규정에 대해서 위헌결정
- 유럽인권재판소: 2005년 유럽인권조약상의 핵심적 권리인 선거권을 획일적,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유럽인권조약 제2의정서 제3조 위반이라고 선언
- 영국의 하원의회와 총리: 재소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을 다시 주장
- 프랑스 헌법위원회: 2010년 불법징수죄, 수뢰죄 등 특정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확정 후 5년 동안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 위헌결정

현재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수형자에게는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 논의 중이다.

- (1) 현행법대로 유지
- (2) 1년 또는 3년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 재소자에게만 선거권부여
- (3) 헌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재소자(내란, 외환, 반란, 이적행위 등)를 제외한 나머지 재소자들에게 선거권 부여
- (4) 모든 재소자에게 선거권 부여

[문제] 위 4가지 대안 중 어떤 견해가 타당한지 또는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견해를 제시하라.

.....
[답변예시]

권한과 책임의 문제이다.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경우도 없고 책임만 있고 권리가 없는 경우는 없다.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

정치선거(대통령, 국회의원)의 경우 외국인에게 자국민과 같은 책임을 공유할 수 없으므로 권한부여는 불가하다. 재소자의 경우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소자의 선거권 제한은 선거 임기 기간 중 출소(일정기간 책임)하는 재소자의 경우는 책임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09년 헌재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범죄자에게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책임성과 준법의식을 기르기 위함인데, 선거권 제한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5:4합헌 결정을 하였다.(위헌의견 5명)

여기서 '책임성과 준법의식'이 '선거권 제한'과 어떤 인과관계를 갖는가가 의문이다.

즉, 선거권을 제한하면 책임성과 준법의식이 제고된다는 논거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지스럽다. 수단이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022 부정부패 무공천법(박원순·오거돈 방지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일명 부정부패 무공천법 또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라 불린다.

「부정부패 무공천법」은 ① 강간·강제추행·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죄를 범하였음을 이유로 사직·사망 또는 법원 확정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② 뇌물수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죄를 범하여 법원 확정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정당의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 불가를 담고 있다.

아울러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만둔 경우만 후보자에게 되돌려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환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당선인 때문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면 반환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남은 임기에 비례해 반환하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비용은 1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 ‘부정부패 무공천법’에 대해 판단하라.

[답변예시]

정당 무공천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국민의 피선거권은 어떤 경우이든, 제한규정을 제외하고는 제한될 수 없다. 또한 유권자의 정당 선택권은 제한될 수 없다. 국민의 피선거권은 정당활동으로 표현된다.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공직선거 참여다. 박원순과 오거돈을 각각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공천했던 정당이 책임을 물어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공천을 하지 못하도록 정당에 대하여 제한규정을 두자는 것이나, 그 제한의 피해가 결국 국민의 정당 활동과 유권자 선택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독소적이다.

정당가입이나 활동의 목적은 정치행위를 위한 것이다. 정치행위는 유권자들에 의해 위임받는다고 할 때, 누군가 특정정당 가입을 통해 정치행위를 구현하고자 하는 권리가 제한된다. 우리나라 형법은 범죄행위자를 처벌한 것으로 완료된다. 그 범죄와 상관없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위법하다.

한마디로 피선거권이 제한된 정당이란 있을 수 없다. 또한 유권자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공직선거의 공정성은 후보자의 정당선택권과 후보선택권을 포함한다.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은 유권자의 정당선택권과 공직후보자 선택권과 정당선택권을 사전에 차단하는 문제점이 있다.

법안에서의 정당의 책임은 도덕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남은 임기에 비례해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

선거출마는 공적행위이므로 국가가 비용을 보전해 준다. 사안은 공직선거법의 당선무효형을 받은 당선자의 보전 금액을 반환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범죄행위로 인한 권위에 대한 책임인 것이다.

재보궐선거의 귀책사유가 당선자에게 있으므로 일정 비용을 반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023 법관퇴임 후 선출직 또는 중앙행정직에 진출

“법관이 사직하고 정치권이나 청와대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9월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여태까지 문제가 된 것은 대부분 고위직으로 가는 것인데, 결국 그것이 어떤 관례가 되다 보면 법원장이나 고위 법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예상하고 행동을 그에 맞출 수가 있는 아주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지역 한 부장판사는 “최근 몇 년 사이 정권 교체와 사법농단, 적폐수사 등 여러 자극을 거치며 정치권 진출에 대한 판사들의 인식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다. 몇 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하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요즘은 ‘장려해야 할 일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법관의 청와대 직행을 금지하는 법원조직법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관은 퇴직 2년 안에 대통령비서실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내용이다. 하지만 퇴직 뒤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출마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다.

[문제 1] 법관의 청와대 직행을 금지하는 법원조직법에 대해 평가하고, 법관이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제 2] 홍콩은 판사 재임 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찬성하는가?

.....
[답변예시]

[문제 1]

'법복 정치인'이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판사의 정치권 직행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는 일반론이다. 이번 출마자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 지역구에 출마하기 때문에 대통령 지명을 받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법관 출신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만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의 주장을 펴고 있지만,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판사들이 입법부나 행정부로 직접 진출하는 일이 잦아지면, 사법부는 대통령이나 정당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데려다 쓸 수 있는 인재풀이 돼버릴 수 있다. 법관 경력이 정치권에 진출하는 과정이 되고, 좋은 재판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이며, 삼권분립 또한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법관의 청와대 직행을 금지하는 법원조직법은 타당하며, 국회로의 진출 또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문제 2]

판사는 중립과 공정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의뢰인의 입장을 옹호해야하는 변호사와는 지켜야할 윤리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변호사 개업을 생각하는 법관이라면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일종의 공적 영역에서의 전직금지 약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직금지 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위법하지만 퇴임 후 일정기간 동안의 보상 또는 임기 중 퇴임 후의 전직금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보상으로 퇴임 후 법적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024 국회의원의 복장에 대한 '최소주의적 규정'

국회입법조사처가 2일 발간한 보고서 '주요국 의회의 의원 복장규정'에서 “국회의원의 복장에 대한 ‘최소주의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최근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복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됐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지난 8월 4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원피스 복장으로 본회의에 참석해 논란이 된 것이 배경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복장 규정(dress code)’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국회법 제25조에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규정’이라는 포괄적 조항만 존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에 등원한 의원을 둘러싼 복장 논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으며, ‘정장이 아닌 복장’으로 등원해 문제가 제기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의원 복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가, 논란이 발생하면서 관련 규정이 신설되기도 하고 의장 직권으로 기존 관행을 완화시킨 적도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우리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의 품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의원 복장이 어떤 복장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최소주의적 규정’을 마련해, 국회의 의정활동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복장과 관련해 명문화된 규정을 둔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다.

영국은 2018년 슬로건이나 상업적 광고를 포함하는 복장 및 군복·유니폼을 금지하는 ‘하원 행동 및 예절규범’을 제정했다.

프랑스 하원도 2018년에 개정된 ‘국회사무처 지침’에서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복장은 중립적인 외출복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정 견해를 표출하거나 종교적 상징성을 갖거나 상업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복장은 금지된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 국회는 명문화된 별도의 복장규정이 없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7년 CBS 기자가 민소매 원피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의장 로비 출입을 제지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들이 ‘민소매 입는 금요일(Sleeveless Friday)’ 시위를 벌여 민소매 옷과 샌들 착용이 가능해졌다.

보고서는 “주목할 만한 점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의회가 공통적으로 ‘종교적 상징성·상업적 광고·정치적 견해’를 포함한 슬로건이나 복장을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또 “여성의원의 복장을 둘러싼 논란은 성차별주의 논란과 연계돼 제기됐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 국회의원의 복장에 대한 '최소주의적 규정'을 마련에 대해 평가하라.

.....
[답변예시]

당시 류호정 의원은 핑크색 땡땡이 원피스를 입고 등원했다.

만약에 핑크색이 아니라 회색 계통이라면 논란이 되었을 것인가. 즉, 쟁점은 원피스가 아니고 색상이라는 말이 된다.

그런데 핑크색 땡땡이 한복이라면 쟁점은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가?

사안의 쟁점을 '품위'라는 단어의 불명확성에서 찾을 수도 있다.

그런데 최소주의 규정으로 상업적·종교적 복장을 금한다고 하면, 최소주의 규정이 없어도 해당 복장은 품위위반이었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즉, '품위' 개념이 포괄적이라고 해도 누구나 품위인 것과 아닌 것은 구분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개념의 불명확성도 쟁점이 될 수 없다.

분명 '품위'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든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도덕의 영역이다. 품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정의당의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다. 즉, 모호한 부분은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

(기본권, 인권, 생명권)

025 낙태죄 전면 폐지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11일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로 판결했다. 위헌성은 인정하지만,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대체 법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현행 법률을 유지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개정안을 내놓고 입법예고 했다.

- (가) 정부안에 따르면 기존의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초기(14주)까지 조건 없이 임신 중단을 허용한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임신 중단 시술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전문상담기관이 발급한 사실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또한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거나, 출산·양육을 위한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등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성인 여성도 임신 중기까지(15~24주) 낙태 시술을 허용한다. 기존 모자보건법은 24주 전까지 강간이나 유전적 질환,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서 허용했다. 의사는 시술 전 낙태 관련 설명을 해야 하는 의무를 주며, 자신의 신념에 따라 시술을 거부할 수 있다.
- (나) 한편 산부인과 단체는 정부는 ‘14주 이내’에 제한 없는 낙태를 허용했으나, ‘10주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이필량 이사장은 “임신 10주 이후는 태아의 장기와 뼈가 상당히 형성되는 시기”라며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 시술은)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추후 산모에게 난임, 유산, 조산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한 24주 이내에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반대 의견을 표했다. 산부인과 단체는 최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임신 21~23주에 태어난 이른둥이들을 살려낸 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 (다) 여성계는 정부안 자체가 결국 낙태죄를 존속시키는 퇴행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해서는 조건부 허용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낙태죄 폐지 필리버스터를 열고 6시간동안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문제] 낙태죄 전면 폐지에 대해 평가하라.

.....
[답변예시]

[낙태죄에 대한 검토]

(1)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충돌로 본다면

자기결정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한다. 자기결정권의 근거로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제10조로 보고 있다(헌재결 1990.9.10. 89헌마82).

즉, 자기결정권이란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가 부인되는 것, 사회적 생명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충돌로 보는 것은 생명권과 생명권의 충돌로 해석 가능하다.

이하 생명의 선택으로 논거를 이어가면 된다.

(2) 자기결정권과 생명으로의 발생 가능성의 존중으로 본다면

(1)과 같이 자기결정권 = 사회적 생명권이므로 우선하나, 가능한 발생가능성의 존중을 위해 일정기간 이내라는 단서 내에서 낙태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가능한 충돌하는 가치 또는 권리들을 둘 다 옹호할 수 있는 방법)

이는 임부 건강보호와도 관련이 있다.

[낙태죄에 전면폐지에 대한 검토]

낙태죄 한정위헌 판결에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임신 22주로 보았고, 22주 내까지는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자기결정권 존중).

즉, 22주가 지나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안은 현재의견보다 2주 정도를 더 늘린 것이다.

아울러 24주면 모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충분한 기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에 대한 존중과 모의 건강권을 고려할 때 정부안은 타당할 것이다.

026 잊혀질 권리(자기정보통제권)

‘잊혀질 권리’는 개인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자신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로서, 2012년 유럽 연합(EU)이 ‘일반정보보호규정’을 통해 법제화했다. 2010년 스페인의 변호사가 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처음 그 논란이 시작되었으며, 2008년 독일 복역자의 사례로 인해 오히려 숨기고자 하는 정보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트라이샌드 효과’가 생겨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잊혀질 권리를 보장했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는 공인에 한해 임시조치를 제한하기도 했지만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스트라이샌드 효과란 온라인이나 SNS에 노출된 정보를 숨기거나 삭제하려고 시도하다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며 정보가 확산되는 역효과를 의미하는 말이다.

사진작가 케네스 아델만이 미국의 유명 가수이자 배우인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저택이 포함된 말리부 해안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하자 저택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스트라이샌드가 5000만달러 규모의 법정 소송을 진행했는데, 오히려 이 소송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며 해당 사진이 게시된 웹사이트의 방문자 수가 한 달 만에 42만 명가량 급증한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저택 사진 소송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에는 조회 수가 고작 6회였다.

[문제] 자신의 기사에 대해 포털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한가?

[답변예시]

스트라이샌드 효과는 온라인이나 SNS에 노출된 정보를 숨기거나 삭제하려고 시도하다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정보가 확산되는 역효과를 의미하는 말이다.

잊혀질 권리(자기정보통제권)는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의 사진이나 거래 정보,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유통 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기정보통제권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보장된 권리로서 자신의 기사에 대해 포털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다만 알권리와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규범의 조화로운 해석을 위하여 알 권리가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의 보호범위는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 있다.

우리법원의 입장(서울중앙지법 2007.7.6 2006가합 22413)

- [1] 헌법 제10조, 제17조의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개인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자기정보통제권)를 가지고, 이에 국가 및 사인에 대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해 수집 금지, 열람·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외에 자신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삭제·이용중지 등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포함된다.
- [2] 국민의 '알 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겸유하는 것으로서 자기정보통제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바,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그 정보의 성질상 공공성·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이처럼 두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규범의 조화로운 해석을 위하여 알 권리가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의 보호범위는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3]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고, 어떠한 개인정보가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이상, 나아가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평가, 의견 개진 등도 역시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허용될 수 있다.
- [4] '알 권리' 및 이를 기초로 한 표현의 자유 역시 헌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는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결국 어떠한 개인에 대한 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어 그에 대한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제한되는지 여부는 해당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기본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027 CCTV 설치(수술실 등)

- (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고,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인해 자신의 전문 기술(의술)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
- (나) A 지역에 풍기 문란 및 성매매 근절을 위해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다. 실제로 순찰 효과로 A 지역의 범죄율이 낮아졌다. 그런데 경찰의 인원수가 부족하여 경찰이 순찰을 돌지 못하는 곳이 여전히 존재한다.

[문제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평가하라.

[문제 2] 제시문 (나)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논거하라.

.....
[답변예시]

[문제 1]

의사(병원)의 영업권과 환자의 자기보호권이 충돌하는 문제이다. 원칙은 둘 다 옹호의 방법을 찾는 것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상대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에서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의 권리를 선택해야 한다.

의사(병원)의 영업권의 경우 CCTV 콘텐츠에 대한 접근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보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만 열람가능, 배포 금지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에 대한 신뢰의 측면을 고려해보면 오히려 영업에 이익이 될 여지도 충분하다.

[문제 2]

공익과 사익(사생활 비밀보호)이 충돌하는 문제이다. 원칙은 둘 다 옹호의 방법을 찾는 것

CCTV는 기본권 침해(사생활 비밀보호)의 우려가 있다. 다만, 풍기 문란 및 성매매 근절을 목적으로 하고, 경찰의 인원이 부족하여 경찰이 순찰을 돌지 못하므로 수단도 적절하다(공익).

관련 녹화내용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도 차단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다만, 설치장소에 대한 결정은 이해당사자들(예를 들어 지역주민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야 할 것이며, 콘텐츠의 관리 역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028 생명권(선택)

A는 몽유환자(자기가 몽유병환자인지 모름, 폭탄 던지는 데 이용되는지도 모르는 존재), B는 A의 몽유 습관을 알고 테러행위를 하려는 자, C는 사격선수이고 몽유병환자 A가 그런 습관이 있음을 알고 있는 자이다. B가 A를 이용하여 공동주택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C가 확인한다. C는 A가 몽유병환자임은 알지만 공동주택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A를 쏘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한다. C입장에서 A를 사살하게 되면 A는 죽고 대신 20가구의 사람이 살릴 수 있으며, A를 사살하지 않으면 20가구의 사람들은 죽는 것이 분명하다.

[문제] 이럴 때 C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
[답변예시]

생명의 가치는 경중을 따질 수 없다.

생명을 살리는 것에서 사람의 수가 우선된다면 생명의 공리주의로 치닫게 되고, 극단적으로는 열 사람이 살기 위해 무고한 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사안에서는 A를 살릴 방법이 없다.

따라서 A를 쏘아야 한다.

[참고문제]

두 사람과 한 사람이 각각 물에 빠져 있다. 시간상 구조는 한 쪽만을 구할 수 밖에 없다. 어느 쪽을 구할 것인가?(단, 숫자 외에 다른 상황은 동일하다)
--

(답변) 생명의 가치는 경중을 따질 수 없다. → 랜덤

029 동성혼(동성애)

- (가)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동성부부에게 입양된 아이들이 남녀 양부모를 만난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잘 자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샤를로트 패터슨 박사팀은 각자 다른 지역에 사는 초등학교 입학 전의 입양 아동 106명을 살펴봤더니 아이들은 양부모가 게이든, 레즈비언이든, 이성애자이든 상관없이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가 긍정적으로 성장하는지 여부는 양부모의 성적 정체성이 아니라 이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었다.
- (나) 최근 한국 교회의 여러 주요 교단에서 동성애를 이단으로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2017년 예장 합동 총회는 퀴어성경주석 번역 발간과 관련된 임○○ 목사에게 대해 “집회 참석 금지”로 결의했으나, 예장 합신 총회와 백석 대신 총회는 이단으로 결의했다.

[문제] 동성혼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고, 논거를 밝히라.

.....
[답변예시]

(동성애에 대하여)

인권은 보편성과 특수성으로 구분된다.

보편적인 영역은 생명과 관련되거나 국제사회의 합의, 또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수락함으로써 확정된다.

성별, 학력, 장애 등에 관한 차별금지 UN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우리가 수락(난민은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우리에게서는 보편적영역의 인권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 국가와 국민은 이에 대해 책무를 지게 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되어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책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선언적) 이에 대한 대안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2조 3항] [문 39번] 답변예시 참조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은 '합리적 이유'의 차별이라 할 수 없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주장에 대한 재반박)

- ① 종교적 이유이다. 이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한다. 정교분리의 원칙이란 정치의 이름(이념, 이데올로기)으로 종교에 개입해서도 안되며, 종교는 종교의 이념(교리 등)으로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된다(정치적 의견 표명은 당연 가능)는 의미이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하고 있다.
- ② 질병이다. 그러나 동성애가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일반화 할 수는 없다.(에이즈의 경우, 동성애과 이성애의 발병비율 유사)
- ③ 교육이다. 성정체성의 형성은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비로소 갖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 ④ 사회적 정서이다. 우리는 이미 물리적 변화를 전제하고 있지만 성의 전환은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은 사회적 합의의 반영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정서는 성적지향에 대해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성혼에 대하여)

쟁점은 가정에게 보장되는 사회적 권리이다.

전통적인 혼인의 생물학적 목적은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혼인=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이라는 공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만약 혼인이 생물학적 목적 달성이라면 출산을 하지 않는 가정에게는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출산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다.

아울러 가정이 갖는 사회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입양, 상속 등)

2015년, 미국도 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을 하였다.

(참고사례) 고등학교 졸업 이후 40년간 동거한 두 여성 중 일방이 암 질병으로 입원하고 치료를 받게 되자, 법률상 가족이 아닌 일방은 상대방 조카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간병도 못하게 되었고,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났으며, 절도죄로 고발당하는 등 온갖 수모를 당했다. 결국, 60대 여성은 평생 동거해 온 상대방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한 채 지내다가 뒤늦게 상대방의 사망소식을 접하고, 자신이 살던 아파트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2013년 10월 31일)

030 트랜스젠더 군인의 전역처분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육군에서 강제전역된 변희수 전 하사가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변○○전 하사는 복무 중이던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귀국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변 전하사의 전역 결정을 내렸다.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기 상실을 장애의 일종으로 봤기 때문이다.

군인사법의 심신장애 등급표는 귀두부를 완전히 상실했거나 양측 고환이 모두 결손됐을 경우 각각 장애 5등급에 해당하며 장애 5등급이 2개인 사람은 심신장애 3등급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본인의 의사가 아니더라도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변 전 하사는 장애 판정을 받고 군에서 전역하게 됐다.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21개 단체가 모여 만든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변 전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이 밝힌 전역 사유는 성확정 수술 단 하나다. 본인의 성적 정체성을 추구하기 위한 치료 행위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위헌적 판단”이라고 짚었다. 앞서 6월29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문제 1] 사례의 전역처분에 대해 판단하고, 여군 복무를 희망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도 평가하라.

[문제 2] 현행 입영제도에서 트랜스젠더는 입영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이에 대해 평가하라.

[답변예시]

[문제 1]

쟁점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점이 '신체장애'로 해석될 수 있는 지이다.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성전환수술을 장애로 보고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처분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들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대법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군인사법에는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으며 지난해 1월에는 심신장애의 사유가 되는 장애가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지 않는 경우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다.

한편 2006년 유방암으로 양쪽 유방을 절개해 전역조치 당했던 육군이 승소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원고가 기존 임무를 무난히 소화해 업무에 지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현역으로 복무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398 판결)

[문제 1, 2]

또 다른 쟁점은 군은 트랜스젠더를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변 전 하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전역 처분이 취소된다면 여군으로 군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지난 2월 변 전 하사에 대한 성별 표기 정정을 허가했다. 현재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다. 따라서 변 전 하사가 여자 군인으로 복무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성전환자의 입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른바 신체검사 규정 때문이다. 현재 군은 트랜스젠더를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사실상 입대를 제한하고 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동성애, 성전환과 관련해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하고 있다. 7급 판정은 흔히 말하는 재검 대상이다.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병역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재검에서도 다시 7급 판정이 나오면 전지구로역으로 편입된다. 사실상 현역 입영 불가 판정이 내려지는 것이다.

다만 이런 규정은 입대 전 병역 적합 판정일 뿐이다. 변 전 하사와 같이 이미 입대해 복무 중인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변 전 하사 측이 여군 복무를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현역 적합 판정을 받고 복무 중이었던 만큼 장애 인정이 취소된다면 여군으로의 전환 근무도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환 근무시 여성 군인들과의 군 생활과 같은 현실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 올해 초 숙명여대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의 입학 반대 의견이 거셌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현실적 측면은 해결할 방안을 찾으면 될 것이다. 따라서 법적 타당성을 갖췄다면 여군으로의 복무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입영 불가 판정을 내리는 현행 입영제도를 대체복무 형태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성정체성에 대한 문명사회적 판단일 것이다.

031 초등학생 성교육 교재

11일 구로구청 산하 구립도서관 9곳은 여가부가 초등학생 성교육 교재로 선정한 ‘나다움을 찾는 어린이책’ 7종을 지난달 28일 모두 대출 금지했다. 현재 이 책들은 도서관 누리집에서 검색되지 않고 도서관의 일반 서가에서도 빠진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노원평생학습관도 최근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등 5종의 대출을 금지했다. ‘민원이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나다움 어린이책 사업은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성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성관계와 출산을 설명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등은 “내용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동성 간의 사랑을 비롯한 여러 사랑의 모습을 설명한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등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노원평생학습관 관계자는 “공공도서관은 누구나 타당하다고 보는 책을 소장하는 곳”이라며 “다른 작가들이 ‘도서관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할 것 같다’고 알려왔다. 책 내용이 동성애 편향적이고 그림이 노골적이라 따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구로구 관계자도 “선정적인 책이 있다”는 민원들이 들어왔다. 공개 여부를 검토하려 검색을 막았다”고 밝혔다.

공공도서관이 특정 도서의 검색이나 대출을 막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 공공도서관 사서는 “책이 훼손돼 수리하거나 시스템상 등록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 불가로 돌려놓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도서를 펴낸 한 출판사의 편집장은 “공공도서관이 고작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권과 성을 가르치는 책을 ‘금서’로 막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혐오세력의 논리에 무릎 꿇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문제] 사안의 쟁점에 대해 논하라.

[답변예시]

성문제는 윤리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제시된 책의 내용이나 삽화들이 거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정확한 성지식의 전달이 없을 경우 음지에서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경우의 사회적 비용이 더 클 것이다.

예전 세대가 받던 월경교육, 순결교육 중심의 성교육이란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월경교육은 매너와 위생의 문제였으며, 순결교육은 성정체성이나 성행위의 사실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피임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인권교육이 성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어른들은 성교육을 부끄럽게 여긴다. 그러나 성에 대해 올바르게 교육 받지 못한 아이들은 호기심에 인터넷을 포함한 각종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이는 왜곡된 성 인식을 갖는 원인이 된다.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성교육이 중요한 까닭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유아동 성교육이 가장 잘 이뤄지고 있는 나라로 꼽힌다. 덴마크에서는 1971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성교육이 의무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덴마크에서 1971년에 출간되었고 우수교재로 선정되었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성교육에 대해 보수적으로 움츠러들고 있는 반면, 유럽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선진화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정확한 성교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부모님이 아이들과 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아이들이 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갖는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성 인식을 형성하는 데 정말 중요할 것이다.

구립도서관에서 해당 도서의 검색이나 대출을 막는 것은 과거로 역행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성교육의 중요성을 볼 때 오히려 공론의 장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032 양심이란, 평화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가) 검찰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화 예매 내용이나 위치정보까지 확인하는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 ㄱ씨는 최근 검찰이 영화관과 인터넷 웹하드 업체 등에 그가 예매한 영화와 다운로드받은 자료 조회를 요청한 것을 알게 됐다. 폭력적인 영화를 본 것을 병역거부의 진정성이 없는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 검찰이 요청한 것이다. 실제로 한 대형 영화관은 그가 예매한 영화 내역을 검찰에 무더기로 제공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변호해온 김모 변호사는 “교회를 몇 번 갔는지 여부로 한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으며, 영화를 어느 선에서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냐”며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하고 양심의 자유를 강조한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이렇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인권운동가들은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병역거부자 신상털기식 수사가 강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종교 또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무죄로 선고하며 판별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서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고 정의한 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재판에서 영화나 게임 다운로드 내역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위치정보 열람도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맡았던 한 변호사는 “교회에 실제로 갔는지 등을 확인하려고 위치추적을 하는데, 최근 들어 꽤 많은 사건에서 위치추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라고 비판했다. 교회에 갔던 시기가 불확실할 경우, 몇개월에서 1년 등의 단위로 광범위한 기간의 위치정보를 조회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피고인의 행적이 모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병역거부자의 폭력성을 판단하기 위해 대부분의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의 ‘전쟁 게임’ 접속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나) 종교가 아닌 평화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가 법원에서 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를 판단하면서 종교적 신념과 비종교적 신념을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된다고 느낄 정도라면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종교적 신념이든 비종교적 신념이든 양심적 병역거부 심사는 차별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념이 상황에 따라 타협적, 전략적으로 변한다면 진정한 양심이라고 할 수 없다”는데, 홍씨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과거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지 고민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2016년 12월 홍씨가 병역 거부를 결심하기 전의 상황을 양심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또 당시 홍씨가 낸 병역거부 소견서에 담긴 홍씨 신념도 평화주의보다는 권위주의에 대한 반감에 가깝다고 봤다.

[문제 1] 대법원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라고 양심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의 문제점은 없는지 평가하라.

[문제 2] (가)에서 검찰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위치정보 확인, 전쟁게임접속 등의 수사방법에 대해 평가하라.

[문제 3] (나)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
[답변예시]

[문제 1 2]

현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단에서 양심이란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 대법원은 양심 판단 기준을 깊고, 확고, 진실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이 제시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한다는 기준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병역거부는 형사적 책임을 지우므로 관련 규정은 명확해야 한다.

당초 현재는 양심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을 것이며, 이는 대법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현재의 양심에 대한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는 것은 인격내면의 소리로 추상성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의 깊고, 확고하며, 진실함의 정의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검찰은 어느 정도를 깊은 것이 양심인지, 확고한 행위란 무엇인지, 진실이란 개념상 일말의 거짓이 없는 100%의 상태를 이르는데 이를 사람의 행위에서 추론할 수 있을 것인지 등, 양심을 개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례에서 교회를 몇 번 갔는지,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영화를 보는지, 전쟁 게임을 얼마나 즐기는지 등이 과연 양심을 개량할 수단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다.

종교적 신념이란 장기적으로 내면화될 수도 있지만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심에서 종교적 이유는 필요조건일 뿐이다. 양심은 일반적 병역거부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양심이란 단어를 빼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일반적 병역거부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모병제가 그 해답이 될 것이다.

[문제 3]

사례에서 재판부는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된다고 느낄 정도라면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종교적 신념이든 비종교적 신념이든 양심적 병역거부 심사는 차별없이 이뤄져야 한다."데에 의미가 있다. 즉, 양심 =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다. 향후 평화적 신념도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적 병역거부는 양심의 발로라고 할 수는 없는가? 논리대로라면 일반적 병역거부(그냥 가기 싫어)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모병제 도입이 논의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도 이 때문이다.

033 병역특례제(BTS)

우리나라에서 병역특례제도가 시작된 것은 1973년부터다. 특혜가 주어지는 만큼 말도 많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자 이들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이탈리아와의 8강전이 열리기 전날 병역특례 결정이 내려졌다. 2006년 월드컵베이스볼챔피언십(WBC) 때도 한국이 3위에 오르자 기준을 바꿔 이들에게 병역특례를 줬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는 야구대표팀 선수 24명 중 13명을 군 미필자로 꾸려 병역면제를 노린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바둑기사 이창호 9단은 정부가 바둑을 체육특기자 종목에 넣는 묘수를 내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68조 11항은 병역특례 대상을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외 예술경연대회나 올림픽·아시안게임 등에서 1~3위로 입상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돼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이수하고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하지만, 복무 기간에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BTS) 병역면제 논란이 뜨겁다. 지난달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면서다. K팝의 주역인 BTS에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찬성론자들 주장이다. 형평과 공정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BTS의 병역특례 공론화를 주장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논란이 격화되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민이 보기에 편치 못하고 본인도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해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 문제에 대해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이유는 예체능 분야 병역특례의 명분인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이란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BTS처럼 새로운 대상자가 거론될 때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병역법에 따르면 대중가수가 병역특례를 받을 방법은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병역특례 대상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제] BTS의 병역특례를 허용해야 하는가?

[답변예시]

우리나라 병역법에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에 대해서 병역특례를 주고 있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해당 분야에서 2년 10개월의 의무 복무를 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처리 된다. 일명 체육계와 예술계의 '국위선양'이라는 명목으로 주어지는 병역 특례 제도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 ① 명확성의 원칙 : 포상규정은 징벌 규정과 마찬가지로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국위선양'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다.
- ② 현대적 시각 : 과거,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려야 하는 국가의 위상을 높임에 포상했던 점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국격은 과거와 다르다.
- ③ 형평성의 문제 : 국가의 위상 제고를 인정하더라도 그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 ④ 개인의 문제 : 대표적으로 스포츠에서 금메달을 따려고 노력하는 것은 개인의 영역이다. 학업 1등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미 개인적 보상은 이루어졌으며, 국가가 병역면제로 포상할 이유가 없다. 즉, 역차별에 해당한다.
- ⑤ 금메달과 은메달 및 동메달은 국가위상 제고에 차이가 있는가?
- ⑥ 포상으로 병역특례가 주어진다는 것은 '병역을 좋지 않은 것(또는 군은 일종의 징벌)'이라는 선입관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특례제를 없애는 것이 국민적 정서에 맞을 것이다. 또는 폭 넓게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점수제 등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병역특례는 군을 '가고 싶은 곳'으로 전환해야하는 과제를 시사하고 있다. 즉, 일반적 병역거부의 폭넓은 수용(대체복무) 및 모병제로의 전환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034 모병제

현재의 군 모병 체제인 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KBS 1TV 시사프로그램 '시사기획 창'과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12명 중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한 이들은 61.5%에 달했다.

반면 '모병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21.8%로 찬성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모병제 찬성 이유로는 전문성을 높여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답변이 32.9%로 가장 많았다. 인구 감소를 대비한 병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21.8%로 뒤를 따랐다.

모병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남북 대치 상황(33.4%)을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지원자가 많지 않아 모집이 어려울 거란 응답(28.4%)이 뒤를 이었다.

[문제] 모병제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하고 논거하라.

[답변예시]

양심은 평화적 신념을 포함하여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기존의 추상성에 대한 딜레마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양심적'을 제거하는 것이다. 즉, 일반적 병역거부도 대체복무를 인정해주는 것이 양심을 옹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과거 다른 현저한 전쟁위험의 감소 및 군사수가 아닌 현대전에 걸맞는 국방으로의 탈바꿈의 상황과 맞물려 모병제 도입의 주장이 정당성을 획득한다.

(TIP) 모병제에 드는 비용이나 군의 현대화에 드는 비용 등은 모병제를 반대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런 조건이 부족하면 애당초 모병제라는 단어를 꺼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즉, 모병제 도입의 정치·경제적 요건은 갖춰짐을 전제로 한다.

[모병제]

① 장점 : 자기결정권 존중(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해결)

② 단점 : 양극화(가난한 자에게만 국방의무를)

[모병군인들에게 인센티브]

- 미국 : 제대군인 및 상여군인에게 가산점 부여
- 독일 : 전역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신분 변경 가능
- 프랑스 : 군복무기간 중 1/3을 교육을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정부부처 공무원의 10%를 의무적으로 전역 군인으로 채용
- 대만 : 공영기업 채용시 제대 군인 우선 채용

모병제도입의 가장 큰 관건은 군을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① 충분한 보수, ② 사회적 경력단절 문제의 해소, ③ 역차별이 없는 사회적 인센티브 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035 무함마드 풍자 만평과 부르카 금지법

(가)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2015년 11월 26일, 프랑스의 공립 병원이 직원에게 이슬람교 여성들이 쓰는 머릿수건인 ‘히잡’ 착용을 금지한 것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0년 프랑스 낭테르의 공립병원 직원인 한 무슬림 여성은 히잡을 쓰고 근무했다는 이유로 근로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당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그녀가 히잡을 벗지 않고 일한다고 병원 측에 항의했다.

프랑스에서는 세속주의 원칙에 따라 공무원 등 공공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직장에서 종교적 표시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종교별로 인구를 조사하지 않고 있으나 전체 인구의 약 8%인 500만 명가량이 무슬림으로 추정된다.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눈만 내놓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이슬람교의 니캅이나 눈 부위까지 망사로 덮어 몸 전체를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도 금지하는 ‘부르카 금지법’이 2011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나) 지난 16일 프랑스 파리 북부 콩플랑 생토로린의 한 거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학교 교사 사뮈엘 파티(47)은, 지난 5일 사회 수업시간에 언론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가 무함마드를 풍자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보여 준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가 수업교재로 사용한 ‘무함마드 풍자 만평’은 이미 5년 전 12명이 숨진 참사를 불러왔던 그림이기도 하다.

해당 만평은 지난 2006년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에서 게재했던 것으로, 이슬람 선지자인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해당 잡지사는 끊임없는 보복 협박을 받았고, 2015년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총기난사를 벌여 편집장 등 12명이 사망했다.

[문제] 사례의 종교적 갈등의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답변예시]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은 단순히 웃음을 주기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 프랑스에는 500만 명이 넘는 무슬림 인구가 있다. 또 과거 제국주의 시절, 프랑스는 북아프리카지역을 식민 지배했던 아픈 역사까지 지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내에서의 무슬림과 반무슬림 세력간의 긴장을 높이고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할 필요가 있었을까. 〈샤를리 에브도〉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사실은 무슬림들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여기에는 문화적 시각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쪽 사회에서는 당연시 되는 것도 문화나 역사가 다른 저쪽 사회로 가면 금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들이 숭상하는 신(알라)의 예언자인 무함마드를 천박하게 조롱한 만평이 프랑스에서는 웃음거리가 되지만, 이슬람 세계에서는 분노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무슬림에 대한 풍자와 조롱이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일 수 있지만,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된 무슬림들은 그것을 도발이라고 생각했을 것이 뻔하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전 범들을 합사해놓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나 중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끈하는 것 과도 같은 이치다.

물론 이러한 배경이 극단적인 테러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옹호와 변호가 될 수는 없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함부로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의 절대가치다. 또 조롱과 풍자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구사하는 핵심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조롱과 풍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를 폭력으로 억누르려 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열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쏘 죽이는 것과 교사를 참형하는 만행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은 다민족 국가로써 19세기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공존하는 풍토에서 극단화된 민족주의로 치달으면서 양립불가의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개인의 존엄성은 소멸되고 개인은 집단을 위한 도구로 판단하는 비인간적인 집단주의적 사고가 우세하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바로 이것인 것이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양심이나 종교(종교의식이 아닌 내면적 믿음)의 자유처럼 절대적인 자유는 아니다. 국가안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받을 수도 있다. 이에 비해 문화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상하와 우열이 있을 수 없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일 뿐이다.

사례의 해결방법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공존의 사회적 풍토를 회복하는 것이다.

036 베이비 박스

- (가)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아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산모는 실제로 갓난아기를 혼자 키우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이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30분쯤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이불에 쌓여 있는 아이 사진 2장과 함께 중고 거래 앱 서귀포지역 카테고리에 올라왔다. 특히 이 글에는 아이 입양가격으로 ‘20만원’을 책정했다. 이 글의 게시자 A씨는 아이 아빠와 자신의 부모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본인도 별이가 없는 상태라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 후 친권 포기를 통해 아기를 합법적으로 입양 보내는 절차를 밟아왔던 A씨는 출산과 산후조리 중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입양 기관 상담을 받고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려 이런 게시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 (나) 베이비 박스는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자를 뜻한다. 자칫하면 거리에 버려질 영유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국을 비롯해 호주, 벨기에, 체코, 헝가리, 일본 등도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방치되는 영유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의 시각이 있고, 아기를 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반대의 시각이 있다.

[문제 1] 사례 (가)에서 쟁점은 무엇인가?

[문제 2] 사례 (나)의 베이비 박스에 대해 찬/반 입장을 정하고 논거하라.

[답변예시]

2012년, '아이를 입양 보내려면 반드시 출생등록을 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기록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이를 몰래 버리는 경우가 오히려 크게 늘었다.

(나)의 베이비 박스는 아기를 길거리에 버리거나 마트 백화점 화장실 등에 버려 목숨을 잃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곳에 두고 가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입양특례법 이후에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은 확연히 늘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2015년 입양특례법은 다시 개정되었고, 낳은 부모가 아니더라도 입양기관의 장이 가족관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입양된 아기가 자신의 뿌리를 언제든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례 (가)에서 보듯이 입양절차는 여전히 법적 약자들에게는 까다롭고 심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절차가 되고 있다.

베이비 박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찬/반의견이 있다.

(찬성)

1. 유기되는 아이들에 대한 생명보호가 가능하다.
2. 산모의 익명성 보장
3. 유기했음을 알기 때문에 다시 아이를 만날 수 있다.
4. 임신중절을 낮출 수 있다.
5. 영아유기에 대한 양성화가 가능해짐(정부, 민간의 도움)

(반대)

1. 생명유기를 조장한다.(언론에 알려진 이후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유기하는 사건이 급증)
2. 아이의 근원이 불분명해진다.
3. 인식개선이 우선이다.(성, 피임,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

헌법 제3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즉, 베이비박스에 대한 찬/반 논거에 앞서 사례 (가)의 모의 고통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037 장기기증

- (가) 2017년, 1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신장과 간장, 췌장, 심장, 폐 등의 장기기증자는 2012년 2555명이었다가 2013년 2422명으로 줄어든 뒤 2014년 2476명, 2015년 2567명, 2016년 2865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12년 409명, 2013년 416명, 2014년 446명, 2015년 501명, 2016년 573명으로 늘었다.
- 하지만 장기나 인체조직을 이식받으려고 대기하는 환자규모와 비교해서는 절대적으로 모자란게 현실이다. 이식대기자는 2012년 2만2695명, 2013년 2만636명, 2014년 2만4607명, 2015년 2만7444명 등에 이어 2016년에는 3만286명으로 3만명을 넘었다.
- 이러한 장기기증을 기다리며 죽음을 맞이하는 수는 증가하는 것이 불법적 장기매매의 원인인 것이다.
- (나) 장기매매 합법화를 둘러싼 찬반양론은 거세다. 찬성론자들은 법의 규제가 오히려 장기 암거래를 부추기고 있으며 정상적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증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장기매매가 합법화될 경우 기증자나 이식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국립장기이식센터(KONOS)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2년 9월 현재 국내 장기이식대기자는 1만29명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올해(2020년) 들어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 1,224건, 뇌사자 장기이식 124건, 사망자 각막이식 69건 등 수요에 반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도 장기 밀매가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인터넷 사이트와 병원화장실이나 지하철 등에서 은밀하게 장기를 제공하겠다고 밀매매를 알선한 브로커들이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 1] 장기기증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이 있는가?

[문제 2] 이종장기이식에 대해 평가하라.

[문제 3] (나)의 장기매매 합법화에 대해 평가하라.

[답변예시]

[문제 1] 본인 동의(의사추정도 가능)

뇌사자뿐 아니라 병원 내에서 사망해 심장 기능이 정지된 환자의 경우 사전에 본인과 가족의 동의가 있었다면 사후에 곧바로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에는 이와 관련된 법령이 완벽하게 정비돼 있지 않다. 윤리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가령 심장이 멈춘 환자의 경우 어느 시점을 '사망'으로 규정할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 사망 선고 시점을 조금 늦추면 장기는 쓸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유족의 정서를 감안하면 너무 이른 시점에 사망 선고를 내릴 수도 없다.

장기기증을 독려하는 방안으로 위로금을 들 수 있다. 가족이 감당할 병원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2016년 희생자의 송고한 뜻을 훼손할 수 있고, 장기매매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180만 원을 지급하던 위로금을 폐지했다. 다시 위로금(병원비 등으로 사용)을 부활시키는 것이 현실적 대안일 것이다.

[문제 2]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도덕성은 사람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며, 효율성은 사람으로서 살아남는 것을 의미한다.

(찬성)

① 장기기증을 기다리며 죽음을 맞이하는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효율적 방법이다.

② 아울러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은 현실의 죽음을 벗어나는 것보다 가치있다고 볼 수 없다.

(반대)

- ① 안정성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인간에게 동물 장기를 이식한다고 할 때, 첫 번째 떠오르는 동물은 아마 침팬지일 것이다. 이종이식 시술 초기에 침팬지를 많이 사용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침팬지는 계통상 인간과 가장 가까운 종이다. 그런데 현재는 침팬지는 동물실험 단계에서나 사용되지 이식용 장기의 공급원으로 침팬지를 염두에 두고 연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종전염(xenozoonosis)의 위험성 때문이다. 이종전염이란 인간에게 치명적인 병원균이나 바이러스가 동물의 신체 조직이나 장기를 통해 인간에게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다른 동물, 예컨대 침팬지에게는 무해한 바이러스가 이식과 더불어 인간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전염병을 유발한 가능성이 연구자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 대표적인 사례가 후천성면역결핍증(HIV) 바이러스이다. 침팬지 몸에서 침팬지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던 리트로바이러스가 인체로 옮겨오면서 변이를 만들어낸 것이 HIV 바이러스이다. 이런 이유로 침팬지는 이식용 장기의 공급원에서 일찌감치 제외되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돼지이다. 돼지의 장기는 인간의 것과 크기가 비슷하며, 돼지는 사육기간이 짧고 사육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돼지의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실험실 조건에서 인간의 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1997년에 밝혀졌다. 많은 돼지들이 보유하고 있는 PERV(Porcine Endogenous Retro-Virus)를 보유한 돼지 세포를 같은 접시의 인간 세포 옆에서 배양할 때 인간 세포가 감염되는 결과를 낳았다. 돼지의 PERV가 질병을 유발한다는 보고는 없지만 인체에 흘러들어온 PERV가 어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 ② 이종 이식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종이식 연구에 막대한 사회적 자금이 투입되지만 막상 이종장기 이식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특정한 계층에 편중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또한 이종이식이 장기 이식자 개인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행위로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의 건강에 잠재적인 위험을 가중시킬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이런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동물 장기의 인체이식을 실현하기 전에 이 위험 요인을 완전히 제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종 이식은 인간 전체의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험과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 3]

이렇듯 이종장기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현실적인 대안은 공적 영역에서의 장기매매의 합법화 밖에 없다. 미국에 이어 영국정부가 장기기증의 일부 유료화 방안(장기매매 합법화)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올해 초 미국 정부가 이식장기 부족현상에 대처키 위해 인체장기 및 조직매매 합법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장기이식이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는 이로 인해 야기될 사회문제를 고려, 장기이식은 합법화 하되 상업적 이용은 법으로 금지시켜 놓은 것이다.

영국은 1989년 "인간장기이식법"을 제정, 장기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해 왔다. 미국의 경우, 1984년 한 병원의 장기매매 사건으로 금지법안이 제정됐다.

불법거래가 가장 빈번한 곳 중의 하나인 인도 역시 10년 전부터 이를 금지시켜 놓은 상태이며, 우리나라도 2000년 2월부터 장기 이식을 합법화 하고 매매를 금지하는 "장기이식법"을 제정,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인도의 경우를 보면 법과 현실의 괴리감이 얼마나 큰가를 느낄 수 있다.

최근 BBC 특별보도에 의하면 인도 남부지역의 빈민촌 거주자들 중 상당수가 미화 1,000달러 이하의 가격에 신장을 팔아 왔다고 한다.

남·녀를 불문하고 앞 다투어 장기거래를 원하는 이유는 단지 빚을 갚거나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가난이 인간의 가치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이며, 환자의 입장에서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범법이라는 무리수를 둘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기매매 합법화를 둘러싼 찬반양론은 거세다. 찬성론자들은 법의 규제가 오히려 장기 암거래를 부추기고 있으며 정상적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증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장기매매가 합법화 될 경우 기증자나 이식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기증자들이 저개발국 지역에 편중돼 있어 공급경쟁이 야기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식 희망자중 상대적으로 부유한 이들이 우선권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부생빈사(富生貧死)요, 가난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무시돼서는 안된다는 윤리적 측면의 지적이다.

올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 1,224건, 뇌사자 장기이식 124건, 사망자 각막이식 69건 등 수요에 반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도 장기 밀매가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인터넷 사이트와 병원 화장실이나 지하철 등에서 은밀하게 장기를 제공하겠다고 밀매매를 알선한 브로커들이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증자를 기다리는 것도 대안일 수 없으며 이종장기 또한 안정성 문제로 시기상조이다. 현실적인 대안은 국가의 관리 하에 장기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종교적 이유로 장기매매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교리적인 말보다는 본인이 환자일 때도 존엄(?)하게 죽을 수 있겠는가를 물으면 뭐라고 할 것인가, 혹 종교의 주인은 살아서 더 옳은 일을 하라고 하지는 않을까?

038 코로나19 실험용 백신 투여

중국의 거대 제약회사인 시노팜이 주민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이미 실험용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 보도했다.

시노팜은 두 종류의 실험용 백신을 주민 수십만 명에게 접종했으며, 이는 국가로부터 긴급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긴급한 경우, 의료인 등에게 실험용 백신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6월에도 또 다른 거대 제약회사인 캔시노가 실험용 백신을 군인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었다.

또 다른 중국의 거대 제약회사인 시노백도 지난 7일 직원과 가족 3000여 명에게 실험용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다.

시노백의 최고경영자(CEO)인 인웨이둥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3000여명이 백신을 맞았으며, 연말까지 당국의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실험용 백신은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남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백신 개발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임상3상을 진행하면서 부작용이 발견되자 실험을 즉각 중단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실험용 백신을 자국민에게 투여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백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민족주의의 발로라고 WSJ은 지적했다.

[문제] 안정성이 검증되기 전 코로나19 실험용 백신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은 타당한가?

[답변예시]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9월 27일 오후 3시 38분(현지시간) 기준으로 전 세계의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는 100만19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번지고 있다는 보고가 세계보건기구(WHO)에 접수된 이후 9개월 만에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현실적인 대안이 안정성이 검증된 백신을 통해 효과를 보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침팬지 몸에서 침팬지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던 리트로바이러스가 인체로 옮겨오면서 변이를 만들어낸 것이 후천성면역결핍증(HIV) 바이러스 사례에서 보듯이 또 다른 인류가 감당하기 힘든 팬데믹 사태가 올 가능성도 있다.

즉, 지금 당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가 모든 사람의 건강에 잠재적인 위험을 가중시킬 여지가 있는 것이다.

최근 가장 먼저 백신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었던 미국 제약업체 존슨앤드존슨(J&J)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마지막 임상(3상)을 돌연 중단했다. J&J가 지난달 23일 코로나19 환자 6만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 단계인 3상 시험에 돌입했으나 이날 참여자들 중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부작용 사례가 나와 시험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안정성이 검증되기 전 코로나19 실험용 백신을 환자에게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성공적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의 최선의 조치는 사회적 방역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039 비만세

최근 비만세(Fat Tax)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비만세(Fat Tax)는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고지방·고열량 식품 등에 부과하는 일종의 소비세다. 2011년 10월 덴마크에서 처음 도입했다. 덴마크의 비만세는 육류나 버터, 치즈 등 포화지방 함유량이 2.3% 이상인 식품을 대상으로 지방 킬로그램 당 16크로나(한화 약 3,000원)를 부과했다. 덴마크는 2012년 비만세를 폐지했으나 이후 헝가리와 프랑스, 핀란드,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 비만세와 유사한 형태의 세금을 도입하고 있다. 헝가리는 2011년부터 설탕이나 소금이 많이 들어간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핀란드에서도 사탕이나 초콜릿 등에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영국은 2018년부터 병원 안에 있는 카페나 자판기를 대상으로 설탕세(Sugar Tax)를 도입할 방침이라 밝혔다. 당뇨병이나 심장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을 줄이기 위해 설탕이 들어간 탄산음료나 커피, 스낵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문제] 비만세 도입에 대해 판단하라.

[답변예시]

비만세(또는 설탕세)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세금이다. 비만은 체내 지방이 과잉 축적된 상태로 고혈압이나 관절염, 동맥 경화로 인한 각종 심혈관질환 등의 원인이 되며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비만세는 고지방·고열량 식품의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해 비만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비 지출을 줄여 의료재정을 안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비만세가 비만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덴마크의 경우 비만세가 도입되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웃 나라에서 식품을 사들이는 등 실제 고지방 식품의 소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 비만세 도입으로 식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관련 산업이 위축되는 문제도 있다. 덴마크는 식품 관련 기업의 부담 증가와 그로 인한 고용 감소로 도입 1년 만에 비만세를 폐지했다. 비만세로 인해 저소득층의 식품 구매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도 문제로 제기된다.

(찬성)

비만은 이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진단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비만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만세는 비만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노력이다.

(반대)

비만세를 도입하면 비만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간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또 비만에 대해 나쁜 이미지가 생길 것이다. 게다가 비만세는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즉,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비만은 개인의 영역이다.

(판단)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문제이다.

비만세는 개인의 기호에 부과하는 세금일 수 없다.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제한인 것이다.

도덕 영역의 자정작용으로 해결할 수 있게 두어야 할 것이다.

040 독신세

독신세(獨身稅)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특별히 걷는 세금이다. 싱글세나 1인가구세라고도 한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결혼 적령기를 넘긴 노총각에게 특별 세금을 부과했다. 만약 30세가 넘도록 미혼으로 남아있으면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이러한 독신세를 출산율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서 차별적 조세정책으로 도입하려고 한다. 즉, 독신자에게는 더 많이 과세하고 출산 가정에게는 지원을 하는 방안이 있다.

[문제] 이러한 조세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조세정책 외의 다른 대안은 있는지 검토하라.

.....
[답변예시]

저출산 문제는 일시적인 수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분리시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저출산 문제는 각 생애 주기에 따른 구조적 대책(유아기 → 학령기 → 대학 → 취업 → 주택 및 결혼 → 양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출산장려금 등은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간단히만 살펴봐도 교육제도의 개선없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어려운 것이다. 출산은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이다.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

041 대리모

‘인도 아기 공장’은 인도의 구주라트 지방에 세워지고 있는 시설로서 인도의 빈곤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대리모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고 한다. 인도는 국가 역량 사업으로 메디컬 관광을 적극 장려해오고 있으며 이미 지난 2002년도에 대리모 제도를 합법화 했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대리모에 관한 별도의 법이 전무하고 금지 규정 또한 없어서 불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실하게 드러내 놓을 수도 없는 나라인 것이다.

이곳의 총 책임자인 나니아 파텔 박사는 음지에 머물며 범죄와 연계가 되거나 하지 않도록 대리모 관련 분야를 사업화하고 제도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과 대리모가 되어 줄 인도 여성들의 신원을 확실히 하고 대리 출산에 따른 수고비를 정찰제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말이다.

대리모, 대리출산은 부부의 난자와 정자를 채취하여 체외 수정(시험관 아기)하고 대리모에게 착상시켜 출산을 한다. 그러니 유전적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긴 하다.

미국 일부 주와 일본, 호주 등 세계적으로도 많은 곳에서 대리모 관련 사업을 합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제]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과 실용성, 그리고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라.

.....
[답변예시]

(판례) 부부인 갑과 을이 갑과 을의 수정란을 대리모인 병에게 착상시켜 병이 정을 낳았는데, 갑이 정의 모(모)를 '을'로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신고서에 기재한 모(모)의 성명(을)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모)의 성명(병)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수리처분을 한 사안에서,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모(을)의 인적사항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병)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갑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른바 '자궁(출산)대리모'는 우리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

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서울가정법원 2018.5.9 자 2018브15)

1. 생명의료윤리의 4가지 원칙 중 「자율성 존중의 원칙」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자율성이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계획에 따라 행동과정을 결정하는 행동자유 의 한 형태로 환자는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과 충분한 정보에 의거하여 치료에 동의해야한다. 이는 환자 자신의 운명의 주인은 바로 환자 자신이기 때문이다.

2.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리모 출산은 불임부부의 고통과 함께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최후의 노력이다. 가계의 고유한 혈통을 간절히 원하는, 하지만 불임으로 인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들에게는 대리모출산이 허용될 수도 있다고 본다.

3. 대리모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가적인 문제점

호적의 문제에서부터 국적의 문제, 상속권이나 양육권의 문제 등은 대리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규제되지 않은 법적 문제이지 대리모 자체가 갖는 문제점이 아니다. 하물며 입양 시에도 이러한 문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4. 기형아 출산의 위험성 문제

- ① 부부의 검사 : 완전한 신체검진, 여성의 난소가 얼마나 기능을 보조하는지 평가, 남성의 정액 질 분석과 감염여부 검사
- ② 대리모 : 상대적으로 젊고 부작용 없이 임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력,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어야 함, 대리모의 자궁평가, 정신적인 평가 등
- ③ 또한 공식적인 기관(미국의 경우 Organization of parents through surrogacy, OPTC)에 대리모를 등록하여 연결해주어서 확실한 계약관계를 맺도록 한다면 대리모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가적인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찬성)

불임부부의 입장 : 아이를 가지기 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불임부부에게 의료기술을 이용하여 삶의 기쁨을 찾아준다면 좋은 일 일 것이다.

대리모의 입장 : 대리모출산을 찬성하는 한 사회학자는 실제로 개인파산직전까지 몰린 극도로 궁핍한 경제난에 부딪친 여성들에게 있어 단기간에 취약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대리모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또 그렇다고 그들을 구제할 만한 마땅한 사회적 장치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제적 취약계층이 된 여성들이 대리모를 통해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

(반대)

금전지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리임신 내지 대리출산을 약정하는 대리모계약은 아이를 사고 파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대리모와 태아 또는 아이 사이의 정서적 연대감에 관한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무리 계약에 의해 임신했다 하더라도 임신 과정에서 대리모는 아이에 대해 엄마로서의 강력한 연대감을 형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낳은 아이를 단순히 계약 때문 이건, 인도적인 이유 때문이건 의뢰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대리모에게 윤리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입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대리모가 태아에게 정서적인 연대감을 형성하지 않으려고 작정한다고 하면 임신 중 태아의 성장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울러 그럴 경우 대리모는 단순히 아이를 숙성시키는 기계나 인간 인큐베이터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아이가 처하게 될 상황에 대한 진지한 윤리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만약 임신 과정에서 아이가 장애를 지닌 것으로 판명 나거나 또는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난 경우에 의뢰한 부부가 이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대리모에 의해 태어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리모 출산은 기존의 가족관계, 가족개념에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훗날 아이의 성장에 정서적인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판단)

최후 수단성(보충성 원칙)을 만족하는 한에서 대리모 계약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국가 관리).

- ① 제도적 변화 : 불임부부들의 욕구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활성화 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최대한 막아야 할 것이다.
- ② 의식변화 : 가족의 현대적 의미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가족을 혈연관계에 한정하는 관행이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우리의 의식과 제도들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 ③ 경제적 보호 : 대리모 문제가 시장적 거래의 관계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이 사각지대에 내몰아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리모들에 대한 착취와 인권유린의 사례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④ 인권보호의 관점 수용 : 대리모를 통해 출생하는 새 생명의 인권을 확실하게 존중·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적의 문제에서부터 국적의 문제, 기형아의 문제, 상속권이나 양육권의 문제, 분쟁시의 문제 등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042 김영란법(직무관련성, 불고지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핵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있다. 이는 기존의 형법상 뇌물죄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이전에는 ‘스폰서 검사’나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처럼 공직자가 금품 수수를 했더라도 공직자의 직무와 상관이 없다며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청탁금지법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도록 했다.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을 따져 해당되는 경우만 과태료(2배 이상 5배 이하)를 물게 된다. 또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된다.

그러나 일정한 범위 안의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국민공익위원회는 공직자등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수수도 금지했다.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상관있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된다. 공직자들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아는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만 하며, 신고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감경, 면제받을 수 있다.

[문제] 김영란법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하고 논거하라.

.....
[답변예시]

공무원과 일반인의 동일한 사안(상황)에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

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당연 책임을 지겠지만

② 직무관련성 없는 영역에서 일반인과 다른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직무관련성을 제외한 영역에서도 공무원만이 갖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일반인과 다른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당하다.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없는 영역에서의 책임은 도덕적 책임이지 법적 책임이 될 수 없다)

아울러 배우자의 뇌물수수에 대한 불고지죄를 적용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043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이란 이름이나 초상, 목소리 등 특정 개인이 가진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1953년 미국 제2연방 항소법원에서 제롬 프랭크 판사가 해일런 래보라토리즈 대 톱스 추잉 껌 사건에서 처음 사용했다. 이 사건은 당시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진을 제품에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껌 제조회사 Haelan이, 라이벌 회사였던 Topps가 동일 선수들의 사진을 제품에 사용하자 이를 금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해당 판결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프라이버시권과는 별도로 개인의 초상이 가지는 공개적 가치에 대한 또 다른 권리로 정의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에 대한 상업적 이용 요소가 핵심이다. 초상이나 이름에 대한 권리 등은 본질적으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재산권으로 보면 양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에 개인의 이름이나 사진,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퍼블리시티권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인정하며 좁게는 개인의 초상, 성명과 같은 동일성부터 넓게는 목소리나 몸짓, 특유의 외양이나 말투까지도 권리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명문의 법규정이나 대법원 판례는 없으며, 하급심 판례 중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 또는 부정판례는 있다. 판례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사람이 가진 이름이나 초상, 이외에 그 사람을 특징짓는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규정했다. 특히 인터넷과 SNS 등 미디어의 발달로 한국에서도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분쟁과 소송 등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 1] 공익적인 목적으로 유명인의 초상권이나 성명권을 침해한 사례에 대해 평가하라.

[문제 2]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가?

[답변예시]

퍼블리시티권이란 이름이나 초상, 목소리 등 특정 개인이 가진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1953년 미국 제2연방 항소법원에서 제롬 프랭크 판사가 해일런 래보라토리즈 대 톱스 씹임껌(Haelan Laboratories Inc. v. Topps Chewing Gum) 사건에서 처음 사용했다. 이 사건은 당시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진을 제품에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껌 제조회사 Haelan이, 라이벌 회사였던 Topps가 동일 선수들의 사진을 제품에 사용하자 이를 금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해당 판결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프라이버시권과는 별도로 개인의 초상이 가지는 공개적 가치에 대한 또 다른 권리로 정의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에 대한 상업적 이용 요소가 핵심이다. 초상이나 이름에 대한 권리 등은 본질적으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재산권으로 보면 양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에 개인의 이름이나 사진,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퍼블리시티권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인정하며, 좁게는 개인의 초상, 성명과 같은 동일성부터 넓게는 목소리나 몸짓, 특유의 외양이나 말투까지도 권리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명문의 법규정이나 대법원 판례는 없으며, 하급심 판례 중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 또는 부정한 판례는 있다. 판례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사람이 가진 이름이나 초상, 이외에 그 사람을 특정짓는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규정했다. 특히 인터넷과 SNS 등 미디어의 발달로 한국에서도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분쟁과 소송 등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 1, 2] 상업적 목적의 사용은 적극 보호되어야 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영역은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 보호범위 밖으로 걸어나갔다는 것이 퍼블리시티권의 해석이다. 공익목적의 사용이므로 침해가 아닐 수 있다.

[민 법]

044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7월 30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국회를 통과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택 임대차의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세입자가 해당 건물의 재임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전월세상한제로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인한 전세 가격 폭등 등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역설적으로 전세가 상승 및 월세 전환이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 1]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라.

[문제 2] 규제의 역설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하라.

[답변예시]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통칭하는 말이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세금을 최대한 줄이려는 임대인이나 재산 내역 공개를 피하는 임차인 등으로 인해 거래 내역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부분을 바로잡고, 정부가 임대차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제도

이번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임차인은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돼서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정부는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율이 기존 계약의 5%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이다. 지자체에 따라서 인상은 더 낮게 만약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엔 세입자가 원하면 5% 이내로 낮추고, 나머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 갱신 시점에 임대료가 얼마나 오를 것인지 가능할 수 있어 주거 계획을 보다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한다면 기존 계약 갱신 시점에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2라고도 말하는데, 전월세 계약으로 2년을 거주한 세입자가 갱신 시점이 됐을 때 집주인에게 2년을 추가로 계약하자고 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게 된 것이다. 단순히 말해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제도인 것이다.

만약 기존 계약이 1개월 이상 남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무조건 2년간 거주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은 원하는 때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단,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 만료 전 3개월 간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판단)

헌법 37조 ②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즉, 자유시장경제(경제적 정의)와 민주화(분배적 정의)를 둘 다 옹호(가치 구속적 민주주의)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헌법 119조 ①항과 ②항)

다시 말하면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구하는 방법에도 지켜야할 원칙이 있음을 말한다. 정책의 목적이 정당해야 하며 경제적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수단이어야 한다.(보충성원칙)

소유권은 자유주의의 본질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제도들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민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정책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와 '법치국가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045 구하라법(민법상 유산 상속 결격 사유)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씨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친오빠인 호인씨는 구하라씨 사망 이후 아버지로부터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받았다. 이후 20여년 전 가출했던 친모 송씨가 갑자기 나타나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하자 친모의 상속 자격을 가려달라며 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호인씨는 올해 3월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가족에게 재산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고, 더불어민주당 서○○ 의원은 지난달 3일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호인씨는 “친모는 하라가 9살 때, 내가 11살이 될 무렵 가출해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국을 전전했고, 우리는 할머니와 고모의 보살핌 속에 서로 의지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동생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왔고 발인이 끝난 뒤 친모쪽 변호사들이 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문제] ‘직계존속·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경우’를 민법상 유산 상속 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것은 어떠한가?

[답변예시]

사건의 경우 직계존속인 친모는 2순위 상속자가 된다. 부계·모계, 양가·생가를 불문하므로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둘 다 있는 경우라면 같은 순위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친오빠는 3순위 상속자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없다면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생전에 피상속인과 관계를 지속하거나, 가족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자신 몫의 상속분을 내놓으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도의적으로 공동상속인을 비난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상속분 청구를 막을 순 없다. 상속권을 배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민법 제1004조가 규정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은 박탈되지 않는다.

현행 민법에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1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2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3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4호)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등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의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하여도 이를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례가 같은 분쟁이 반복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의 상속분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속분 중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

현행 상속결격사유를 살펴보면 각각의 사안들이 가족관계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 할 수 있다.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경우 역시 가족으로서의 관계가 상실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피상속인을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다.

046 친권의 범위

뇌병증은 심한 지적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 대화는 물론이고 기침을 하거나 음식물을 삼킬 수도 없다. 전 세계에서 뇌병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 200명도 채 안 되는 희귀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월 뇌병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천군은 기관을 삽관한 상태로 폐렴 치료를 받았으나 이를 오랜 시간 유지할 경우 호흡곤란 등으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 당시 천군의 생명을 연장할 방법은 기관절개 수술뿐이었다. 하지만 천군 아버지는 경제적 이유 등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이혼소송 중인 어머니도 친권 행사 의사가 없었다.

결국 서울대병원은 자체 윤리위원회를 열어 “친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뒤 천군 아버지를 상대로 진료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제적 문제, 종교적 신념 등으로 부모가 자식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는 더러 있지만 ‘친권자의 치료 방해를 막아달라’며 병원이 법원에 판단을 요구한 건 이례적이었다.

[문제] 귀하가 담당 법관이라면 서울대병원 윤리위원회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답변예시]

사적 영역에서의 자기결정권의 존중이 국가의 기본권보호 의무에 더 적합하다.

아울러 국가는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불가피할 때 제한적으로 개시할 수 있다.

[제시문]은 지난 6월, 서울대병원의 사례이다. 관련 재판부의 판결로 답변을 대신한다.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있는 3세 아이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수술을 거부할 경우 의료진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통상 '차후에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치료를 하지 않는 게 관례다.

나중에 수술비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병원 입장에선 치료를 꺼리게 만든다.

문제는 A군의 아버지 B씨가 기관절개술을 받지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주말에도 거의 쉬지 못하고 일을 해온 B씨는 이혼 후 본인이 친권을 갖게 되면 돌볼 사람이 없어 시설에 보낼 생각도 하고 있다고 했다. 설사 본인이 키운다 해도 간병인을 고용해야 할텐데 수술 후 추가되는 간병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B씨와 이혼소송 중인 A군의 어머니 역시 친권을 B씨에게 넘길 예정이라는 이유로 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수술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수술을 포기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통상 병원들이 위험이 따르는 수술에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병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수술을 피하는 관례에 비춰 이례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소송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1심에서 병원의 가처분신청이 각하된 것이다.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법원에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922조의 2에 따라 우선 검사나 서울시장을 설득해, 가정법원에 B씨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하도록 요청한 뒤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 수술을 하라는 취지였다.

병원 측은 항고를 결정했고 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제25-1민사부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재판부는 병원 측의 가처분 신청이 1심 재판부가 밝힌 것처럼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환자 A군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진료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그 치료에 반대하고 있는 친권자의 방해를 배제해달라는 것이어서 민법 제922조의 2가 규정한 것과는 취지가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물론 검사나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의료기관과 검사 등의 판단이 항상 같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의료기관 스스로 친권자의 동의 없는 의료행위라는 위험을 부담하면서 치료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없는 자녀에 대한 긴급한 의료행위가 이뤄져야 함에도 친권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친권을 남용해 이를 거부한다면 그 거부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권 존중 차원에서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인간의 생명권이 부모의 친권보다 상위개념임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047 미성년자 성적 침해(민법 개정)

미성년자였을 때 당한 '성적 침해'를 성년이 된 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된 때를 기점으로 소멸시효 기간 안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담긴 '성적 침해'란 성폭력과 성추행, 성희롱 등 법적으로 규정된 성범죄는 물론 그 밖의 성적 가해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당한 '성적 침해로 부모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시점부터 '3년 이내' △가해자를 알지 못한다면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15살 때 성적 침해를 당했지만 부모가 이를 알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본인이 성년이 된 시점부터 직접 가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가 완성됐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될 시점에 이미 성적 침해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순 없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뒤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보다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제] 민법 개정안을 미투운동과 연결지어 판단해보라.

[답변예시]

미투운동은 위계와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되었다.

목적의 정당성을 만족하더라도 수단의 적절성이 문제가 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며,

여론재판을 통해 회복을 시도한 점에서 사법체계에 반하고,

자력구제금지의 원칙과도 충돌할 수 있다.

그러나 위계와 위력의 상황에서 국가의 형벌권을 통한 피해회복을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었고,

또한 공소시효 등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면 보충성원칙을 만족하여 자력구제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현 사법체계 내에서의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킴으로써 스스로 피해회복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나이가 들수록 피해가 더 커지는 데 공소시효 완성으로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가 불가능하여 결국 미투운동으로 자력구제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개정 민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 그러나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 성년이 되고 나서 3년(21세)이라는 기간은 동의하기 어렵다. 가해자를 알든 모르든 성년이 되고나서 이후 10년으로 공소시효를 둬으로써 예방 및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언급했듯이 미성년자의 성폭력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적인지능력이 커감에 따라 피해가 더 커지는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048 부모체벌금지

최근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무부가 아동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하려고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민법에 규정된 ‘자녀 징계권’ 삭제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되고 있는 ‘필요한 징계’ 및 실효성이 미미해 유지의 실익이 없는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규정을 모두 삭제한다”고 밝혔다.

[문제] 자녀에 대한 부모체벌금지(민법에 규정된 ‘자녀 징계권’ 삭제)에 대해 판단하라.

.....
[답변예시]

(찬성)

체벌이 없어짐으로써 부권이 무너진다는 주장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진정한 체벌은 도덕적 각성이다. 체벌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 다른 수단으로도 충분한 교육효과를 이룰 수 있다.

(반대)

가정은 사적공간이다. 아울러 우리의 역사·문화적 배경도 살펴 보아야 한다.

국가는 사적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또한 타국과는 달리 부모의 자녀 체벌의 우리의 역사·문화적 교육방식으로 대표된다. 다소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개입해서는 안된다.

(판단)

치열한 찬반 논란이 일었던 부모의 자녀 징계권은 1960년 민법이 처음으로 시행될 때부터 명시되어 있었다. 민법 제915조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자녀 징계권의 조항이 그것이다. 최근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런 조항이 아동학대를 체벌이란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데 이용된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1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동거하는 부모로부터 발생하는 사례가 76.9%였습니다.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73.5%로 대부분이고 계부모는 3.2%로 소수에 불과했다.

통계는 절대다수의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시대적 흐름상 유효하지 않은 민법의 자녀 징계권을 없애 부모들이 아동을 학대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020년 6월 현재까지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60개 국가가 체벌을 금지하는 입법을 했다.

049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자녀 특별채용

대법원이 27일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청년실업이 극심한 상황에서 ‘일자리 세습’이란 지적도 제기됐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면서 공정성 논란을 일축했다. 산재유족 특별채용은 정년퇴직자 또는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노동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냈지만, 산업계는 “고용 세습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쟁점이 된 조항은 현대·기아차가 25년 전 노사간 합의에 따라 단체협약에 넣은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이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내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포함됐다.

이 조항이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된 건 취업난과 결부되면서다. 현대차 측 변호인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부모가 조합원이었다는 지위는 본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얻어지는 일종의 사회적 신분”이라면서 “대법원이 고용세습 조항에 대해 무효를 선언해 청년 실업자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말했다.

[문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평가하라.

[답변예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란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법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추상적 규범이다.

민법(2조)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1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산재사망자 A씨 유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11명의 대법관은 다수의견을 통해 "산재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것이 구직 희망자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체협약 조항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보고 있는데 이 단체협약 조항이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산재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은 근로자의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 또는 배려하는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고 보았다.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합의와는 다르다는 판단이다.

또 사측이 자발적으로 특별채용에 합의해 장기간 산재 유족을 채용해왔고, 산재사망자 자녀가 별도 절차에서 특별 채용된다는 점에서 구직희망자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도 없다고 봤다.

대법원 측은 "이번 판결은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별도 조치에 따른 특별 채용 등의 조치가 있어 이번 사건에서의 채용이 피고들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채용하는 단체협약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효력에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050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법무부는 지난 9월 28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40일간 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오는 11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우리 경제와 소비자 문화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발전된 이후 산업적 영향과 법률적 측면 등에 대해 연구와 국민적 토론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 단계에서는 입법예고안의 입법 추진 자체부터 전면 제고해야한다”는 논평을 냈다.

전국경제인연합 역시 지난 23일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코로나로 위기 극복에 진력하는 기업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업들은 현재도 형사처벌, 행정제재, 민사소송 등에 시달리고 있는데,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지고 무엇보다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 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입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야한다는 지지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도입한 정부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며 “다만 단순히 파이만 늘릴 경우 변수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조항들에 대한 수정 의견을 마련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미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장려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소비자 피해와 분쟁발생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원안대로의 입법을 촉구했다.

한편, 입법안은 언론사도 가짜뉴스 등을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 [문제 1] 징벌적 손해배상(5배)과 집단소송법제에 대해 평가하라.
- [문제 2]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언론사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가?

[답변예시]

[문제 1]

[징벌적 손해배상]

제조물에 대한 책임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일 것인가의 문제이다.

제조물 전체에 대한 책임일 수 있다.

- ①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에 의해 피해가 미비 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제조물의 책임은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모든 예측 가능성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유해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험 및 다수의 의사가 아닌 하나의 반박의견에 대해서도 검증하는 것이 제조물의 책임

따라서 고의의 경우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며 중과실의 경우도 제조물 전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중과실에 대한 경우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①) 현대과학으로 검증할 수 없는 상황 ← 무해성의 가능성만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됨.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②)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가 도입되면 살아남을 기업(대기업 중심, 대량생산체제)이 없다. ← 경제적 충격은 있겠지만 해당기업의 퇴출이 오히려 더 공정하고 발전된 기업환경을 이룰 수 있음. 또한 퇴출은 기업의 폐쇄가 아니라 경영진의 퇴출로 친인간적인 기업마인드로 탈바꿈시키는 것임.

(판단)

사안의 경우 고의에 대한 책임으로 제조물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집단소송제도]

집단소송제도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집단으로 소송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규모가 소액이라 개개인이 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때 사용한다. 한 명이나 두세 명의 대표당사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집단소송을 '대표당사자 소송'이라고도 한다. 다수인 개인들이 원고가 된다는 점에서 특정 단체가 원고가 되는 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집단소송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집단피해가 일어나지만, 개인이 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은 소송을 제기한 소수에 대해서만 보상하거나 약한 처벌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처벌보다 가해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면 불법적인 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 전 구성원에게 피해가 돌아가며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 집단소송은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이를 예방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집단소송의 결과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미친다(기판력). 피해자는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판결에 따라 배상 등을 받을 수 있다. 제외신고는 집단소송에 관한 판결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알리는 행위다. 집단소송과 유사한 선정당사자 제도도 있다. 법원 판결이 피해자 전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소송과 달리 선정당사자 제도는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에 한해 판결을 적용한다.

집단소송은 판결의 효과가 피해자 전원에게 내려지는 만큼 손해배상 규모가 매우 큰 편이다. 소송 진행 자체가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재판 수 증가와 그에 따른 재판 업무 지연 등의 문제도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 등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강제징용배상판결의 또 다른 쟁점이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다. [문 119번] 참조

[문제 2]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언론사에 까지 확대하는 것은 곧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의미한다.

뉴스란 새로운 소식을 알려 주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그러한 보도이며, 현대의 뉴스는 목적의식적이다.

따라서 가짜뉴스란 매체를 통해 목적의식적(악의적·계획적)인 새로운 정보(가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가짜뉴스는 일례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분류(가짜뉴스의 기준)할 수 있다.

- ① 정치적 목적으로 가짜의 정보로 반대파를 제거하려는 것
- ② 경제적 목적으로 가짜의 정보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주가조작 등)
- ③ 차별의 목적으로 가짜의 정보로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폄하하는 것(혐오표현, 차별표현)

따라서 가짜뉴스는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짜라고 해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후적 책임을 묻는 가짜뉴스처벌법은 타당할 것이나 가짜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문 67번] 참조

[형 법]

051 5·18역사왜곡처벌법(4·3 역사 왜곡처벌법)

16일 5·18기념재단의 말을 종합하면 지○○씨는 지난달 11일 디지털 책 「5.18팩트로만 증명된 북한 특수군」을 출간한 데 이어 이달 10일에는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책을 펴냈다.

「5.18팩트로만 증명된 북한 특수군」는 지씨가 2017년 8월 만든 같은 이름의 소책자(100쪽 분량)를 디지털 책으로 변환해 출간한 것으로, 1980년 5월 광주에 북한특수공작군 600명이 침투해 게릴라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씨는 이들이 1980년 5월21일 광주교도소를 여섯 차례 공격해 엄청난 사상자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는 김일성의 지령을 받아 광주교도소를 습격했던 북한특수군 600명 중 475명이 죽었다는 내용으로, 북한에서는 이들을 기리기 위해 ‘무등산의 진달래’라는 노래를 만들어 학생들이 등교할 때마다 들려주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북한군 투입설과 광주교도소 습격설은 지씨의 대표적인 5·18 왜곡 논리로, 지씨는 광주시민을 북한군으로 지목해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차○○ 5·18기념재단 고백과증언센터 팀장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지씨가 최근에는 광주시민을 지목하지 않으면서 북한군 투입설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출간한 책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할 방침이지만 근본적인 방지를 위해서는 역사왜곡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전두환 회고록 피해자쪽 법률대리인)도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해결책으로는 5·18 왜곡을 막을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5·18왜곡처벌법은 5·18을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 소수자 차별, 생존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모독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규제다”라고 주장했다.

[문제] ‘5·18역사왜곡처벌법’의 입법은 타당한가?

[답변예시]

역사부정죄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의 사실관계를 부인, 왜곡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그보다는

- ①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피해자와 그 후손들의 명예 보호
- ② 국제질서와 헌정질서의 근간인 인간존엄 보호
- ③ 역사 부정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확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논의는 대부분이 '진실 논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여러 역사적 사건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 ① 당장 보수 진영에선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과 근대화의 기수 박정희'라고 내세우며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처벌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 ② 또한 소수자 역할을 자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③ 특히 승자와 패자가 명백하게 갈리는 법정 다툼의 속성상, 오히려 역사부정세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역사부정세력이 무죄판결을 언도 받았다고 해도 발언의 정당성을 부여한 게 아니라 현행법에 따라 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뿐인데, 이를 '내 말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역사왜곡이란 확정된 역사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역사라 할지라도 다른 시각의 역사는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곧 사상의 자유이며 학문적 자유인 것이다.

역사왜곡처벌법은 이러한 학문적·사상적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결국 다수가 인정하지 않는 역사관은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이기에 자율규제에 두어야 한다.

다만 관련 발언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이다.

052 가짜뉴스 처벌법

가짜뉴스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처벌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그 순위 역시 낮아 가짜뉴스 양산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같은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렸다. 방역당국의 조치와 코로나19 현황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뉴스들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가짜뉴스 처벌법 현황을 논할 때마다 등장하는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은 소셜네트워크 법안을 제정해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처벌을 진행 중이다. 소셜네트워크 상에 가짜뉴스 등 위법적 게시물이 올라왔을 경우 소셜네트워크 사업자가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70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내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의 강력한 처벌수위로 인해 많은 이들이 독일의 해당 법안을 모델로 삼아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 가짜뉴스 처벌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라.

[답변예시]

뉴스란 새로운 소식을 알려 주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그러한 보도이며, 현대의 뉴스는 목적의식적이다. 따라서 가짜뉴스란 매체를 통해 목적의식적(악의적·계획적)인 새로운 정보(가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가짜뉴스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분류(가짜뉴스의 기준)할 수 있다.

- ① 정치적 목적으로 가짜의 정보로 반대파를 제거하려는 것
- ② 경제적 목적으로 가짜의 정보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주가조작 등)
- ③ 차별의 목적으로 가짜의 정보로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폄훼하는 것(혐오표현, 차별표현)

따라서 가짜뉴스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

그런데 가짜라고 해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후적 책임을 묻는 가짜뉴스처벌법은 타당할 것이나 가짜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가짜뉴스 처벌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가짜를 진짜처럼 알리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 모욕죄와 명예훼손 죄 : 명예훼손은 말, 글, 언론, 출판물,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적시하면 성립하는 죄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진실과 거짓 모두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명예훼손은 진실과 거짓 모두 대상이 된다. 차이가 있다면 허위사실이 더 무겁게 처벌받을 뿐이다. 참고로 명예훼손은 법률용어로 추상적 위법범이라고 한다. 쉽게 설명하면 실제로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더라도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다. 다만 명예훼손적인 표현이라도 진실한 사실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일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다. 판례는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도 해석한다. 어떤 이들은 이른바 '사이버 모욕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 상의 모욕은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사이버 상의 모욕행위는 수도 없이 처벌받고 있다. 다만 사이버 상의 모욕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모욕죄와 똑같은 법령(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뿐이다. 다시 말해 명예훼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별해서 각기 다른 법률을 적용하지만, 모욕은 둘을 구분하지 않고 형법으로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을 따름이다. 하지만 사이버 모욕은 일반 모욕보다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처벌 수위가 높은 경향이 있다. 명예훼손(또는 모욕)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할 것"이라고 본다.

명예에 관한 죄는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원칙으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하지 않는다. 비난의 내용이 특정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에게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난 내용이 해당 집단에 속한 특정 개인에게까지 미쳐 그 개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 이른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된다. 구성원 개인의 사회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단체나 집단의 명예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모욕죄가 성립된다. 명예훼손죄와 차이점은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가의 여부이다. 그리고 모욕죄는 친고죄이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이다.

'공연'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본죄의 객체에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가 포함된다. 행위방법은 언어·서면·거동(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행위) 등을 불문하며, 부작위에 의한 모욕도 가능하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외국원수 또는 외교사절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는 형법 제107조 2항 또는 제108조 2항이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053 기업살인법

기업살인법은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에 관해 영국에서 2008년 도입한 법으로, 정식 명칭은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이다. 업무와 관련되어 노동자 및 공중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에 범죄 책임을 부과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심각한 경우 상한선 없는 징벌적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구체적으로 종사자나 이용자 등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할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부담했다. 이를 위반하고 노동자를 사망하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사람을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 책임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일명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곳곳에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계 측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낸 원청 사용자에게 대해 형사처벌 하한선을 정하는 내용이 경영계 반대로 무산되고, 처벌 대상이 하급관리자에 그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과잉입법이라는 논란이 있다. 이에 동의하는가?

[답변예시]

(김용균법)

산업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준을 정하고 책임의 소재를 밝히며 재해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981년 제정된 이래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종류와 규모에 따라 예외를 두고 있다. 이 법에서는 또한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주체인 정부와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담당관을 두어 관리와 교육이 실천되도록 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주요 쟁점)

- ① (불명확한 의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부여, 어떠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되는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포괄적으로 규정함)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 ② (제3자와 공동의무·책임 부과) 실질적 관리범위 밖에 있는 제3자(임대·용역·도급·위탁을 맡아 행하는 자)에 대한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공동으로 부과하고, 형사책임 및 행정제재까지 동일하게 묻는 것은 책임의 정도에 비해 매우 과도하다.
- ③ (과잉처벌에 따른 위헌 소지) 기업 경영을 총괄한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 행위자보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더 무겁게 형사 처분하고, 과실범에 대해 하한 방식의 징역 및 벌금형 부과, 법인에게 연 매출액 기준으로 벌금을 가중하는 것은 과잉처벌로 위헌 소지가 있다.

사업주가 기업 전반을 책임지고 있지만 안전 보건의 같은 실무내용까지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안전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묻도록 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054 디지털교도소와 배드 파더스

- (가)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6월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을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며 누리집 문을 열었다. 활동을 시작한 직후에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사진과 출신 학교 등을 공개했다. 세계 최대 규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누리집을 운영하고도 징역 1년 6개월 형에 그친 사법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디지털성범죄 관련 1심 징역형 선고 1823건을 조사한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12%뿐이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은 온라인상에 계속 떠도는 성착취물로 2차 피해를 겪는데도 가해자의 절대다수는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는 현실에, 디지털교도소는 신상 공개라는 자체 징벌을 기획한 셈이다.
- (나) 배드 파더스는 2018년 7월 설립된 NGO 단체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이들은 홈페이지에 양육비 또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된 신상의 90% 정도는 아버지들이 차지하고 있다. 배드 파더스의 구○○ 활동가는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2020년 1월 법원은 구 활동가의 행위가 공익성을 띤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당성에 대해 논하라.

[답변예시]

(가)에서 디지털교도소는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되는 판결에 대한 사적 제재의 방법으로 등장하였다.

확정판결을 통해 신상공개가 결정된 사건에 대한 사적 공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설령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가해자의 명예를 보호할 가치보다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사적 신상공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자력구제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아울러 사생활 비밀보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부당하다.

디지털교도소는 여론재판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 가해자에게 본인이 무죄임을 증명케 하는 것으로 이 또한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나)의 배드 파더스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정보공개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명예훼손 역시 공공의 이익실현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다만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법원의 판결을 이행할 수 없는) 가난한 아빠의 경우가 문제이다.

배드 파더스가 공익실현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상에 신상정보가 한번 공개되면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큰 만큼 양육권자의 주장만을 들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급의사 및 금전적 상황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며, 검증 절차의 공개 또한 당사자에게 알리는 등의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교도소와 배드 파더스의 중요한 쟁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여부와 연결되어 있다. [문 55번] 참고

055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여부

진실을 고지한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계속 처벌해야 할까. 최근 성범죄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를 가해자가 역고소하는 일이 빈번해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10일 오후 현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미투 운동에서의 피해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1항)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강조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맞섰다.

헌법소원을 낸 이모씨는 2017년 8월 수술을 받은 반려견이 실명 위기에 처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수의사의 부당 진료를 알리려 했다.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해당 법조항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객관적인 진실을 밝혔더라도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이 옳은지를 놓고 법조계에선 오랫동안 논쟁을 벌였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들과 이들을 돕는 단체를 상대로 가해자들이 명예훼손죄를 악용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입을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범죄자 혐의자 신상공개에 나선 ‘디지털교도소’도 성범죄 혐의가 사실이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다.

이씨쪽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투 사건처럼 ‘명예가 훼손됐다’며 가해자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쉽다”며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는 게 민주적인 사회인데 피해자가 형사처벌이 두려워 문제 제기를 못 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투 운동 현상을 거치며 국회가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배웠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쪽 참고인인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오해하고 있다. 억울한 상황을 폭로하고 사실을 적시해 반응하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민·형사재판 고소·고발 등 현행 법적 시스템으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며 “억울하다며 비판하고 망신주기식 폭로를 하긴 쉽지만 헌법재판소가 그 길을 열어줘선 안 된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의 충돌을 놓고도 양쪽은 팽팽하게 맞섰다. 이씨 쪽 대리인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는 죄가 되선 안 된다”며 “행동의 자유가 있듯 인간은 진실을 말할 자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 쪽 대리인은 “개인의 사생활 공개와 같은 인격권 침해는 그 자체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시대와 국민의 법감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라.

[답변예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란)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실제로 있었던 일을 공공연하게 지적하여 보이는 명예훼손은 그냥 자유로운 반대의견을 표출하는 의견 표현과는 다르다. 이를 입증하려면 공간적 시간적 특정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과 관련된 관계에 대한 보고서나 진술이 존재해야 하며 증거에 따라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한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 "진실한 사실"의 적시가 공익을 위해서 적시한 것이 아니면, 그 "진실한 사실"의 적시가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실각을 불러올 수 있을만큼 심각한 비위사실일 것을 요구한다(간단한 예시로, 성소수자에 대한 아우팅 공격을 생각해보자. 형법 제307조1항의 입법 취지는 그 정도로 치명적인 "진실한 사실"이 사회에 나돌아다니는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피해자에 관련된 진실한 사실일지언정 그 사실이 피해자에 관련된 사실로서 적시됨으로써 그 사실이 가진 이미지가 사회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는 모든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보호)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 세대의 인류를 위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그러나 공표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 성적 지향, 가정사 등 사생활인 경우, 이를 공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공익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타인의 명예가 허명(虛名)임을 드러내기 위해 감추고 싶은 약점과 허물을 공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했다하더라도 명예훼손은 있을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와 구별된다.

반의사불벌죄는 범죄자의 회개(悔改)에 기초한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진정한 화해가 피해자 쪽의 불고소나 불처벌의 의사표시 또는 고소의 포기나 취소로 나타나고, 그 결과 법적 평화의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사법의 실제 운영에서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고소가 피해보상의 확보도구로 이용되고, 나아가 고소의 대상인 특정 범죄와의 관련성이 희박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미끼로 남용되는 예가 많다.

(판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이다.

표현의 허위·진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재는 피해자들이 성폭력 등의 피해 사실을 알린 것 자체만으로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하여 수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하며, 실제로도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말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형법 제310조)이 있으나, 이는 곧 '공익을 위하지 않은 진실은 발설하지 말라'는 것이며, 개인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공익 목적을 위해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적이다. 또한 '공익성'이란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념으로써 판단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고발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주지 못한다. 최종적으로 불기소,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그 과정까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은 우리 사회에 강력한 위축효과를 발휘하며 수많은 용기 있는 고발을 억제한다.

만일 진실한 사실 중에서도 사생활의 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막도록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금지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수단을 통해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056 법왜곡죄(도구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

(사례)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화교 출신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내몰았던 검사들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뿐 아니라 검찰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체계의 부재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유우성 씨 사건을 수사한 검사 2명에 대해 “출·입경 기록이나 회신공문 등 사건과 관련된 증거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위조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수사과정에서 핵심증인인 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가혹 행위와 중국 공문서 등 증거 조작으로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든 사건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 검찰도 이 같은 불법행위에 연루됐으며 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와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현행법상 담당 검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등이다. 문제는 처벌규정들이 모두 최초 형법이 제정되던 1953년부터 존재했지만 독재정권 아래 수많은 국가폭력이 자행됐음에도 그 경험들이 처벌규정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다. 즉,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이 독재정권에 충실히 복무한 결과 권력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판례 등이 제대로 축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주장)

공정한 재판은 법원과 법관의 독립만으로써는 요원하다. 법관이 자의적으로 재판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왜 자의로운 재판, 불공정 재판,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개판 재판이 횡행하는가. 그런 재판 하고도 아무런 민형사 책임을 질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

대안은 공산국가인 중국에도 있고, 우리 법제의 모태 독일 형법에도 있는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왜곡하여 잘못된 재판을 하였을 경우, 그 법관이나 검사를 처벌하는 죄목이다. 민사상으로는 다시 입법이 없더라도 그런 불법행위를 한 자를 손해배상책임 물리면 되는데, 현직 판사들이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서 핵심은 오히려 법왜곡죄의 도입이려야 한다.

[문제] 법왜곡죄 도입에 관해 평가하라.

[답변예시]

과연 법률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외부의 영향이나 개인적인 편익과 이해관계를 떠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법 해석을 왜곡하지 않은 채,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그렇지만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 또는 불행사, 실체적 진실과 다른 유죄 또는 무죄 판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가 현행법에는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개개의 사건마다 천태만상이고 전문성을 요한다는 업무의 특성이나 나름 재량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는 이유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 또는 불행사로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정의감정에 반하는 결정을 하거나, 그에 이어진 실체법과 절차법에 반하는 판결을 하였는데도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지는 일은 거의 없다.

국민이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 구성원들에게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라고 권한을 부여한 것은 독자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라고 위임한 것이 아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실관계를 조작·왜곡하거나, 실체법이나 절차법에 대한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으로,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국민이 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사법기능과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에는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왜곡죄'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악법은 법인가?

도구론적 해석 입장에서는 법이라고 하겠으나 목적론적 해석에서는 법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057 박형순 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지난 14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일파만파’가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겠다는 ‘일파만파’ 집회에 대해 “100명 규모의 집회로 신고된 집회 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이나 실제 집회는 그보다 짧은 약 4~5시간으로 예정된 것으로 보인다. 동화면세점 앞 인도 및 그 일대 2개 차로의 면적과 범위를 고려하면 100명의 집회 참여자가 서로 1m 이상 떨어져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실제 집회 참가 인원과 시간이 다를 수 있는데도 주최 쪽의 계획만을 믿고 집회를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가 대표전화를 통해 교인들에게 동화면세점 앞 집회 참석을 안내하면서 참가자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고 경찰 추산 5천명이 운집한 집회는 밤 10시40분이 돼야 끝났다. 결국 신고 인원보다 50배나 많은 사람이 이곳에 모여들면서 법원이 낙관했던 ‘1m 이상 거리두기’는 지켜질 수 없었다.

법원은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국투본이 3천명으로 신고한 집회도 ‘과거 서초역 주변에서 벌인 집회 때 체온 측정, 명단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켰다’는 이유를 들어 허용했다. 재판부는 “(이번) 집회 개최 지역의 넓이와 참여 인원을 고려하면 이런 방역수칙은 이 사건 집회에서도 적절히 준수될 것으로 추인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해 물리적인 집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또한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집회 주최자가 신고한 참가 인원과 시간이 실제 진행된 집회 내용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소규모·단시간을 예정한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해도 소규모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면 결과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와 다르지 않으며 △침방울이 튀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어려운 행위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집회의 현실적 특성을 고려하면 집회금지 명령이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주장을 일축했지만, 이는 모두 현실이 됐다.

이에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재판장의 이름을 딴 ‘박형순 금지법’ 발의되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 등이 지난달 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인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법관 등 법조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1조 등을 들어 박형순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법원행정처장도 “집회 일부 인용 결정으로 예상 이상의 대규모 집회가 됐고, 코로나 확산의 계기가 됐다는 지적과 비판에 법원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방역 조치 필요성이 충돌한 가치 속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전날 성명서를 통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해당 법관에 대한 공격성 발언으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문제] 위 사례의 쟁점을 제시하고 평가하라.

[답변예시]

(행정소송법 일부 개정안)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재난 사태이거나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관련 감염병 분야에 전문 지식이 없는 법관의 판단에 일임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에 있어서는 해당 질병 관리 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법원의 결정을 도출하고자 함(20.8.21. 발의 이원욱의원등 11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나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만 금지되어 있음. 국가 재난 상황이어서 신속한 재난 복구를 위해 사회적 질서 유지가 더 시급한 경우이거나 불특정 다수의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신설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허용되도록 하고자 함(20.8.21 발의 이원욱의원 등 11인)

(판단)

사안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와 국민 건강권이 충돌하는 문제이다.

둘 다를 옹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도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8·15 광복절 집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투쟁본부의 집회 100명 규모의 집회로 신고 되었으나, 정황상 이를 어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했어야 했다. 법의 극단의 상황을 예측하고 제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예측하지 또는 극단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이는 판사로서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8·15 광복절 집회로 인한 사회적 손실로 이어졌으며, 많은 국민들의 건강권을 해치게 되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서 집회금지를 신설하는 것은 집회시위에 관한 자유를 제한하여 수단의 적합성(다른 수단이 있다면 다른 수단으로)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그런데 질병 관리 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를 신설한 「행정소송법 일부 개정안」은 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므로 과잉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질병 관리 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는 것이며, 결국 판단은 법관의 몫이기 때문이다.

058 사형제도(형사소송법상 6개월 이내 사형 집행)

홍○○ 의원이 흉악·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선고를 받은 이는 6개월 이내로 사형 집행을 의무화해야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되지 않아 수감 중인 인원은 60명이다. 연쇄살인범인 유영철과 강호순 등도 포함된다. 이들에 의한 피해자(사망자) 수는 211명이다.

홍 의원은 지난 2018년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지난해 발생한 고유정의 ‘남편 토막 살인사건’ 정황 등 흉악범죄가 최근 급증해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사형제와 소년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사형 집행에 찬성한 비율이 66.8%였다고도 했다.

그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사형을 집행하도록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만 지난 1997년 12월 30일 이후부터 23여년간 실제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아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 사형 범죄 중 흉악범과 반인륜 범죄의 사형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과 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 사형선고를 받은 이의 6개월 이내로 사형 집행에 대해 평가하라.

[답변예시]

사형제도를 찬성할 수 있는 논거는 예방이 유일하다.

사형제도 반대논거

① 정치적 사형의 존재

② 일말의 오판 가능성

③ 예방에 실효적? : 사형에 해당되는 살인의 경우 고의에 의한 살인, 계획살인이므로 예방과는 관련 없음

④ 형벌의 목적에 반함(재사회화)

그렇다면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2010년, 사형제도에 대해 14년 만에 또 다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림. 다음 자료는 당시 합헌과 위헌의견을 정리해 놓은 것임. 이를 통해 범죄예방효과를 정리해두기 바람

1. 위헌제청을 한 광주고등법원의 의견 : 범죄인은 자신의 생명이 박탈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더욱 흉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형벌로서의 사형의 일반예방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2. 법무부장관의 의견 : 사형의 일반예방적 효과가 없다고 속단할 수 없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강한 위하력을 가진 다른 마땅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방위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3. 헌법재판소의 법정 의견 : 사형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을 이용한 가장 냉엄한 공극의 형벌로서 이를 통한 일반적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 범죄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무기징역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이 사형과 동일한 혹은 오히려 더 큰 일반적 범죄 예방효과를 가지므로 사형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이 사형이 무기징역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보다 일반적 범죄예방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이상, 무기징역형 등 자유형보다 사형을 통하여 살인범죄 등 극악한 범죄의 발생을 보다 더 감소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사형보다 범죄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작은 무기징역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은 사형만큼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사형은 그보다 완화된 형벌인 무기징역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비하여 일반적 범죄예방 목적 및 정당한 응보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더 효과적인 수단이다.
4. 재판관 조대현의 일부위헌의견 : 중대범죄자를 사형시키면 그 범죄자가 다시 범죄할 수 없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그러한 효과는 무기징역형이나 종신형에 의해서도 기대할 수 있는 것
5. 재판관 김희욱의 위헌의견 : 사형제도가 일반적으로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사형에 일반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볼 경우에도 이는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률상 사형이라는 형벌이 예정되어 있음으로 인한 형사법규의 규범력에 따르는 것일 뿐, 그 집행을 통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위하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즉 일반 중범죄인과 달리 사형에 처해질 정도로 극악한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형법상의 사형제 규정이 과연 얼마나 일반 예방효과를 미칠 것인가는 쉽게 가늠할 수 없다.
7. 재판관 김중대의 위헌의견 : 사형제도를 두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범죄 억제의 효과가 더 크거나 크다면 그 차이는 과연 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감수할 정도로 큰 것인지 등에 관하여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
8.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 형제도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통하여 잠재적 범죄인을 위하함으로써 중대 범죄의 방지에 기여하는지 여부, 즉 사형제도의 일반예방적 효과에 관하여는, 사형제도의 폐지 또는 존치에 따른 범죄발생통계 등 실증적 자료에 의한 과학적 입증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사형제도의 존치가 여전히 중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거나 사형을 폐지한 후에 중범죄의 발생률이 높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나아가 사형제도가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바와 같은 위하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형벌의 실효성(實效性)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7. 12. 30. 사형을 집행한 이래 12년이 지나도록 선고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바, 그 결과 사형제도가 실효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참고) 캐나다의 경우 1975년 사형제 폐지 직전 10만명당 3.09명이 살해됐으나 1980년엔 2.41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10년 뒤에 또 살인율은 2.19명으로 또 감소했다.

059 성인지 감수성

- (가) 여성과 남성은 같으면서 다르다. 이분법적 논의는 같음과 다름의 두 개념이 서로 상호의존적일 수 있음을 은폐한다. 평등은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며, 차이 역시 평등을 배제하지 않는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산술적 평등은 더 심한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 같음의 어프로치는 여성의 기본적인 참정권 획득에 긍정적 역할을 했지만, 여성성을 부정하고 남성성을 인간의 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여성이 남성의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보았다. 차이의 어프로치는 이러한 같음의 어프로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평가되었던 여성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시도하였지만 남성성의 기준을 부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문제는 여성의 차이를 강조하다보면 기존의 성담론의 이분법적 구분을 더욱 고착화할 수 있다.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기 위해 제시된 다양성 어프로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인권의 규범을 설정하고 인간의 틀 안에서 진정한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과 남성은 인간으로 같지만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구분되어야 하며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는 다양한 집단의 정체성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며 인권으로서의 평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차이에 적합한 정당한 대우가 뒤따라야 한다.(여성학연구, 21권 3호)
- (나) 성인지감수성 개념이 가장 잘 반영된 판결 내용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다. 상고심에서도 2심 판결과 동일하게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 당시 안 전 지사 측은 성폭행 이후 수행비서가 이모티콘을 전송하거나 미용실에 간 행동 등이 강간 직후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성격 및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성폭행 피해 대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피해자들이 모두 두려움에 숨거나 일상생활을 못할 것이라는 등의 고정관념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문제 1] 같음과 다름의 구분 기준을 제시해보라.

[문제 2] A는 B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주장하는데 A가 주장하는 성폭행 이후 A는 B와 주변을 산책했고, 주변에 충분히 신고 가능한 상황임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둘이 같이 술마시고 저항의 증거가 CCTV에 보이지 않는 등). 원심은 이를 토대로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만약 당신이 2심 판사라면 [제시문 (나)]에 근거하여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답변예시]

[문제 1]

같은 동등함을 다른 처한 위치와 사정과 맥락을 고려함을 의미한다.

즉, 가장 멀리있는 최종 목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같음과 다름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 목적은 보통 추상적이고 올바르고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경우가 많다. 최종 목적에서 다가가면서 방법상 달라지는 것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문제 2]

(장점) 성범죄를 심사할 때 서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피해자인 여성편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음

(단점) 여성측의 진술 및 증언, 증거 효력의 인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근대 형사소송의 대원칙(증거재판주의)에 반할 수 있음

(참고) 증거재판주의란?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도록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일찍이 신판이나 결투 혹은 선서 등 증거에 의하지 않는 재판이 행해졌고, 유죄를 단정하는 데 피고인의 진술을 중요시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자백의 중요성을 강조한 적도 있었지만, 근대 개역된 형사소송법은 잔혹의 역사를 벗어나 이 증거재판주의를 확립하고 있다. 증거재판주의는 이른바 강제에 의한 자백과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나 공판정에서 법관 내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충]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적 의미가 있는 행위를 할 때,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성적인 의미가 있는 행위의 주체가 되거나 혹은 그 상대가 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여성은 독자적 인격체로서 자기 책임 아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당연하고, 이러한 여성의 능력 자체를 부인하는 해석은 오히려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고 나아가 여성의 성적 주체성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이 상대 남성과 성관계를 가질 것 인가의 여부를 자유의사의 제압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하였음에도 자신의 결정을 사후적으로 번복하면서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하는 건,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2018고합75호 강제추행 등(피고인 안희정) 선고문)

[성인지 '성인지 감수성'은 증거재판주의와 배척되는 게 아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성인지 감수성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가 처해 있는 상황, 가해자와의 평소 관계(권력 관계 등),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심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서 절대 오해해선 안 되는 건,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한다는 의미가 '증거재판주의'를 배척한다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증거는 크게 인종과 물증으로 구분되는데, 물증은 말 그대로 어떤 유형적인 물건 등의 증거고 인종은 사람이 증거, 즉 사람의 말이 증거가 된다."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다는 건, 증거를 배척하는 게 아니다. 피해자의 말, 즉 '인종'을 살펴볼 때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회가 남성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속에 있다는 걸 유념하고, 피해자가 처한 위치와 사정과 맥락을 고려해서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증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060 소년법(권한과 책임)

- (가) 2020년인 올해에도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경험의 연령이 낮아지고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 등 정신적인 폭력 등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예방을 위해 교육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가해학생의 교육 및 선도에 대한 부분은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의 연령하향(만14세 → 만13세)을 위하여 법개정을 추진하며 소년사건 처리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즉, 법이 개정이 된다면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중대한 학교 폭력에 대하여 처벌도 구속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 (나) 2017년 한 해 동안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청소년 폭행사건 등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잔인한 범죄 사건이 일어났다. 범죄 사실을 SNS에 과시하여 올린다던가, 잡힌 후 법정에서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더욱 충격을 주었다. 약 30만 명에 달하는 누리꾼들은 청와대에 소년법 폐지 청원에 서명하기도 했다.
- 우리나라 소년법 59조에 따르면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최고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처벌법 4조 1항에서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소년법 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소년들이 지은 죄에 비해 형벌이 약하다며 형벌을 줄여주는 법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청소년 대상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으며 형을 짧게 살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보복 가해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청소년 범죄는 개인보다는 가정, 학교, 국가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성인 범죄와 구별해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소년 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고 학생들이 교화될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다) 한 소년이 캄캄한 복도에서 한 젊은 여성을 칼로 위협해서 돈을 빼앗으려다가, 몸싸움 과정에서 그 여성의 눈을 찔러 멀게 만들었다. 소년은 체포되어 재판받고 20년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 일련의 과정은 과연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최선인가? 그래서 피해자는 고통에서 벗어나 억울함이 해소되고 평화를 되찾았는가? 가해자는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서 출감 후에 온전한 사회인이 되었는가? 이 제도는 범죄의 발생을 억제해주는가?

[문제 1] 소년법 폐지에 대해 찬/반 입장을 정하고 토론하라.

[문제 2] (가)에서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의 연령하향(만14세 → 만13세)을 위하여 법개정에 대해 검토하라.

[문제 3] (다)의 쟁점은 무엇인가?

[답변예시]

[문제 1, 2] (가)는 사후적, 즉 강한 법제를 통한 예방을 의미하며, (나)는 정책을 통한 예방을 의미한다. 둘은 공통점은 예방이다.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경우도 없고 책임만 있고 권리가 없는 경우는 없다.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

소년법 개정을 통해 범죄의 인지 및 책임의 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과 같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성인과 같은 권리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인지능력과 관련하여 나이를 조정하는 것(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은 언제든 가능할 것이다.

경력사건의 경우 소년법 적용의 예외로 두자는 의견도 있다. 소년법을 두는 이유가 범죄의 인지 및 책임의 인지 능력이 부족함인데 이유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결과가 달라졌다고 적용의 예외로 두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혹 전제가 바뀌어서(범죄의 인지 및 책임의 인지 능력이 부족하지 않음) 결과가 바뀌었다면 예외로 둘 수 있을 것이다. ($A \rightarrow B, A \rightarrow \sim B?$, $\sim A \rightarrow \sim B$)

[문제 3] (다)의 핵심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실질적인 회복이다. 이성적 사고가 발달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 무관용에 의한 처벌보다는 범죄임을 직시하고 반성을 이끌어 내어 사건 전의 상태로 회복케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아동성폭력의 경우, 정신적 회복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범죄피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차 회복된다. 그러나 아동 때의 성폭력 피해자는 점점 이성적 사고가 발달하면서 정신적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범죄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재발을 방지해야 하며, 추후 교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061 수치심 형벌(신상공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형벌(고대 중국의 묵형, 현대의 신상공개제도)은 역사상 가장 널리 퍼졌던 처벌 방식이며 문화권에 따라 이러한 형벌이 여전히 선호되기도 한다. 징역형을 부과하면 대중의 시야에서 멀어져 숨을 수 있지만 수치심 형벌을 부과하면 범법자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되고 다시는 같은 짓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수치심형벌이 범죄에 대한 응보로서 효과적이며, 범죄를 일반적으로 억제하고, 범죄자를 도덕적으로 개선시키고, 사회에 재통합시키는 데에도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참고] 묵형(墨刑): 죄인의 몸에 상처를 내고 먹물로 글자를 새겨 전과를 표시하는 표징형(表徵刑)

[문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수치심 형벌에 대해 비판하라.

.....
[답변예시]

형법의 목적 : 응보, 교화(재사회화), 예방이 있다.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모든 형벌에는 응보를 담고 있으며 또한 예방의 목적도 함께 담고 있다.

그러나 문명사회로 발전하면서 형벌은 응보와 예방을 넘어 정상인으로서 사회에 복귀를 돕는 교화의 목적을 추가되었다.

교화는 형벌의 주요한 목적인 것이다(사형을 빼고는 교화를 담고 있지 않는 형벌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치심 형벌은 교화의 목적에도 반하며, 행위 이상의 책임을 묻는 과잉처벌이 될 것이다.

일례로 신상공개제도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끝나지 않는 처벌).

062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파탄주의(破綻主義)란 재판 이혼 시 쌍방의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이혼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혼 무책주의(無責主義)라고도 한다. 결혼 파탄의 책임과 관계없이 이혼을 인정하므로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1907년 스위스에서, 혼인관계가 심각한 파탄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어느 한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가 파탄주의를 따르고 있다.

파탄주의는 혼인이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법률로 강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 중 한쪽이 이혼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결혼 생활을 파탄으로 만들어 가족이나 배우자를 유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독일의 경우 배우자 중 한쪽이 병에 걸려 이혼 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행복추구권이 심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쫓아내는 축출이혼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상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아왔다. 다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데다, 유책주의로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막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의식이 높아지면서 파탄주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등의 판례도 늘고 있으며 2015년 6월 대법원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 청구에 대한 공개변론이 이뤄지기도 했다.

[문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중 어떤 것이 더 타당한지 검토하라.

[답변예시]

파탄주의(破綻主義)란 재판 이혼 시 쌍방의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이혼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혼 무책주의(無責主義)라고도 한다. 결혼 파탄의 책임과 관계없이 이혼을 인정하므로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1907년 스위스에서, 혼인관계가 심각한 파탄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어느 한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가 파탄주의를 따르고 있다.

파탄주의와는 다르게 부부 중 어느 한쪽에 이혼의 책임이 있을 때만 다른 한쪽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유책주의(有責主義)라 한다. 유책주의에서는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파탄주의나 유책주의 모두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협의 이혼과는 관련이 없다.

파탄주의는 혼인이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법률로 강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 중 한쪽이 이혼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결혼 생활을 파탄으로 만들어 가족이나 배우자를 유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독일의 경우 배우자 중 한쪽이 병에 걸려 이혼 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행복추구권이 심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쫓아내는 축출이혼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상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아왔다. 다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데다, 유책주의로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막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의식이 높아지면서 파탄주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등의 판례도 늘고 있으며 2015년 6월 대법원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 청구에 대한 공개변론이 이뤄지기도 했다.

(판단) 이미 혼인관계는 끝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파탄주의 입장에 따른 이혼이 타당할 것이며, 축출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063 조두순 격리법

아동 성폭력범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발의가 논의되고 있다.

‘조두순 격리법’으로 이름 붙인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이나 살인범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보호수용 선고가 가능토록 했다.

“보호수용은 재발 위험성이 큰 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라며 “불안에 떠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하에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1천83건, 2017년 1천261건, 2018년 1천277건, 2019년 1천374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하루 평균 3.4건씩 발생하는 꼴이다.

또한 성범죄 재범률은 2016년 4.4%, 2017년 5.3%, 2018년 6.4%, 2019년 6.3%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 아동 성폭력범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답변예시]

보호감호(保護監護)는 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는 처분이었다. 근로는 피보호감호자의 동의를 있는 때로 한하였다.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직업훈련·근로·치료, 기타 감호·교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적당한 기관에 피보호감호자의 감호 등을 위탁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보호감호시설로 보았다. 보호감호 시설에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었다.

이중·과잉처벌과 인권침해 비판을 받아온 사회보호법이 이중처벌적이라는 이유로 2005년 8월 4일 폐지됨에 따라, 사회보호법에 의거한 보호처분 제도중의 하나였던 보호감호 처분은 폐지되었다.

조두순의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은 과거로의 역행을 의미한다.

064 일수벌금제와 황제노역

- (가) 죄를 지어 벌금을 선고받으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낼 돈이 없다면 일정 기간의 노역으로 대신할 수 있다. 몇 만원의 벌금도 버거운 사회적, 법적 약자를 위한 보호 조치이다. 그런데 이 노역장 유치제도가 벌금 회피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다.
- 최근 5년 동안 법원에서 선고한 벌금 부과액은 약 24조 7천억 원인데 현금으로 납부된 금액은 1/4 수준인 6조 2천억 원에 불과하다.
- 이 같은 노역장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처럼 고액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들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인권의 문제로 노역장은 최대 3년까지만 선고되기 때문에 수백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으면 그야말로 일당 수천만 원(수억 원)의 '황제노역'이 된다.
- (나) 재산비례 벌금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벌금을 차등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은 현재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동일한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총액 벌금제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함이 있어 당정은 2019년 9월 18일 재산비례 벌금제도 추진을 공식화했다.

[문제] (가)의 쟁점과 연결하여 (나)의 재산비례 벌금제(일수벌금제) 도입에 대해 검토하라.

[답변예시]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는 경우와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경우는 없다.

형벌의 중요한 구실은 범죄 예방 효과이다. 범죄 예방 효과가 있으려면 형벌이 범인에게 심리적, 경제적 타격을 주어야 한다. 벌금은 우리나라의 선고형 가운데 약 80%를 차지하는 주된 형벌이다. 그런데 부자에게 벌금형은 별 타격을 주지 못한다. 반면 가난한 서민가정의 가장에게 부과된 벌금은 전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기도 한다.

(일수벌금제)

가해자의 하루 수입을 단위로 벌금을 매기는 제도이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일정 기간의 구속 또는 벌금으로 정해진다. 구속은 일정 기간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제적 처벌이듯, 일수벌금제 역시 하루의 소득을 벌금으로 회수하는 처벌에 해당한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같은 기간을 교도소에서 복역하듯, 벌금도 유사하게 소득에 비례해서 매긴다. 1921년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총액벌금제)

고통의 평등을 실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책임을 더 크게 부과한다면 권리 또한 비례해서 커져야 할 것이다. 무언가 일반인과 다른 권리를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벌금의 영역이므로 같은 영역에서 찾아보면 벌금미납시의 노역유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노역시 상계 일당을 일수벌금과 비례해서 책정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황제노역과 일수벌금제) 정부는 벌금을 내지 못하는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대신하는 '환형유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장 3년까지 교도소 노역이 가능하다. 노역을 택한 이들은 일반 수형자와 함께 봉제, 식품가공, 목공 등 다양한 작업을 한다. 노역 일당은 최저 10만원이지만 벌금액, 노역 기간 등을 따져 판사 재량으로 정해진다. 벌금 액수에 상관없이 노역 가능 기간이 최장 3년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황제노역' 논란이 일기도 한다.

(판단)

만약 일수벌금을 통해 사회에서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면 노역 일당 또한 일수에 비례하여 정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065 전자보석 제도

손목시계형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가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자보석 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이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보석제도’가 1954년부터 시행됐지만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보석률(2016~2018년 평균 3.9%)은 미미했다. ‘전자보석 제도’는 보석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재판 시 출석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석이 까다로웠다”며 “전자보석이 도입되면 도주 우려가 상당 부분 줄기 때문에 기존에 보석이 힘들었던 피고인들도 보석이 허가될 수 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같은 상황에서 구속수감되던 때보다 방어권을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보석 대상자에게는 시중에 판매 중인 스마트 워치와 유사한 ‘손목시계형 장치’가 지급된다.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유괴범죄자 위치추적을 위해 이미 전자발찌가 활용되고 있지만 일반 피고인에게 이를 부착하는 건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다만 손목시계형 전자장치도 전자발찌와 마찬가지로 24시간 위치 파악이 가능하며 손목에서 분리하면 경보가 울린다. 전자보석은 법원의 결정 뒤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고, 위반상황이 발생하면 법원은 전자보석을 취소해 재구속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전자보석 제도가 시행되면 보석률을 높일 뿐 아니라 교정기관 과밀수용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7월30일 기준으로 전국 교정기관의 미결구금 인원 비율이 35.4%에 이르는데, 보석률이 높아지면 상당수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전자보석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감독해 공판절차 출석 및 형 집행 단계에서 신체 확보를 담보하는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제] 전자보석 제도에 대해 평가하라.

[답변예시]

가족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예방하고 불구속 재판의 실현 등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재사회화

066 엔(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하기만 해도 형사처벌하는 등 20대 국회 최대 입법과제였던 ‘엔(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 중 대부분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담겼다.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데, 개정안은 소지·시청까지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았다. 엔번방 사건처럼 자신이 직접 촬영한 영상물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형량도 높였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강요한 자에게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형법 개정안에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살에서 만 16살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강간·유사강간을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엔번방 사건의 경우, 70여명에 이르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행·협박이 실제 범죄로 이어졌는지 입증되지 않아 가해자들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제] 엔(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에 대해 평가하라.

[답변예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판단)

사안이 쟁점은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처벌된다'는 것이다.

1. 음란물의 속성상 불법촬영물 여부를 유저들이 판단하기란 어렵다.
2. 소지·시청으로 범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피해가 없는 범죄).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살에서 만 16살은 타당하다.

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상대방을 강간으로 처벌하는 법이다. 우리나라 법안은 현재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관계는 의제강간죄로 성립시키고 있다. 13세 미만을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13세 이상 청소년들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들은 성관계를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스스로 내린 결론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하여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의제강간죄의 나이를 상향시키는 것이다.

067 집단휴진으로 인한 사망 책임

지난 26일부터 의사단체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가면서, 부산에서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받을 병원을 찾아 3시간가량 해마다 뒤늦게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28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 26일 밤 10시 56분께 부산 북구 만덕동 도로에서 ㄱ(47)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ㄱ씨는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받으려 경찰관과 함께 가다가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잠시 불일이 있다며 들렀다. ㄱ씨는 집에서 정체불명의 약물을 마신 뒤 밖으로 나온 뒤 “숨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밤 11시23분께 경찰관은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ㄱ씨를 근처 병원으로 옮겼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부산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약물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았다. 이와 함께 119구급대는 근처 대형 병원들을 직접 방문했지만, 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 기기 부족 등으로 환자를 받기 어렵다는 말만 들었다. 신고 접수 뒤 1시간20여분 동안 부산·경남의 대학병원 6곳과 2차 병원 7곳에 20여차례 문의했지만, 환자를 받지 못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119구급대는 지난 27일 새벽 0시16분께 소방청 중앙구급상황관리센터에 ㄱ씨를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이 ㄱ씨 상태는 악화됐다. 새벽 0시38분께 119구급대는 심정지가 온 ㄱ씨를 심폐소생술로 겨우 되살리면서, 치료 가능한 병원을 계속 찾았다. 새벽 0시55분께 소방청 중앙구급상황관리센터는 울산대병원에서 ㄱ씨를 치료할 수 있다고 119구급대에 알렸다.

119구급대는 27일 새벽 2시19분께 울산대병원 응급실에 ㄱ씨를 이송했다. 처음 신고 접수 3시간여 만이다. ㄱ씨는 울산대병원 응급실에서 급히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졌다.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던 ㄱ씨는 이날 오후 5시47분께 숨졌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 북부경찰서는 ㄱ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문제] 의사단체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의사단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답변예시]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제59조(지도와 명령)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쟁점) 적법한 파업인가?

의사, 변호사 등 직능단체는 파업권이 없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직접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개업의사는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립병원 등에 고용돼 급여를 받는 의사들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적어도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중 전공의 등 사립병원 소속 의사들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 중 일부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한다고 곧바로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적법한 파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대해서만 적법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즉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해야 적법한 파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을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 규정한다. 이에 해당하더라도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단체'와 '주요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명시한다.

일단 의사협회의 경우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업의사가 가입된 만큼 노동조합으로 간주되기 어렵다. 또 의료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해 만든 단체'라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노동조합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사립병원에 고용된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로 인정되면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조합의 실질적 요건은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단순한 친목 단체 내지 직능단체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면 노동조합성이 부정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인 '설립 신고'가 안됐기 때문에 의사협회는 물론 전공의협의회도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곧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하지만 법원은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단체행동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파업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은 2016년 3월 판결에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노동자단체가 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에게 인정돼야 하는 일반적인 권리까지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파업을 주도할 수 있다는 취지다.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이를 주도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를 노동조합이라고 보더라도 파업 목적에 따라 적법한 파업인지 여부가 갈릴 수 있다.

노동조합법 37조가 '쟁의행위(파업)는 그 목적과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어떠한 파업 목적이 적법한지에 대해선 명문화한 법 규정은 없다. 대신 '노동조합'과 '노동쟁의'를 정의한 노동조합법 2조 규정을 토대로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노동조합법 2조는 노동조합을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 노동쟁의를 '노사 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의한다.

이에 대법원도 2001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근로조건 향상'에는 현재의 근로조건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을 반대하며 이뤄진 이번 집단 휴진이 근로조건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한 파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파업을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 41조도 주목해야 한다. 조합원의 의사를 묻지 않은 일방적인 파업은 방법과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도 2001년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판단했다.

의사들의 집단휴진 자체가 헌법이 가장 중시하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파업권으로 보장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사태의 성격 규정과 관련, 의사협회는 '총파업'이라고 밝혔지만 정부는 '집단 휴진'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에서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를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협회가 1·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의사협회를 노조가 아닌 일종의 이익단체로 간주하는 인식하에, 이번 사안에 노동조합법이 아니라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정부 정책 철화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밝혔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려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보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판단, 인과관계설)

조건설은 만일 그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도 없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 결과는 그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원인설은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특히 원인으로 되는 것과 단순한 조건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만 결과에 대한 인과 관계를 인정한다.

상당인과관계설은 객관적으로 인과 관계가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참작할 때 그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 범위에서만 법률이 요구하는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건설에 따르면 A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원인설에 의하면 책임을 질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르면 A는 부분적인 책임 또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상당인과관계설로 해석)

1. 응급병원 전공의의 집단휴진은 불법 →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를 노동조합이라고 보더라도 노동조합법 37조가 '쟁의행위(파업)는 그 목적과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2. 응급실 근무가 의무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
3. 다만 국가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행했어야 한다. 즉,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4. 의료공백은 국가의 의료정책과 의사집단 간의 의사충돌이 발단이었던 것인 만큼 의사집단의 집단휴진의 불법적 행위가 있다고 해도 국가는 정책에 대한 설득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의 사례]

지난 6월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구급차와 택시 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 구급차 운전자와 응급환자의 가족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병원으로 일단 환자를 이송한 뒤 사건을 해결하자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사고처리를 다 하고 가라며 구급차를 막아섰고, 한참을 이어진 실랑이 끝에 환자는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지만 5시간 뒤 사망했다.

공개된 영상 속 택시운전기사의 "요양원에 가는 거냐",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는 발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미필적 고의)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떠한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행하여 결국 그 결과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인도로 차를 운전하면 사람이 차에 치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도로 질주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이다.

다만 운전자가 사람이 다니지 않는 차도를 운전하며 사람을 치는 일 따윈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과실'에 해당한다.

즉 '미필적 고의'와 '과실'의 구분은 행위자의 '고의성'의 존재여부에 달려있다. 위 사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살인죄'의 예를 들자면, 택시 운전자가 '내가 이 구급차를 막음으로 인해 환자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보내주지 않을 거야'하고 생각했다면 '미필

적 고의가, '잠깐 막는다고 죽지 않아. 설마 죽겠어?'라고 생각했다면 '과실'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죄의 성립과 처벌의 수준은 행위자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가 그 범죄의 발생을 직접 의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죄가 인정될 수 있지만, '과실'에 그치는 경우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죄를 인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의 수준이 한참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068 피해자가 반대하는 국민참여재판(강제추행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지난 11일, ㄱ 전 교수의 강제추행 혐의를 오는 12월 15~16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ㄱ 전 교수가 “국민의 시각으로 유무죄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은 ㄱ 전 교수의 뜻을 법원이 두차례나 거둬 수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의견을 내는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법정 형량이 높아 형사합의부에 배당된 사건에서 가능하다. 지난해 말 불구속기소된 ㄱ 전 교수의 강제추행 사건은 단독재판부에 배당됐다. 그런데도 ㄱ 전 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에 따라 합의부 재배당을 요구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해도 인격·명예 손상,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 추가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성범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법원 재량으로 배제 결정이 가능하다. 피해자도 이런 이유를 들어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합의부로 재배당한 뒤 국민참여재판까지 확정했다. “피해자가 실명을 공개하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언론 보도로 내용이 공개됐다”는 ㄱ 전 교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성범죄 피해를 신뢰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실명을 제한적으로 공개한 것이 국민참여재판의 ‘빌미’가 된 셈이다.

피해자는 “당시 서울대 인권센터가 ㄱ씨에게 정직 3개월을 권고한 상황에서 (정당한 법적 처벌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실명을 공개하고 제한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를 위해 조사를 받고 언론 인터뷰를 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낮선 배심원들 앞에서 피해를 재현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 사안에서 피해자가 반대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수용되어야 하는가?

[답변예시]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디까지나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대법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취지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되는 성폭력범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 예를 들면 피해자의 나이나 정신상태, 기타 법령에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 피해방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취지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나 정신상태, 국민참여재판을 할 경우 형사소송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에 부족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6.자 2015모2898 결정).

(사안의 쟁점)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해도 인격·명에 손상,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 추가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성범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법원 재량으로 배제 결정이 가능하다. 피해자도 이런 이유를 들어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합의부로 재배당한 뒤 국민참여재판까지 확정했다. "피해자가 실명을 공개하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언론 보도로 내용이 공개됐다"는 그 전 교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성범죄 피해를 신뢰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실명을 제한적으로 공개한 것이 국민참여재판의 '빌미'가 된 셈이다.

(판단)

성범죄 관련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논의는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이 성범죄 재판에 있어 피고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 성범죄의 특성상 아무리 기타 제도나 법령에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가 재판에 참석함으로 인해 겪어야 할 정신적 피해까지 온전히 보호해주기 어렵다는 점 등, 피해자의 거부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069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란 재판 이외의 권익 구제 방법으로 조정, 중재, 소액사건 심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정은 담당판사나 법관과 민간인인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간에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권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도록 하는 절차다. 법정절차에 따르지 않고 적당한 방법의 사실 또는 증거조사를 통해 당사자의 양보를 구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비법률적·화해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과 분쟁해결에 대한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비강제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소송과 구별된다. 중재는 당사자간의 상호합의하에 제3자(중재인)에게 법적으로 구속력을 지닌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소액의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한 소액사건심판법이 있다. 손해 배상 청구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주로 이용된다.

[문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장단점을 설명하라.

[답변예시]

(장점)

- ① 법원의 간섭이나 통제는 필요한 경우 최소한
- ② 관계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분쟁을 해결할 조정인, 중재인 등을 당사자 스스로 선임
- ③ 소송보다 비교적 절차진행이 신속하고 경제적이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
- ④ 절차의 진행이 법에 묶이지 아니하여 탄력적이며, 특히 엄격한 소송절차법칙이 적용되지 않음
- ⑤ 절차진행이 비공개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비밀이나, 개인의 이익이 잘 보호
- ⑥ 비형식적이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한 후에도 당사자간에는 재판에서처럼 적대적이 아닌 우의적인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음

(단점)

- ① 충분한 절차보장과 사실관계의 조사가 행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ADR 절차가 경제적·사회적 강자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절차로 전락할 수 있음
- ②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에 의한 분쟁해결만을 강조하다가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많음
- ③ 판단기준이 애매하여 주관적, 자의적이거나 양당사자의 주장을 단순히 반으로 나누는 식의 절충주의적 판단이 될 위험성
- ④ 당사자에 의해 선임된 중재인은 대리인 의식이 작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해할 우려
- ⑤ 상소절차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내려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부담해야만 하는 등의 문제

[참고]

ADR의 종류

- ① 화해
 - ㉠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한 화해
 - ㉡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의한 화해
 - ㉢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상 화해(제소전 화해, 소송상 화해)
- ② 알선 : 제3의 전문가에 의한 우호적 해결
- ③ 조정
 - ㉠ 법원의 민사조정(조정판사 및 조정위원 : 일방신청·직권조정 가능)
 - ㉡ 특별법상의 조정(개인정보, 전자거래, 금융분쟁, 무역분쟁 등)
- ④ 중재 : 중재법에 의한 중재(법적구속력 있음)

[경제(민주화)]

070 공유경제와 공유지의 비극, 제주도 클린하우스

(가) 공유경제는 ‘활용하지 않는 재화나 공간, 경험과 재능을 다수의 개인이 협업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나눠 쓰는 개방형 비즈니스 모델’을 일컫는다. 즉, 독점과 경쟁이 아니라 공유와 협동의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주인이 없는 한 목초지가 있을 경우(모든 이가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는 재화),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 마을 사람들 모두 이곳에 소를 방목하여 풀을 먹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목초지는 황폐화될 것’이라는 ‘공유지의 비극(미국 생물학자 하딘)’에 대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생산수단을 공유하며 경제 발전을 도모하던 동유럽 국가들의 국가경제는 무너져 내렸다.

(나) 클린하우스는 쓰레기 배출과 수거가 한 데 이뤄지는 거점을 말한다. 제주시는 재활용물 제고, 도시미관 향상, 행정비용 효율화 등을 들어 200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클린하우스’를 도입했다. 그런데 클린하우스에 분리 배출되지 않은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다.

관광객과 주민들이 버린 생활쓰레기에도 각종 페트병, 캔, 음식물쓰레기 등이 섞인 채 버려져 악취가 나는가 하면 쓰레기가 넘쳐 도로에도 나뒹굴고 있었다.

클린하우스에는 정해진 시간에 배출해 줄 것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있지만 한 음식점 배달원은 업장에서 나온 쓰레기를 버리고 가기도 했다.

이처럼 쓰레기 불법 투기가 이어지면서 단속되는 사례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클린하우스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820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제한 등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체계적인 단속이 뒷받침돼야 한다. 읍면지역 클린하우스의 경우 현재 합법적인 쓰레기 무단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어 과거처럼 일정 시간 집 앞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문전수거 방식을 대안으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문제 1] (1) 공유지의 비극과 (2)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생산 수단의 공유를 내세웠던 ‘공산주의의 몰락’의 두 현상을 공유경제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통해 설명하라.

[문제 2]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공유경제가 개인, 사회,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라.

[문제 3] ‘에어비엔비,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와 ‘위키피디아, TED TALK, LINUX와 같은 공유경제’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문제 4] (나)의 사례에서 클린하우스 제도의 쟁점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라.

[답변예시]

[문제 1] 공유경제란 재화나 공간, 경험과 재능을 다수의 개인이 협업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나눠 쓰는 온라인 기반 개방형 비즈니스 모델을 일컫는다. 독점과 경쟁이 아니라 공유와 협동의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겠다. 주목할 점은 소비자(소득) 중심의 경제(상대어 : 생산자 중심이 경제)라는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동체적 해결방식의 타당성, 상호감시, 상호 제재, 공유 자원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혹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다. 둘의 조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적절한 제도가 필요한데, 외적이거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강제가 아니라 신뢰를 통해 서로 강제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체 구성원은 구경꾼이 아니라 해결주체이기에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해 자율적 협약을 해야 한다.(오스트롬,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정치학자)

즉, 공유지의 비극과 공산주의의 몰락의 공통점은 '공유'이며, 차이점은 개인들에게 맡기는 방식과 국가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다.

[문제 2] 소비자 중심의 경제

[문제 3] 에어비엔비와 Uber 택시는 플랫폼 사업자가 중심주체가 된다. 즉, Uber 택시는 기업주도의 공유경제라고 할 수 있으며, 엄밀히 따져보면 소비자 중심의 공유경제가 아니므로 공유경제라고 할 수 없다.

위키피디아는 전 세계 사람들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함께 만들어 가는 웹을 기반으로 한 백과사전이다. 비영리 단체인 위키미디어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열어 두고 운영하기에 누구나 '편집'을 눌러서 내용을 고칠 수 있으며, 모든 정보를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즉, 설립과 운영주체는 재단이지만 콘텐츠를 채우고 활용하는 주체는 소비자다.

[문제 4] 인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혹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다. 둘의 조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적절한 제도가 필요한데, 외적이거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강제가 아니라 신뢰를 통해 서로 강제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체 구성원은 구경꾼이 아니라 해결주체이기에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해 자율적 협약을 해야 한다.

따라서 클린하우스의 운영은 공동체의 자율규약에 맡겨야 한다.

071 규제샌드박스

최근 드론이라고 불리는 무인항공기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무인항공기는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이나 조종에 따라 주위환경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드론의 이용은 인간을 대신하여 위험한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한다는 장점을 갖지만, 동시에 사고시 책임소재, 수집된 정보의 이용, 사생활 침해, 재산권의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자. 타인의 토지상에 설치된 실외 수영장 상공에서 드론을 운행하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그 드론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장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몇 가지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타인의 토지 상공에 진입한 경우 이 자체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지, 둘째, 드론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가 수영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인지, 셋째, 수영장 상공에서 드론이 수집한 정보는 피사체와 관련하여 누가 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등이다.

[문제] 이러한 쟁점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그 논거를 제시하라.

[답변예시]

쟁점은 급속히 발달하는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제이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법의 불비로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포지티브(positive) 규제란, 원칙적으로 법 안에서 허용되어있는 방안들만 허용하고 이 외에 모든 규제들을 금지하는 방안이다. 보통 이러한 포지티브 규제를 실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개발도상국으로 자국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이러한 포지티브 규제를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이러한 포지티브 규제는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도달한 지금, 누구나 신사업에 진출할만한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포지티브 규제에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까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신사업을 준비하는 창업자들을 좌절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 샌드박스(sand box)는 신기술이 출시될 때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실증특례 허가를 받은 기업은 일단 2년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기간에 문제가 없을 경우 1회 연장해 총 4년 동안 규제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렇듯 신기술에 대한 보호와 규제 또는 권리 등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둘 다를 옹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하다.

(규제 샌드박스 안전장치)

- ① 생명·안전·환경 분야 저해여부 고려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끼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특례 부여를 제한
- ② 문제 예상 및 발생 시 규제특례 취소실증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규제특례 취소
- ③ 손해배상 감독 강화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손해 발생 시 고의나 과실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토록 하는 등 손해배상 책임 수준 강화

(법의 영역에서의 규제 샌드박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르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에 처한다고 명하고 있어, '만약 시가 법률 사무를 집행한다면 시를 형사처벌해야 할 수 있냐'는 법적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072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

정부가 추진하는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법제화를, 업계는 자율규제 유지·개선을 주장하는 가운데 역외 사업자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로서 자율규제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재 국내 게임시장은 확률형 아이템을 자율규제 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는 강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한다. 확률이 높고 낮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토대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미준수 게임물을 공표한다. 이용자가 ‘나쁜 게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 근거를 제공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운에 따라 어떤 아이템이 뽑힐지가 달라지는 일종의 게임 내 ‘뽑기 상품’이다. 이용자에게 우연성에 따른 재미를 준다. 게임업계 핵심 수익 모델이다. 극도로 낮은 뽑기 확률과 반복 구매 유도로 지속 비판이 일자 업계는 자구책으로 자율규제를 도입했다.

자율규제 준수 수준은 80%다. 미준수 게임은 대부분 해외 게임이다. 구글, 애플 기준에 맞춰 공개하는 게임도 있고 전혀 고지하지 않는 게임도 있다.

기구는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자율규제 강령을 안내한다. 대표 메일부터 공식카페, 게임 매니저를 통해 준수 방법을 전달한다.

실효성과 역차별 지적이 나온다. 강령 개선을 통해 진일보한 수단을 마련해야 하지만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에 나선 뜻이다. 정부는 개정 게임법에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정보 표시를 의무화를 추진한다. 자율규제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연구를 시작하기조차 어렵다.

업계는 지금처럼 역외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지키지 않는 환경에서는 자율규제를 이어 가야 최소한의 견제라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입법 규제할 경우 통상마찰, 책임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지금처럼 공표라도 해서 이용자에게 최소한 정보라도 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제화할 경우 미준수 역외 사업자를 공표하면 국제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강령 개정을 통해 완성도 높은 자율규제로 나아간다면 입법 규제보다 이용자 편의 증진과 역외 사업자 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실효성 확보해 사행성 논란을 잠재우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하반기 중 입법에 앞서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문제]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에 대해 평가하라.

[답변예시]

쟁점은 자율규제와 국가규제이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무작위로 등장하는 아이템을 뜻한다. 1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한 유저나 1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한 유저가 확률에 따라서는 동일한 아이템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유저들은 국가규제를 찬성하는 입장이 다수이다.

2015년 3월 9일 발의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사행성 여부와 정도를 게임물에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했었다. 이 발의안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지만 당시 확률형 아이템이 얼마나 뜨거운 감자였는지 알 수 있는 사례였다. 이렇듯 정부에서 규제하려 나서자 한 발 먼저 게임업계가 나섰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를 중심으로 개발사가 모여 사행성으로 비난받을 여지를 줄이기 위해 자율규제를 하겠다고 밝힌 거였다. 하지만 정부와 게이머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말 뿐인 자율규제라고 생각했고 그럴거면 아예 확률을 공개하라고 거세게 압박했다. 그렇지만 업계에서는 확률을 표기하는 건 자칫 영업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면 강제적 확률공개는 거부했다.

하지만 자율규제는 어설프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정확한 확률이 아닌 구간별 공개하는 식이었으며 자율규제였기에 안 지키다고 패널티를 받지도 않았다.

한편, 그러던 중 터진 '데스티니 차일드'가 확률 논란은 게임업계가 제시한 자율규제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았고, 결국 게임산업협회(전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을 들고 왔다. 하지만 지금도 자율규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지금까지 자율규제를 하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확률형 아이템을 강제로 규제한다고 하니 그걸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얘기가.

(판단)

정부 규제안처럼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의 표시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년의 검증을 통해 자율규제에 대한 불신과 실효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또 다시 자율규제에 두는 것은 소비자보호측면에서 더 적합할 것이다.

다만, 현재 역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경쟁에서 이기야 하기에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게임업체의 논거는 설득력이 약하다.

073 리니언시 제도, 의무고발요청제도

(가)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이나 카르텔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과 징역 등 제재의 수준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시장의 지배 기업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담합은 속성상 내부고발자의 도움 없이는 알아내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도입되었다. 1978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30여 개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하는데 효과적이지만 부작용도 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담합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후 이 제도를 통해 감면혜택을 받고, 담합에 가담했던 하위 업체들만 처벌받는 결과를 내기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대한 째짜미(담합)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경제 검찰’로 일컬어지는 공정위의 독점적 감시에 힘을 실어주는 ‘전속고발권’ 때문이다. 정부는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38년 동안 유지해온 이 장치를 없애기로 했다.

우선 이번 전면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경쟁원리를 도입한 점이다. 대표적으로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가 폐지됐다.

(나) 2014년 1월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소극적 전속고발권 행사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근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됐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장이 공정위 소관 5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요청 시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공정위 소관 5개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등이다. 권한은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원장, 조달청장에 각각 부여됐다.

그런데 문제는 불공정 행위 신고 창구가 여전히 공정위로 일원화 됐다는 점이다. 이들 기관은 고발요청권한은 부여 받았으나 역할은 공정위가 1차적으로 고발하고 남은 사건을 각 기관 특성에 맞춰 배정받아 재검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관련 사건, 조달청은 공공부문 입찰 담합, 감사원은 전반적인 부문과 담합에 대한 재검토가 실제 역할인 셈이다. 자체 신고 창구조차 운영되지 않고 있고, 그나마 전담 인력이 배정되고 적극 활용하고 있는 곳도 중기부 뿐이다.

한 기관 관계자는 “제로베이스에서 고발 요청을 진행하면 실적이 많을 수 있지만 공정위에서 1차적으로 고발하고 난 뒤 넘어오는 사건들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을 진행하다보니 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 1] 리니언시제도에 대해 평가하라.

[문제 2]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대해 평가하라.

[문제 3]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경찰관과 검사들에게는 금전적 인센티브제와 이에 협조하는 범죄자에게 선처를 해주는 특별법(플리바게닝제도)에 대해 평가하라.

[답변예시]

[문제 1, 2]

정의의 실현을 위해 부정의와 타협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대원칙은 공정한 경쟁이다.

담합은 불법행위이다. 리니언시 제도는 불법행위와 타협하는 것이다. 또한 과징금을 면제해줌으로써 그들이 취한 부당이득(범죄를 통한 이득이라 볼 수 있다)을 인정해주는 결과가 발생한다.

또한 소액의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담합, 밀가루 담합 등),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어 청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국가의 과징금 부과를 통해 부당이득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사회기반시설의 재투자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마나 피해자의 청구권을 실현해야 함에도 국가가 부당이득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청구권)가 결국 소멸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4대강 사업에서 건설업체들의 담합은 국민 대다수가 피해자)는 더욱 그러하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과 관련된 법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공정 거래 위원회에 한정된 제도로서 본래 취지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독점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공정위의 소극적인 태도로 사실상 대기업을 봐주기 위한 면죄부로 전락했다.

지난 10여 년간 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 거래 행위 6,000여 건 가운데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은 1%에 불과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어 기업의 위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서도 누구든지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감시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의무고발요청권은 전속고발권제도하에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법 위반사건 중 중기부, 조달청, 감사원이 고발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에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불공정행위 근절 등을 위한 의무고발요청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20년 7월까지 접수된 362건 중 고발은 단 34건으로 고발률이 9.4%에 그쳤고 미고발이 318건 (87.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운영 규정상 법 위반 점수가 2.0 이상인 경우 고발 요청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2.0 이상 6건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중기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한 사건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지받아 고발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심의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을 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접수된 362건 중 무려 191건이(52.8%)이 운영규정상 시한인 180일을 넘겨 처리됐다.

전속고발권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정당성을 보여준다.

[문제 3]

플리 바겐(plea bargain)은 검찰이 수사 편의상 관련자나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이다.

플리바게닝 제도로 리니언시제도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074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청원경찰 정규직 전환 방침에 ‘취준생’(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엔 24일 오후 8시 기준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이것은 평등이 아니라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일부 누리꾼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비판하며 부러진 연필 사진을 에스엔에스에 올리는 ‘부러진 펜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문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입장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평가하고, 논거하라.

.....
[답변예시]

비정규직의 장점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고용의 탄력성, 인건비 절감을 들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동일노동 동일가치의 원칙에 위배되는 임금 수준과, 근로조건을 감수하면서 근무를 해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근로조건 차이는 점점 양극화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임금격차, 안정적 직업 등은 사회양극화 문제와 직결된다. 자유시장질서의 부정적 결과인 사회양극화를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직업의 안정성 보장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능력에 따른 보상의 차이를 들어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시험을 통한 선발로 공무원이 된 자 vs 비정규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공무원이 된 자). 일견 타당할 수 있으나 그들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익을 빼어서 주는 것, 취준생의 선호 직업이 아님)도 아니며 법익의 균형성에 비추어 봐도 타당하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유기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정년보장)한다는 것이 참 의미이다. 그리고 임금체계 및 승진규정은 일반 정규직과 다르다. 따라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075 부유세와 토지초과이득세

정의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슈퍼부자’ 상위 1%에게 초부유세 도입을 제안하는 등 민생 대책을 내놨다.

정의당은 먼저 슈퍼부자 50만명에게 초부유세를 신설하자고 했다. 자산에 대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이들의 종부세 3조 5천억 원을 차감하더라도 약 38조 8천억 원을 걷을 수 있어 재난극복을 위한 비상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심 위원장은 “슈퍼부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모범을 보이는 것은 조세정의와 함께, 무엇보다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통합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 1] 초부유세 도입에 대해 평가하라.

[문제 2] 고이득원칙하에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에 대해 평가하라.

[답변예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하나는 전쟁이득원칙(war-profits principle)으로, 납세자의 정상적인 평시 이득을 초과하는 전시의 소득증가분을 징수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고이득원칙(high-profits principle)으로 투하자본에 대한 법정 회수율을 초과하는 소득을 근거로 한다.

근대적인 초과이득세는 제1차 세계대전중에 세입 확보수단이자 전쟁으로 인한 초과이득 억제장치로서 처음 제도화되었다. 초과이득세는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1950~53) 때는 전쟁으로 인해 사업소득이 큰 타격을 받았던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과되었다. 고이득원칙에 근거한 초과이득세는 덴마크와 남아메리카의 몇 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평시 조세구조의 일부가 되었다.

초과이득세의 경제적인 효과는 보통 다음의 2가지 기본적 기준의 견지에서 인정되고 있다.

첫째, 경제에 안정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전시 '불로소득'(windfalls)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의 유용성 측면이다.

둘째, 경제적 동기유발, 생산수준, 사업지출에 대하여 가지는 효용성 측면이다.

(배경지식 : 우리나라의 토지초과이득세)

각종 개발사업(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개발사업 및 개발부담금)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희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11조제 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하기 위해서 시행하였다.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최초의 과세기간인 3년간(1990년-1992년)은 지가가 44.53% 이상 상승한 유희토지에 대하여 1991년과 1992년에 예정과세 하였고, 1993년에는 약 9천 5백억 원을 정기과세 하였다.

토지초과이득세는 1993년 이후에는 과세실적이 없으며, 그동안 미 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1994년 12월 22일 법 개정이 되었다. 97년 외환·금융 위기이후 경제의 어려움으로 자금난이 심화되고 개발 사업이 위축됨에 따라 법률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94년 7월 29일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유명무실화 되었다가 1998년 12월 28일 폐지되었다.

(판단)

고이득원칙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기본권 침해인가?

토지가 자동 상승한 것은 나의 권리인가?

076 스투어드십 코드

- (가) 스투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침으로 기관투자자들이 집안일을 맡아 보는 청지기(steward)처럼 수탁받은 돈의 자금운영을 자신의 돈처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침이다. 스투어드십 코드가 도입 되면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의 이익과 공익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나) 국민연금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탈(脫)정치 장치’가 다각도로 강구돼야 한다. 연금제도와 기금운용에서의 독립성·전문성·중립성 확보가 관건이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기업경영 개입 수단이 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논란 속에 도입해 ‘연금사회주의’ 우려를 키운 것은 이런 과제와는 거꾸로 간 것이다. 이런 파행이 계속되면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줄고 수익률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산술적 재정추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 [제시문]은 스투어드십 코드에 대한 찬반입장이다. 본인의 입장을 정하고 타당성에 대해 논거하라.(단, 자신과의 반대입장에 대한 반박을 포함할 것)

[답변예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다수 국민의 주권행사이다.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돈인 만큼, 국민연금기금도 당연히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함(중립성에 대한 비판)

[반대의견]

- ① 연기금 수익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주권 행사와 수익률 간 상관관계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 오히려 국민연금의 기업관여(Engagement) 행위가 해당기업과 시장 전반에 부정적 신호(Signal)로 작용해, 기업가치 하락과 연기금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②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명목으로 한, 기업경영 개입 정당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 (①과 ②에 대한 반론) 기업관여가 아니라 주주권 행사(당연한 권리), 갑질의 지배구조를 견인하는 목적, 오히려 긍정적
- ③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가입자의 대리인이지만, 정부나 정치권의 대리인이 아니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보험료가 민간기업 경영활동 개입에 활용되는 것을 '수탁자 책임(Stewardship)'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 ④ 기업의 지배구조는 개별기업 특성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확립·변화되어 온 만큼, 지배구조 간 우열을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적절한' 기업지배구조 형태가 좌우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관치 논란 및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정부개입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 (③과 ④에 대한 반론)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좌우되더라도 정부 또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 아울러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화 실현

077 해로운 외부성

배상책임은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보상이다. A와 B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비율이 A가 50, B가 50이라면 각각 상대방의 손해발생액의 절반씩 배상을 해주게 된다. 보험회사의 실무상 A가 차량 수리비의 전액을 먼저 지불하고 B의 보험사에게 수리비의 절반을 청구하고, 마찬가지로 B도 차량수리비 전액을 먼저 지불하고 A의 보험사에게 수리비용의 절반을 청구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A의 차량가액이 3억 원이고, B의 차량가액이 2천만 원인 상황에서 A, B의 차량은 모두 반파되어 수리비로 각각 1억5천만 원, 1천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A와 B는 각각 8천만 원씩의 수리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B는 본인 차량 수리비로 1천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총 8천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문제] 일부의 아주 비싼 외제자동차 운전자들을 위해서 대다수의 국산자동차 운전자가 그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대책을 제시하라.

[답변예시]

어떤 사람이 외제차를 구입하는 행위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금전적 손해를 가져다준다.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어떤 사람이 취한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가져다주면서 거기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다. 해로운 외부성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외제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 해로운 외부성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빚는다는 뜻이다.

외부성의 존재는 시장의 실패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회에 미치는 손해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에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가져다주는 행위를 해도 거기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과다하게 하는 결과가 빚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외제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높은 보험료를 받아야 한다.

비록 외제차 소유자가 직접 사고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그것과 관련된 비용을 높임으로써 사회에 손해를 끼친 데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 그리고 국산차 소유자와 외제차 소유자 사이의 공평성을 위해 외제차 소유자에 대한 보험료 증가가 필요하다.(이준구)

(판단)

수입차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국산차 운전자가 막대한 보상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 저소득층 운전자가 부담하는 상한액을 설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자동차 보험손해율에 비례해 외제차량의 보험료를 높이고 국산 중고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보험료를 내려서 공정한 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상 비용을 최대 5000만원 이내 또는 연간 수입 이내 등으로 정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078 임금피크제

현재 궁중 악장의 단장으로 활동 중인 살리에르, 막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능력을 안정된 직장에서 펼치고 싶은 모차르트가 있다. 황제는 살리에르의 능력도 모차르트의 능력도 놓치고 싶지 않는데 양쪽의 의견을 듣고 다음과 같이 결정을 내렸다.

(살리에르의 의견)

그간 역사 전통을 알고 알단의 지휘 노하우를 알고 있는 내가 그만두면 궁정악단의 손실이다. 노하우의 전수가 안된다. 나도 항상 같은 일을 반복하는 현재의 일자리보다는 새로운 일을 하고 싶지만, 안정적 일자리인 이 자리를 떠나기는 싫다.

(모차르트의 의견)

정규교육과정을 끝내고 온 젊은 능력있는 인력들이 안정적 직장을 원한다. 취업이 순탄치 않으면 관련 공부를 하는 젊은이들이 배움의 의지가 사라진다.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 해외로 나가게 되면 국력의 손실이다. 현재 궁정악단은 젊은 피의 수혈을 해야 발전한다.

(황제의 결정)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으니 살리에르의 임금을 현재와 같이 동결하고 인상 예상 분 만큼의 급여로 모차르트를 어시스트로 채용한다.

[문제 1] 살리에르 혹은 모차르트 입장 중 타당한 입장은 어떤 것이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 2] 황제의 결정은 과연 옳은가?

[답변예시]

임금피크제 문제이다.

임금피크제는 고령화문제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도입되었다.

아버지 세대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취업의 상황을 유지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되는 비용과 시간을 청년이 메꾸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결국 아버지세대의 것을 청년세대와 나누는 방식으로 사회적 부의 크기(일자리 개수)가 고장되어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일자리의 수를 쪼개서 늘릴 것이 아니라 투자로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노인연령을 또는 국민연금지급시기를 늦추는 등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 노인에게 책임을 더 하는 것은 권한도 상승시켜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즉,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정책과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청년실업의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다.

결국 청년의 책임을 증가시키게 되며, 청년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는 구조적 문제를 낳는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수를 통해 고령화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청년실업문제를 눈높이의 문제로 보는 시각)

눈높이의 차이는 임금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동일노동동임금원칙에 준하여 임금의 격차가 크지 않다면 눈높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079 최저임금제, 최고임금제, 생활임금제

- (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甲아파트에서는 최저임금에 맞추어 경비원의 봉급을 지급하는 관리비가 상승한다는 이유로 입주인대표회의를 거쳐 경비원 5명을 해고하였다. 그 중 경비원 A는 시간제로라도 일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입주인대표회의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낙담한 A는 자살하였다. 참고로 올해의 최저임금은 8,590원이며, 2021년에는 8,720원(2020년 대비 1.5% 인상)으로 결정되었다.
- (나) 최고임금제란 최고소득 상한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최고소득상한제는 생활기본급에 대한 최저임금을 정하고 그 이하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듯이, 최고소득의 한도를 정하고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그 소득에 대해 최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 (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생활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10,150원(2020대비 1.5% 인상)으로 최종 결정했다. 도는 지난 2017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제주도 공무원 노동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등 공공부문 노동자와 민간위탁 소속 등 준공공 부문 노동자에게 적용한다. 한편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제주도는 형식적인 성과 위주의 생활임금 심의·결정이 아닌 실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시급 기준 11,260원을 요구한 바 있다.

[문제 1] (가)에서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과 그 이유를 열거하고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아울러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평가하라.

[문제 2] (나)의 최고임금제 도입에 대해 평가하라.

[문제 3] (다)의 생활임금제에 대해 평가하라.

[답변예시]

[문제 1] 최저임금이란 생존을 위한 최저의 임금을 의미한다. 생명권과 생존권의 최소보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쟁점은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고용감축과 실업문제이다.

이러한 역기능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전가해서는 안된다. 국가의 책임이다.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즉 예상되는 역기능을 정책으로 제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나 이는 부당하다.

차등적용에 대해 살펴보면

- ① 지역에 따른 차별 :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에 반함.
- ② 업종에 따른 차별 : 임금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임.
- ③ 연령·이주노동자에 따른 차별 :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에 반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반함.

미국은 주 정부나 시와 카운티의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역시 일반적으로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게 설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견인(인센티브) 또는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

[문제 2]

최고임금제는 정의당에서 발표된 균형 잡힌 소득 재분배를 통해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와 같은 사회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하나의 방안이다.

즉, 최고임금제의 취지는 근로자간 임금에서의 형평성이나 사회 불평등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제시된 것이다. 다만 실제 대상자들이 고위 공직자 혹은 국회의원 또는 민간기업의 CEO와 같은 나름 사회에서 성공한 인물들이다.

상위층에 대한 실질적인 정의의 기법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대해 철저히 준수시키는 것으로 그 높은 연봉에 대해 실질적인 노동적인 가치가 있었는지를 묻는 것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제 3]

생활 임금제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등에서 노동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따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 임금보다 높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헌법 33조 1항은 "국가는 근로와 고용증진,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최저임금제는 "시행하라"고 강제성을 띠고 있고 적정임금은 "노력해야 한다"라는 임의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즉, 생활임금제는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법규에는 강행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다. 임의규정은 간단히 말하면 사적 자치에 맡긴다는 것이다. 즉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개개인 또는 계약당사자들에게 자율을 주겠다는 것이다. 반면에 강행법규 (강행규정)은 법률로 정해진 것을 말한다. 즉 최저임금제는 강행규정이요, 어기게 되면 법의 저촉을 받게 되는 것이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는 높게 책정되므로 노동자들의 최저 생활보장 위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소속이 아닌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080 고용허가제

전남의 한 양식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폭언,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업주를 경찰에 신고했다.

시민단체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23일 목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남 김 양식장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사건 조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동남아시아 출신 ㄱ(25)씨와 ㄴ(23)씨는 각각 지난해 10월과 12월 해남 김 양식장에서 36개월간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올해 4월까지 하루 13~14시간의 노동을 했다. 사장 이아무개씨와 가족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실수할 때마다 욕을 하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언,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장화와 작업복은 노동자 개인 돈으로 충당했고 외국인등록증은 이씨가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 체불임금도 있어 노동청에 신고한 뒤에야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올해 4월24일 이씨는 ㄱ씨 등에게 ‘일이 없으니 나가라’고 했다. 이에 ㄱ씨 등이 다른 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하자 이씨는 욕설과 함께 ㄱ씨 등의 짐을 밖으로 빼놓는 등 내쫓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ㄱ씨 등은 광주 외국인 쉼터를 전전하며 고용노동부 목포고용센터를 통해 다른 업체를 알아봤지만 이씨의 허락이 없어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ㄱ씨 등이 지난달 8일 다시 양식장으로 돌아가자 이씨의 아버지가 캄캄한 방안에 가두고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바다, 농촌 등 고립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가 자주 발생하지만 폐회로텔레비전(CCTV)등 증거가 없어 처벌받는 사업주들이 드물다. 행정당국은 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이주노동자들의 피해 신고를 구체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 사안의 쟁점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답변예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 자발적 의사에 의한 사업장 이동 규제, 가족 동반 입국 금지

고용허가제는 2003년 시행돼 올해 시행 15주년을 맞은 제도로, 법적으로 3년간 3번의 사업장 이동만이 가능하고 이를 어길 경우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된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를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하였다.

근로조건 위반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성폭행 피해 시 긴급하게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숙소 기준 미달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등을 추가한 것이다.

고용허가제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저임금·장시간노동에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는 상태에 이주 노동자를 사업장에 묶어 놓음으로써 사업주의 착취를 보장하고 이주노동자의 협상력을 박탈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도 안에서 사실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이주노동자 입장에서 사업장 내의 부당한 처우나 착취, 비인간적 대우, 감내할 수 없는 근로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업장 이동을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이탈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정부는 사업주의 이해만을 반영하여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을 금지시켜 놓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이주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려먹도록 하고 있다. 그 예외적인 경우에도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이동해야 하는 사유를 입증을 해야 하는데, 사업주에게 종속된 이주노동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사업장 이동을 하지 못해 절망한 이주노동자가 자살하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고시에 정해져 있다. 부분적으로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 ① 근로조건 위반의 사유에 있어 임금체불의 경우 '월 임금 30퍼센트 이상 금액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월 임금 10퍼센트 이상 금액을 4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등인데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량판단을 삭제한 것처럼 고시했지만, 여전히 그 기준은 모호할 뿐더러 일부 항목에는 그대로 '근로관계 근속판단'의 여지를 그대로 남겨두었다. 월 임금 10퍼센트 미만 금액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인가?
- ② 또한 '근로시간대를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동의 없이 2시간 이상 앞당기거나 늦출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동의'의 방식을 어떻게 볼 것인지 확인 할 수 없다. 무엇을 동의로 볼 것이고, 또 이면계약서라도 만들어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분란을 조장할 것인가?
- ③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어 긴급하게 사업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사유로 추가되었는데 문구로만 보면 이 역시 노동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 ④ 주거문제에 관해서는, 숙소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추가되어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사유 모두 '시정명령'을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숙소시설을 전부 점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지 의문이다.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숙식비 강제 징수 지침의 폐기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2차 UPR(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우리 정부의 답변]

이주노동자협약은 검토 결과 현 상황에서는 국내법과 불합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 즉시 비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ILO의 핵심협약 4개의 경우는 국내법과 불합치, 협약의 구체적 적용범위에 대한 정부와 ILO의 해석 차이 등의 이유로 비준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비준을 목표로 하여 관련법 개정 등 부처간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의 문제점]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63조 (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위와 같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침해 심각

우리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명문 또한 설득력 잃은 지 오래 ← 3D업종의 인력 대체

081 가사노동자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인 16일 노란 앞치마를 입은 가사노동자들이 국회 앞으로 모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의 사각지대에 몰린 가사노동자의 법적 권리와 생계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가사노동자 128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전년도 월평균 소득 107만원에서 40%대의 수입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소득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고객이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본인 소득이 가계소득의 전부라고 응답한 노동자는 25%에 이르고, 18.7%의 노동자가 빚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회견에 참가한 한 가사노동자는 10여 년을 같이 한 고객에게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하루 아침에 해고되었다며,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무척 서운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뉴스를 보고 사무실에 문의했지만 받기 어렵다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제] 우리 법은 가사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가사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 되었다. 이에 대해 평가하라.

.....
[답변예시]

가사사용인은 근로자에서 제외된 이유

- ① 가족의 개념으로 포섭 → 과거, 현재는 고용(계약)관계로 봐야 함
- ② 업무시간 및 업무영역 불분명 → 업무기준을 정하면 해결

근로자로 인정되었을 때의 장점

- ① 가사노동자의 법적 권리
- ② 음성경제의 양성화(현 추정 가사사용인 30만~50만)

082 지역화폐

부산시가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의욕적으로 도입한 지역화폐 ‘동백전’이 위기를 맞았다.

7일 부산시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12월30일 출시된 동백전의 가입자는 지난달 28일 75만명을 넘겼다. 부산시민 350만여명의 21.4%다. 또 지난달 28일 기준 동백전 충전액은 4600억원이다. 올해 목표 충전액 3000억원을 50% 이상 초과했다. 충전한 뒤 물품을 사려고 사용한 금액(결제액)은 4000억원이다. 동백전이 낙담 전 출시된 것을 고려할 때 예상 밖의 성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일등공신은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되돌려 주는 캐시백 비율이다. 부산시는 1월까지 동백전 사용금액의 10%를 되돌려 주고, 2월부터 6%를 되돌려 주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올해 6월까지 10%를 되돌려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캐시백으로 사용할 재정이 부족하다며 지난 1일부터 캐시백 지급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50만원,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6%로 낮췄다. 이런 조치로 동백전 사용자들은 지난달까지 많게는 10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이달부터는 3만원만 돌려받는다. 부산시는 긴급 편성한 추가예산 100억원마저 소진되면 캐시백을 중단할 계획이다.

[문제] 각 지자체 마다 지역화폐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

[답변예시]

지역화폐는 두 가지 지향점에 따라 나뉜다.

① 공동체활성화가 목적일 경우 : 법정화폐와의 태환 가능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구성원간의 관계형성에 초점을 맞춘다. 신뢰구축이 필수기 때문에 화폐의 유통범위가 좁아진다.

② 지역순환경제가 목적일 경우 : 지역 내 자본의 외부 유출 방지가 목적이다. 또한 지역 경제와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정화폐로 환전이 가능하다.

(긍정적 효과)

① 특정지역 내에서 소비 진작

② 현금보다 빠르게 지역소비 지역소비 진작 가능성

③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경제 활성화

④ 정부보조금을 전체 민간소비 증가 가능성

(부정적 효과)

① 인접지역의 소비 감소

② 지역 업종 제약으로 현금보다 낮은 활용성

③ 지자체간 양극화 심화

④ 지하경제 증가 및 단속비용 발생

⑤ 형평성의 문제 : 정보의 비대칭에서 발생하는 접근성의 문제.

⑥ 경제력(소득)의 문제 : 여유돈없는 서민층이나 소외계층의 또 다른 소외, 즉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거나 구매력이 없는 사람은 세금만 내고 있는 것이다.

⑦ 국가 및 지방재정의 악화 : 지방세 세금으로 선심성의 문제(예 : 인천 서구가 발행하는 서로e카드의 캐시백의 지급 비용은 행정안전부 40%, 인천시 20%, 서구 40% 비율로 감당하고 있다. 일반 국민이 내는 세금과 지방세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⑧ 결과적으로 세금증액 : 결국 퍼주기식 예산은 또 다른 세금 증액을 만들게 된다.

(판단)

100만원 20% 캐시백을 보장한다면 누군가는 이에 대한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총당할 수 밖에 없고, 세금 증액 없이는 자금이 고갈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083 AI 판사

영국 옥스퍼드대의 한 연구진은 2030년까지 판사라는 직업이 인공지능에 밀려 사라질 확률이 40%라고 분석했다. 이미 미국에선 인공지능 변호사가 판결문과 소장을 분석해 승소 확률을 제시하고, 미국의 한 IT 업체가 개발한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는 대형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다.

(가) 인공지능은 학연·지연 등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 자료로만 법률적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법 조 비리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련 자료 수집이 가능하므로 재판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나) 인공지능에도 편향된 정보가 주입되면 편향된 판결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해킹된다면 상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가장 우선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인공지능은 결코 인간의 종합적인 가치를 판단하지 못할 것이다.

(사례)

갑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성장해 왔으며 현재도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 갑은 아버지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사채를 쓰게 되었고, 사채 빚에 시달리던 어느 날, 택시기사를 흥기로 위협하며 “죄송합니다.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한 뒤 15만원을 갈취하여 달아났다.

을은 부유한 집에서 성장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을 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각종 유흥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느 날 을은 유흥비가 부족하여 택시기사를 흥기로 위협하고 15만원을 갈취하여 달아났다.

[문제 1] 인공지능 판사가 (사례)의 갑과 을에 대해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예상해보라.

[문제 2] 인공지능이 판사와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 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인공지능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예상해보라.

.....
[답변예시]

[문제 1] 인간의 직관 및 도덕적 양심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겠는가?

① 기계는 책임 등을 고려하지 못한다.

② '인간은 정량화를 하지 않고 결정,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수치로 표현한다'며 '수치가 오류가 날 수도 있고, 그 안에 도덕적이고 감정적인 가치 판단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문제 2] [문제 1]에서와 같이 오류가 발생한다면 결국 인공지능 판사의 도입은 보류될 수 밖에 없으며,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판단이 필요없는 사건에만 가능할 것이다.(공존 가능)

[문제 3] 현재는 양심이란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 대법원은 양심 판단 기준을 깊고, 확고, 진실이라고 규정하였다. 대법원의 기준만을 따져보아도 무엇이 깊고, 확고, 진실한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할 것이다.

084 로봇세

빌게이츠가 주장한 로봇세는 로봇이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앞으로 생활 전반에 보급될 로봇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로봇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세금을 매겨 인간을 위해 쓰는 동시에 로봇의 노동 대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논리다.

로봇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인간을 대신해 일하는 로봇을 생산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무인 반도체 공장에서 만든 칩이 로봇 운전기사에 탑재되는 식이다. 이처럼 로봇이 주체가 되는 사회의 부속물로 전락한 인간이 소외되지 않도록, 로봇세로 인간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로봇세를 도입하면 로봇 산업의 기술 발전을 저해할 것이란 반론도 있다.

[문제] 로봇세 부과에 대해 논거하라.

.....
[답변예시]

로봇세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의 생산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① 로봇은 생산성을 위한 도구이다. 도구의 개선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에 따른 세금도 더 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로봇세의 생산성에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② 로봇세는 로봇의 도입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인가는 의문이다. 오히려 로봇세 부과가 로봇산업발전과 혁신을 가로막아 경쟁력과 고용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판단)

로봇도입의 부정적 효과보다는 로봇의 생산성을 고용과 연계하여 노동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국 제]

085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출입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국방부의 공식적인 유권 해석이 나왔다. 그동안 유엔사가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까지 불허하는 등 월권을 넘어 주권침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분명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국방부는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권한이 군사적인 것에만 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전협정 서언에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여태까지 국방부는 같은 질문에 즉답을 꺼리며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 출입 및 군사분계선(MDL) 통과 등에 대한 승인 권한을 보유”한다며 사실상 유엔사의 ‘포괄적’ 권한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해왔다. 통일부는 같은 날 “2018년 이후 유엔사는 ‘안전’ 등을 이유로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DMZ/MDL 통과를 거부한 바 있다”며 “정전협정에서는 유엔사의 권한에 대해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유엔사의 조치는 정전협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전협정 서언과 1조 7~9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사안에 한해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특별한 기준 없이 비군사적인 출입도 제한해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켜왔다. △2018년 8월 남북철도 경의선 북쪽 구간 현지조사 통행 △2019년 2월 새해맞이 금강산 남북 민간 행사 취재 장비 반출 △2019년 6월 태봉국 철원성터 남쪽 지역 현지조사 △2019년 6월 한·독 통일자문위원회 고성 감시초소 방문 △2019년 8월 통일부 장관 대성동 마을 방문 기자단 출입 △2019년 10월 전국체전 100회 기념 공동경비구역 성화 봉송 등을 모두 불허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사에서 (출입 승인을 불허할 때마다) ‘안전’한지를 증명하라고 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이미 국방부는 비무장지대에서 미확인, 유실 지뢰로부터 안전이 확보된 곳에 한해서만 승인 요청을 해왔고, 안전 문제도 국방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엔사가 ‘안전’을 이유로 출입을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문제] 사안의 쟁점에 대해 논하라.

[답변예시]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의 주체는 다를 수 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정전협정, 나아가 평화협정을 통한 한반도의 미래비전이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미국)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중공(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맺은 협정으로서 이 협정을 통해 6·25전쟁이 정지됐다. 남한은 전쟁의 주된 교전국이었지만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또한 정전협정은 말 그대로 전쟁을 일시 중지시킨 것이지 항구적인 평화장치가 아니어서 그동안 남북한은 정전협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여왔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남한을 외면하고 미국과만 평화협정을 맺기를 고집했지만 남한과 미국이 반대하여 종전협정이 체결되지 못했다. 2018년부터 이어진 남북·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전선언을 넘어 종전선언으로 나아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북한 핵 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추가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당시 한국군 원수였던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고집하며 서명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서명 당사자 명단에 남한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이다. 다만 전사작전권을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위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협정은 효력이 있었다.

북한은 이런 이유로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의 당사자들이 일차적인 주체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가 아닐 뿐더러 정전협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이다. 때문에 북한은 정전 이후 유엔군을 대표한 미군을 수석대표로 상대해왔고 한국군 수석대표는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반면 우리군은 유엔군 소속이자 일원인 만큼 국제 관례상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남한은 실질적인 전쟁 당사자이자 피해자였기 때문에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있고 국제법상으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일각에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말하기도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 당사자인 남한이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화협정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연합군을 편성해 작전하는 경우에는 정전협정 당사자와 평화협정 당사자가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평화협정은 정전체제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남북한, 미국,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을 통해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지는 방식이 검토되기도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심 당사국들이 모두 서명 당사자가 됨으로써 이해관계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평화협정의 체결권자가 국가원수라는 점에서 체결권자가 군사령관인 정전협정과 다르다"면서 "국제적으로 종전협정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평화협정의 당사자와 정전협정 당사자가 일치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남한은 전쟁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만큼 평화협정의 법적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2007년 10·4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정전체제를 종식하기 위해 3자 또는 4자 정상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남한을 평화협정 실질적 당사자로서 인정한다는 합의를 담고 있는 것이다.

086 전시작전권

전시작전권은 원래 노태우 대통령 시절 한미가 합의한 것으로 별다른 조건 없이 반환하기로 한 것이었다. 평시작전권은 김영삼 정부 시절 1993년에 환수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1995년에 전시작전권까지 완전히 환수한다는 일정까지 합의해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북 핵개발을 이유로 연기시켜 놓았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2012년 4월 17일에 전환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그런데 이걸 이명박 대통령이 2015년 12월로 미뤄놓고,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러서는 이른바 한국군의 능력과 주변 안보환경 등 ‘조건’을 달아 사실상 무기한 연기시켜 놓은 것이다.

상황이 바뀌니 이제 미국이 까다롭게 나오는 그 전작권 반환 ‘조건’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 3가지인데, 첫째, 북핵·미사일에 대한 초기대응능력, 둘째,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주도능력, 셋째, 한반도 및 지역안보 관리능력이다.

첫째 조건인 북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대응능력이란, 킬체인(Kill Chain: 북 탄도미사일 선제적 제거)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북 미사일 공중 요격), 대량응징보복(KMPR: 북한 도발 때 전쟁 지도부 제거) 등 3축 체제 구축을 말한다. 사실상 북과 전쟁하자는 것이고 선제타격, 참수작전 등 한미 연합훈련에 적용하는 미국 작전계획에 대한 집행 프로그램들이다. 전작권 반환과정에서 미국이 검증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대북전쟁계획 수행능력이고,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전작권을 반환한다는 내용이다.

둘째 조건은 한미연합사와 관련돼 있다. 현재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인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다. 전시작전권이 한국에 넘어갈 경우 한미연합사 구성과 운영, 한미연합군의 합동전력관리상 변화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10월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기로 합의했지만, 미국 부사령관이 다시 유엔사 사령관을 맡고 한미연합사는 유엔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셋째 조건은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 한반도 및 지역안보환경 관리능력이라는 것인데, 결국 미국의 대중국·대북전략의 전초기지 역할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축으로 주한미군을 운용하고자 하며, 여기에 맞게 한미일 군사동맹을 재편하고 그 하위에 한국군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한다.

이렇듯 미국이 말하는 전작권 검증이란 이런 방향에서 한국군이 움직이면 전작권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제] ‘전시작전권 반환’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답변예시]

(군사주권)

전시작전권 반환(UN)을 우리의 국방능력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곧 세계전(이데올로기 전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시작전권 반환을 약속한 UN(미군)은 한국군을 유엔사 사령관 밑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시작전권을 무력화하려는 공수를 부리고 있다. 게다가 한미연합사 사무실을 한국 국방부가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에 뒀다 하다고 했으니, 한국군 출신 한미연합사령관이 평택미군기지에서 유배를 살게 될 판이다.

사실 이것은 논쟁거리도 되지 않는 사안이다. 한국군은 한국군대로 운용하고, 주한미군은 주한미군대로 운용하다가 필요하면 협력하고 필요 없으면 주한미군은 나가면 그만이다. 그런데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는 하는 것을 대전제로 놓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 미군 부사령관 위에 한국군 대장이 있고 그 위에 미군 부사령관이 유엔사 사령관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사실 이 그림은 공식적인 유엔조직도 아닌 유명조직인 유엔사가 60만이 넘는 한국군과 막강전력을 가진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기형적인 현상이다. 우리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명백해진다. 원래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이 전시작전권을 받아오는 데 그 무슨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전작권을 돌려받는 '조건', 돌려주는 '검증'이라는 희한한 발상 자체가 사대노예근성의 산물이다. 그리고 전작권 반환 '조건'이라는 것도 국민들로부터 탄핵받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합의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반환을 원칙으로 삼고, 기존 합의에서 말하는 '조건'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무조건 임기 내 전작권을 돌려받아야 한다.

(전시작전권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과거 일본과 독일은 인류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독일은 동서로 분단되고 전 국토의 약 20%를 폴란드에 양도하는 대가를 치렀다. 같은 전범 국가 일본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대신 대신 전쟁을 하지 못하는 평화국가로 거듭났다. 군사력 보유와 교전(전쟁)권을 금지하는 평화헌법이 그것이다.

보수세력들은 평화헌법이 일본을 비정상적인 국가로 만들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교전권을 가진 '보통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아베 총리의 적극적 평화주의론은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과 더불어 '평화를 위한 적극적 군사 활동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선 집단적자위권(교전 권) 행사가 가능해야 하며, 군사력 강화가 따른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이 재정적 부담을 덜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일본의 군사력이 필요하다. 1997년 미-일 간에 신가이드라인(방위협력지침)이 책정된 후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군에 대한 지원을 명분으로 일본은 2000년대 들어와 이른바 전쟁법 (주변사태법, 유사 3법)을 제정하여 전쟁 수행을 위한 국내 체제를 정비했다. 아베정권이 평화헌법의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자위권을 가지려는 것은 국내의 전쟁법 체제를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문제는 과거 전쟁에 반성이 없는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교전권을 가지면서 침략을 되풀이 하고 한국 안보를 직접 위협한다는 점이다. 미국을 배경으로 일본이 군사력을 키우면 한국은 비극을 맞았다. 러일전쟁에서 미국이 주선한 포츠머스 조약으로 일본은 조선을 보호국화했고,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조선의 식민지화를 앞당겨 졌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동북아의 안보질서를 변화시킨다. 한미일의 삼각체제에서 한미동맹은 미일동맹의 종속변수이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이 커지면,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일본의 '관리'에 맡길 수 있다 는 우려도 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사시 미군과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공동 작전을 전개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연결고리이다.

087 강제징용배상판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일본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것이며 한반도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협정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이○○ 씨는 대전 시장의 추천을 받아 보국대로 동원돼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사실상 감금 당한 상태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처음 6개월간은 외출도 하지 못했고 임금은 지급해준다는 말만 듣고 구경도 못했다. 헌병들은 보름에 한번 노역장에 와서 인원을 점검했다.

상황은 야하타 제철소에서 노역한 다른 원고 김○○ 씨도 마찬가지였다. 군산부(지금의 군산시)의 지시를 받고 모집돼 일본에 온 그는 일체의 휴가나 개인 행동을 허락받지 못한 채 임금도 못받고 노역을 했다. 그는 도주하다 발각돼 7일간 심한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오사카 제철소에서 일한 여운택 씨와 신천식 씨는 ‘한반도의 제철소에서 기술자로 취직할 수 있다’고 기재된 모집 광고를 보고 응모했지만 실제로는 죽도록 노역만 해야 했다. 한달에 1~2회 외출만 허용됐고 2~3엔의 용돈만 지급받고 월급은 받지 못했다.

1997년 12월 고된 노역을 하고도 임금을 착취당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강제징용 피해 보상 및 임금 배상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1965년 한일 양국이 맺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과정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은 2005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 2심에서는 일본 재판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은 2012년 5월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2013년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일본 기업이 불복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갔고 5년 2개월이 지나서야 결론이 났다.

[문제]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대해 평가하라.

[답변예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은 한국과 일본의 일관된 주장에 의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자기의 해석에 맞춰 배상판결을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강제징용배상판결 역시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이루어 졌다.

따라서 배상판결의 정당성 여부는 논점이 아니다.

우선은 일본의 책임에 앞서 우리 국가의 책임 여부를 살펴보면

(일본의 주장이 옳다면) 즉, 배상 포함이라면 국가가 돌려 줘야 하고,

(한국의 주장이 옳다면) 개인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안부, 강제징용의 원인인 국권 상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강제징용배상판결의 또 다른 시사점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다. [문제 50번] 참고

1940년대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 한번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1·2심이 끝나기까지 6년여가 흐르는 사이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 유족들만이 승소 소식을 전해 들었다.

서울고법 민사13부 (김용빈 부장판사)는 곽 모 씨 등 7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일철주금이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곽씨 등 이 사건의 원고들은 태평양전쟁이 벌어진 1942~1945년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 (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 (후쿠오카현) 등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된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소송이다.

앞서 2012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 2013년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곽씨 등은 2015년 1심에서 "신일철주금이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앞선 1차 소송의 재상고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판결을 보류했으나 확정판결은 하염없이 미뤄졌다.

확정판결이 이렇게 늦어진 배경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 소송을 정부와의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이 지난해 시작된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결국 1차 소송은 제기된 지 13년 8개월 만인 지난해 10월에야 확정판결이 났다.

4명의 원고 중 살아서 선고를 들은 이는 이춘식(95) 씨 한 명뿐이었다.

1차 소송의 확정판결이 끝난 뒤에야 재개된 이번 2차 소송에서는 항소심 판결조차 단 한 명의 원고도 듣지 못했다.

올해 2월 15일, 원고 중 유일한 생존자이던 이상주 씨가 별세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7명 원고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으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2019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추가 소송에 참여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충) 베트남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소송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피해를 입고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생존자 대리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장한 군인들이 비무장 민간인을 살상해서는 안 된다는 확인을 구하고자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 응우옌티탄의 대리인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학살로) 가족이 사살당하는 피해를 입었기에 위자료 3천만원을 (한국정부에) 청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리인단은 또 “당시 거주했던 마을 주민 진술·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의 감찰 보고서, 남베트남 군인이 작성한 보고서, 참전했던 한국 청룡부대 소속 군인 진술이 증거 요지”라고 덧붙였다. 1968년 2월12일 베트남전에 참가한 한국군 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은 베트남 풍니마을 등에 들어가 비무장 민간인 74명을 학살한 것으로 미군 보고서 등은 기록하고 있다.

반면, 정부쪽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은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부쪽 대리인은 또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학살을) 믿기 어렵고 미군 감찰보고서는 일부 피해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제출됐기에 전체 보고서가 제출될 필요가 있고 풍니마을 사고를 민간인 학살로 오역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해자 대리인단은 민간인 학살을 입증하고자 “당시 참전 군인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며 증인신문을 위한 사실조회 확인을 재판부에 신청하기도 했다.

[문제] 정부쪽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의 입장에 대해 평가하라.

[답변예시]

한국 정부의 사과와 지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가장 활발했다. 1998년 베트남 방문 당시 "양국 간의 불행했던 과거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국가원수에게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 본의 아니게 베트남 국민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다시 사과했다. 피해 지역에 교실 580개를 지어주기도 했다.

국가배상법 2조 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 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우리 판례는 '법령 위반'에 관해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 뿐만 아니라 인권 존중, 권력남용 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이 민간인을 집단 살상한 행위는 인권 존중, 공서양속 등에 위반돼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임으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될 것이다.

그런데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된다고 했을 때, 마주하게 되는 문제는 '소멸시효'다. "국가배상 청구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기산)와 5년의 장기 소멸시효(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기산)가 적용되며, 소멸시효는 단기나 장기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도래하면 완성된다"는 점에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은 1960~1970년대에 발생하였으므로 5년의 장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바로 고엽제 소송과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이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우리나라 군인들이 고엽제로 인해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그것이 고엽제가 원인이라는 걸 알지 못한 채 지냈던 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에도 구 미쓰비시의 불법 행위가 행해진 후 1965년 한일 간 국교가 수립될 때까지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의 국교가 단절되어 있었던 점 등,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걸 고려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미군 기지촌 '위안부' 소송(서울고등법원 2018년 2월 28일 국가 책임 일부 인정 판결)에서 국가의 중대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까지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판단)

더 늦지 않게 특별법 만들어 민간인 피해 진상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각각 베트남 전쟁에 대해 언급한 바는 있지만, 정부 차원의 조사 자체가 없었다.

한국군에 의해 9천여 명의 베트남 민간인이 살해당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20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환경과 개발]

088 지속가능한 발전(환경, 노동)

- (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말은 1987년 세계 환경개발 위원회(WCED)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우리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 “미래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말의 정의를 내렸다.
우리들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에 힘쓰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 교육, 건강, 사회 보호, 일자리 기회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는 전략과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 목표의 목적은 가난, 불평등, 기후 변화, 환경 파괴, 평화, 정의와 관련된 문제들을 포함하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UN에서 언급한 17개의 목표는 모두 상호 연결되어 있다.
- (나) 지난 10월 11일, 한국이 노동권 강화를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뤘던 것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가릴 심리 절차가 끝났다.
한국이 FTA를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한국과 EU의 통상 관계에 만만치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EU는 2018년 12월 한국이 한-EU FTA 규정을 위반했다며 무역 분쟁 절차에 돌입했다. 한국, EU, 제3국의 3자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 심리는 무역 분쟁 절차의 최종 단계에 해당한다.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제13장)은 양측이 ILO의 노동 기본권 원칙을 존중·증진·실현하고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를 위반했다는 게 EU의 주장이다.

[문제 1] 지속가능한 발전에 근거하여 기업에게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라.

[문제 2] 한-EU FTA 규정 위반에 대해 평가하라.

[답변예시]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말은 1987년 세계 환경개발 위원회(WCED)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우리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 "미래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말의 정의를 내렸다. 물론 여기서의 개발이란 먼저 자연 자원의 개발을 의미하는데, 생물 자원 또한 이러한 개발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ESSD)'의 개념이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핵심이며, 이는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 그리고 사회 발전을 조화시켜 현 세대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것이 미래 세대에게 전달되기를 지향한다.

즉, 기업과 개인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한-유럽연합(EU) FTA, 지속가능한 발전의 장)

지난 10월 11일, 한국이 노동권 강화를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을 미뤘던 것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가릴 심리 절차가 끝났다.

한국이 FTA를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한국과 EU의 통상 관계에 만만치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한국의 ILO 핵심협약 기준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EU는 2018년 12월 한국이 한-EU FTA 규정을 위반했다며 무역 분쟁 절차에 돌입했다. 한국, EU, 제3국의 3자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 심리는 무역 분쟁 절차의 최종 단계에 해당한다.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제13장)은 양측이 ILO의 노동 기본권 원칙을 존중·증진·실현하고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ILO 핵심협약 기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를 위반했다는 게 EU의 주장이다.

보고서에서 한국이 한-EU FTA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한국은 세계 FTA 역사상 노동권 규정을 위반한 첫 사례가 된다. 이 경우 국제적으로 '노동권 후진국'의 낙인이 찍힐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EU가 한국의 FTA 규정 위반을 빌미로 한국을 상대로 각종 불이익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분쟁 해결 절차 과정에서 ILO 핵심협약 기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EU 측에 설명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아직 비준하지 않은 4개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등 3개를 비준하기로 하고 지난 7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협약의 기준을 반영한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 노조 결성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선진국들은 통상 관계에서 상대 국가에 대해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추세다. 강제 노동을 시키거나 노조 가입의 자유를 박탈한 채 만들어낸 상품에 대해서는 무역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국내 노동권 수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게 장기적으로 통상 리스크를 해소하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089 국책사업과 건강권

충북 보은군 수한면 일대가 한전의 고압 송전탑 설치 문제로 시끄럽다. 주민이 찬반양론으로 갈려 대책위원회가 따로 꾸러지는가 하면, 일부 주민들은 소송까지 준비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8일 보은군과 한전 충북강원건설지사 등의 말을 종합하면, 보은군 수한면 일대에 2023년까지 154kV 규모의 송전 선로 설치 사업이 추진된다.

한전은 “송전 선로 설치를 위한 입지 선정위원회가 지난해 10월31일 주민에게 최적 경과지 안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이 같은 해 12월 변경안을 보내와 검토하고 있다. 당시 주민 대표 95%가 참석했고, 참석자 가운데 82.7%가 찬성했다. 적정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였다.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송전탑 설치 예정지인 수한면 묘서리, 소계리 주민 등을 중심으로 송전탑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안영찬 묘서1리 이장은 “산림, 농지 등이 어우러진 청정지역인데 송전탑이 설치되면 환경이 훼손되고, 생활여건, 축산 등의 피해가 우려돼 반대한다. 송전탑 설치 등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 설명과 찬반 투표가 진행됐다. 반대 대책위를 꾸려 소송에 나서는 등 송전탑 반대 운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상현 소계리 이장도 “송전탑 피해가 없거나 적은 마을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됐고,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 주민 설명회를 제대로 개최하고, 찬반 의견을 다시 묻는 등 적절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한면 묘서 1리엔 64가구 110여명, 소계리엔 49가구 110여명이 한우 축산·양계·과수 농사 등을 지으며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수한면 지역 주민 대표 등이 꾸린 대책위원회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문섭 수한면 송전탑 대책위원장은 “고압 송전탑이 지나는 게 달가울 리 없지만, 마을의 피해를 줄이려고 면의 뜻있는 분들이 모여 대책위를 꾸렸다. 지난해 12월 주민 대표 대다수의 뜻을 담은 대안을 한전에 제시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 전체 주민대책위에서 이탈한 몇몇 주민과 일부 토지주 등의 일방적 반대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문제] 사안의 쟁점에 대해 언급하고 논하라.

[답변예시]

사회갈등의 해법

(밀양 송전탑 사례에서의 갈등)

1. 갈등이란?

원래 갈등은 양립할 수 없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거나 인식의 차이로 서로 충돌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사회는 이해관계나 인식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어서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갈등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다. 갈등을 잘 풀어나가면 편익을 주지만 잘 풀지 못하면 해악이 될 수도 있다.

2. 우리 사회의 갈등해결 방법과 비용은?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느냐는 일률적이지 않다. 그러나 대체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워 밀리지 않고 고수하면서 그 주장과 주장이 충돌하여 때로는 일방의 승리로 끝나거나 조금씩 양보하여 타협하기도 한다. 하지만 종종 해결 없이 오래 동안 대결 상태로 지속되기도 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곤 한다. 경제적 비용 뿐 아니라 정신적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갈등의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3. 밀양 송전탑 문제의 해법은 있는가?

밀양 송전탑 문제는 갈등의 초기단계부터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전력이 울산에서 창녕까지 송전이 필요하다면 초기의 송전탑 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므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했었는데 좀 미흡했던 거 같다. 늦었지만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먼저 울산에서 창녕까지 송전탑을 건립하는 목표에 서로 동의해야 하고 그 다음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들을 모두 찾아내어 그것들을 인정하고 최대한 충족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민들의 재산권과 건강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법을 머리 맞대어 찾아보고 한전의 예산을 최소한에서 송전탑을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을 협력해서 찾아봐야 할 것이다. 서로 참여하고 협의하여 만들어진 방안은 모두가 수용하는 합의안이 되지 않을 수 없다.

4. 국책사업 추진의 리더십은?

갈등의 해결보다 갈등의 예방과 초기단계 대처가 중요하다. 국책사업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효율성과 경제성만을 고려하여 결정한 후에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미숙한 리더십이다. 대부분의 국책사업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대안개발을 위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충분히 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사전 조사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갈등을 미리 예상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하거나 갈등이 발생한 후에는 유연한 자세로 조율하는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5. 사회적 비용 낭비를 줄인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가?

최근의 한 예로서는 공주시 강남발전협의회가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갈등 없이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던 사례가 있다. 강남발전협의회는 제방에 밀집한 상가의 정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상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어 민원을 최소화하였다. 그래서 이 사례는 시민스스로 갈등을 해결한 지방자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보상 문제로 오래 동안 지연되면서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6. 바람직한 사회갈등의 해법은?

갈등의 해결은 상대방의 배려와 소통에 기초한다. 서로 상대방의 이익과 관심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와 주장에 갖혀 버리면 해법을 찾을 수 없고 무력으로 상대를 이기려 한다. 정부국책사업이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이해관계를 인정하고 충족시키면서 목표로 하는 바를 달성하려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주민들도 관심사항을 주장하면서도 정부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시민정신이 필요하다. 서로 건설적으로 문제를 풀려는 자세가 있다면 함께 참여하여 좋은 방안들을 반드시 만들어 합의할 수가 있다.

090 데이터센터 건립(경남, 환경과 개발)

환경단체가 2022년까지 들어설 예정인 경남 김해 엔에이치엔(NHN) 데이터센터를 반대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 주도권을 확보하고 한국판 뉴딜을 선도할 사업”이라며 큰 기대를 걸고 있으나, 환경단체는 “다양한 환경 위해성이 우려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와 김해시, 온라인 게임 등 정보통신 기반 서비스 업체인 엔에이치엔, 종합 금융부동산 기업인 에이치디시(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4일 경남도청에서 ‘엔에이치엔(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김해·양산 환경운동연합은 14일 “시민 불안 야기하는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한다. 김해시는 시민건강에 미칠 영향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엔에이치엔은 충분히 검증된 자료를 제출해 시민 불안부터 해소하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24시간 작동하는 서버가 내뿜는 열을 식히는 과정에서 고열의 수증기가 방출되면 인공 열에 의해 도시 온도가 올라가는 열섬현상이 김해 전역에서 발생할 것이다. 또 10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하는 양에 맞먹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파 방출량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서버를 식히는 냉각수에 첨가된 화학물질이 수증기와 함께 배출되면 시민들이 흡입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 또 오염수를 배출하면 낙동강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투자통상과 담당자는 “냉각수·전자파 등에 대해 검증해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이미 얻었다. 엔에이치엔이 운영하는 경기도 판교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냉각수·전자파 등의 문제를 직접 살펴봤는데, 그 지역에선 어떤 민원도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엔에이치엔도 ‘필요하다면 공인기관을 통한 실측 결과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문제] 사안의 쟁점에 대해 언급하고 논하라.

[답변예시]

환경과 개발의 문제(가치의 충돌)이다.

환경과 개발은 분명히 공존할 수 있는 '수준' 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수준이라는 것은 '해당 지역' 의 이해관계자들이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지속가능한 생존' 을 담보한다는 전제하에서 합의된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환경과 개발은 어떤 가치이다. 그것이 절대적인 이념이자 상대방과 대화조차 하지 말아야 할 광신적 신념이 아니라, 정반합의 논리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충분히 공존가능한 가치라는 점이다.

인간과 자연,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가능성은 이해관계자들이 '개인의 이익의 극대화' 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의 극대화'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진정한 이득이자, 우리의 미래의 생존까지 담보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어떤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시점' 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는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구적 가치를 위해서 희생만을 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조화'이다. '무조건 지켜야한다', '무조건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가치를 선택하던지 인간의 위대한 진보를 막는 어리석은 선택이다.

두 가치를 모두 옹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사안에서 데이터센터 자체는 지역민의 이익을 증대시킬 것이므로 설립을 막는 것은 방법이 아니며, 추진하되 환경운동연합의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납득할만한 검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환경친화적 센터를 건립해야 할 것이다.

091 젠트리피케이션

2018년 부부가 살던 방배5구역 재건축 사업이 본격 시작된 뒤 세입자 대부분이 이주했다. 박씨 부부는 방배동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마지막 세입자들 중 하나다.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 세입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30여 세대의 주거·상가 세입자가 남아 싸웠지만 5월11일을 기점으로 대부분 건디지 못하고 터전을 떠났다.

그날 방배5구역 사거리 ‘금호천막’ 건물에서는 용산참사를 방불케 하는 폭력적인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쇠파이프와 빠루(노루발못뽑이)를 손에 든 용역들이 크레인을 타고 옥상으로 밀려들었다. 박씨는 벽돌에 맞아 무릎에 금이 갔고, 또다른 상가세입자는 용역들에 발길질을 당해 전치 3주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법의 심판대에 오른 건 목숨을 걸고 저항한 세입자 쪽이다. 용역들과 부딪힌 한 세입자는 9월 초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 역시 4박5일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다. 유치장에서 나왔을 때 돌아갈 집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하루아침에 박씨는 노숙인 신세가 됐다. 그나마 재건축 세입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재건축 뒤 들어설 임대주택 입주다. 그러나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2008년 이전부터 방배5구역 내에 거주했어야 한다.

지난 17일 방배5구역 내 강제집행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내년 봄이면 본격적인 재건축 공사가 시작된다. 단독주택과 빌라가 늘어섰던 곳에 최고 높이 33층의 아파트 29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같은 날 박씨는 건너편 천막이 철거되는 걸 봤다. 갈 곳 없는 세입자들이 머물던 또 하나의 천막이다. 박씨도 언제 천막을 철거해야 할지 모른다. 이곳마저 허물어지면 박씨 부부는 거리 노숙인이 될 처지다. 한숨을 푹 쉬던 박씨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목에 걸 밧줄 매듭을 묶었다가 도로 천막 구석에 던졌다.

[문제] 사안의 쟁점에 대해 논하라.

[답변예시]

서구의 도시는 도심에 저소득 노동자와 이민자 등의 밀집 거주 지역이 형성되면서 도시 내에서 가장 노후하고 열악한 환경을 갖게 되었다. 저소득층은 도시 관리와 개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다른 계층에 비해 낮기 때문에 쇠락한 도심 지역은 서구 도시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남아 있었다. 최근에는 세계화에 따른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도시 쇠퇴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도시 재생이 가장 큰 정책적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이다.

도시가 쇠퇴하게 된 과정은 그 도시가 속한 국가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구조의 변화, 경제 여건의 변화, 지역 산업 기반의 침체 혹은 이전, 지역 자원의 고갈, 교외화, 공공 정책, 초기의 부실 개발, 환경 수준의 상대적 저하, 교통망의 발달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서구의 도시 구조에서 방치되어 왔던 도시 중심부 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경제적 활력을 부여하여 재활성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뉴어바니즘(New Urbanism),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 재생 정책은 다양한 사회·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쉬운 물리적인 환경 정비에 주로 치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비교적 빈곤 계층이 많이 사는 정체 지역에 진입해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주민을 몰아내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즉, 재생산업의 이익주체들은 외부인이 되며, 원주민은 결국 재생산업에서 소외된다.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원주민들의 입주권을 주는 것은 장기적인 주거권을 보장하지 못한다. 또한 분양권을 주는 것은 개발당사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개발요건에 있어서 이익주체들에게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이들의 거주권을 보호할 방안과 개발 완료 후 이익에 동참할 방안을 포함케 하는 것이다. 아울러 반대급부로 개발주체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에 영구임대아파트를 포함시켜서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하며, 용적률을 올려줌으로써 개발 이익을 보장해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공공정책]

(일반)

092 블라인드 채용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내용은 모두 가린 채로 진행되는 블라인드 채용이 시행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의 신상 관련 내용은 밝힐 수 없고, 입증자료수집도 불가하다. 최근 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뽑은 박사급 연구원 채용이 취소됐다. 연구 경력을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지원자의 출신 학교와 지도교수 등 세부 정보를 가린 채 진행해야 하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특성상 이 같은 혼란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블라인드채용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반해 블라인드 채용은 학벌, 지역 등 연고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채용의 불공정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반면 외국에서는 박사급 연구원에 대해서는 그의 능력의 지표가 되는 사항은 모두 기재하여 채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평가하라.

.....
[답변예시]

[참고조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찬성)

1. 합격과 탈락의 객관성을 높인다.
2. 경제적이다.(불필요한 자격증에 대한 비용 절감)
3. 학연/지연/혈연을 배제시킬 수 있다.

(반대)

1. 기업의 입장에서 신중(자세한 정보)하게 채용하기 어렵다.
2. 역차별이 발생한다.(능력과 노력에 대한 역차별)
3. 한정적인 정보로는 지원자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블라인드 채용 이외에 추가로 다른 채용방법을 고민할 수 밖에 없고 지원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093 혐오시설(냄비와 핏비)

6일 청주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이에스지청원은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산 74일대 1만4992㎡에 하루 처리 용량 165t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 소각장이 들어설 청주 북부권(북이·오창)엔 소각시설 3곳이 이미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에스지 소각장 예정지에서 10km 남짓 떨어진 북이면 주민들은 “소각장 때문에 10년 사이 암으로 60명이 숨졌다”며 지난해 4월 정부에 건강 영향조사를 청원해 환경부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최근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역 사회 반대가 있는 만큼 주민 협의체 구성, 주민 참여형 사후 환경영향조사 이행 등은 필요하다”며 “대기오염 방지시설 추가, 오염물질 유지목표 농도 설정·관리 등 협의 의견을 이행하면 오염물질 배출이 대폭 감소한다. 객관적 절차와 과학적 근거를 통해 (소각장 설치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청주시와 의회, 주민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소각장이 들어서면 미세먼지 농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충북은 2018년 미세먼지 나쁨(35 $\mu\text{g}/\text{m}^3$ 이상) 일수 102일, 지난해 82일을 기록해 2년 연속 미세먼지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전국 최악 수준인 청주의 미세먼지는 지형·외부 요인뿐 아니라 밀집한 소각장 등 내부 요인도 만만찮다”며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 설치하는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으로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문제] 사안의 쟁점에 대해 논하라.

.....
[답변예시]

넘비와 핼비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는 같음. 분담(공유)

즉, 특정지역에서 반대하는 사업의 경우, 그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고통을 분담(고통을 상쇄하고 남을 만큼의 지원)하는 것이고, 특정지역에 이익이 집중되는 사업의 경우 이익을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함.

배분의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094 국공립대 통합(대학의 자율성)

- (가)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 완성’ 움직임에 때 아닌 서울대 이진론이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얘기했던 ‘국공립대 통합’과 같은 맥락이다. 서울대와 지방 거점 국립대를 묶어 공동 선발·운영·학위로 가자는 방식인데, 프랑스의 모델을 빌려 온 것이다. 프랑스는 1971년부터 파리의 소르본 대학 등 대다수 대학을 국립화·평준화해 통합했다. 대학 입학 자격시험 ‘바칼로레아’를 통과하면 전국 모든 대학에 지원·입학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 수도 파리에선 파리 1대학은 경제·경영, 파리 2대학은 법, 파리 11대학은 의학 등 전공을 나눠 파리에만 총 13대학까지의 국립대학이 존재한다.
- 반면 국공립대 통합 반대 진영에선 이 같은 구상이 서울대 폐지론과 다름없다고 비판한다. 예컨대 서울대·경북대·강원대 등이 같은 공동학위를 받으면, 서울대를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또 명문대 선호에 따른 쏠림이 서울대를 제외한 고려대·연세대 등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학에 쏠린다면, 국공립대 통합의 주요 취지인 ‘대학 서열화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비판론자들은 파리대학을 13곳으로 쪼갠 프랑스 역시 ‘그랑제콜’이란 엘리트 고등교육기관을 둔 점을 주목한다.
- (나) 기여입학제도(寄與入學制度)는 학교에 기여를 하면 입학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기여입학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등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들은 대학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의 자녀들에게 입학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여입학 대상자는 1600점 기준의 SAT 점수에서 160점 정도 이점을 안게 된다고 한다. 미국의 명문 사립대를 중심으로, 부모가 대학의 동창인 경우 그 자녀들의 입학시 합격률이 보통 학생들의 합격률보다도 훨씬 더 높은 현상(Legacy Preference)을 보인다. 1920년대, 예일대는 아이비리그 중 최초로 동문자녀들의 입학에 우대하는 기여입학제도를 도입하였다. 아이비리그의 경우 기여입학이 10~15%정도를 차지한다.
- 옥스브리지를 비롯해 영국 대학들은 학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학력을 갖고 있는 경우, 부친이나 조부가 그 학교 출신인 경우나, 기부금을 낸 경우 가산점을 인정하는 등 제한적인 기여 입학에 허용하고 있다.

[문제 1] 국공립대 통합이 시사하는 바와 이에 대해 검토하라.

[문제 2] (나)의 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해 검토하라.

[답변예시]

[문제 1]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제이다.

전후 우리나라의 주요과제 중 하나는 교육이었다.

국가주도의 교육은 사교육도 망라하였고, 획일화되었다.

이는 빠른 교육강국을 이루는 성과도 있었으나 사교육이 갖는 교육의 다양성을 상실하는 역기능도 나타났다.

나아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되면서 급기야 공교육의 공적 기능마저 상실의 위기에 놓였다.

즉, 문제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획일화(다름이 없음)와 교육불평등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은 분리되어야 한다.

공교육은 공적기능을 사교육은 다양성을 되찾아야 하는 것이다.

공적기능 회복의 방법으로 공교육기관의 서열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시문의 주장과 같이 모든 국공립대학은 '공영 사립대 네트워크를 통해 입학, 교육과정, 교수인사, 대학원 공동운영, 네트워크별 공동학위 수여'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수진 역시 현 공무원제도에서의 순환보직제도와 마찬가지로 강제적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비 또한 국공립의 취지에 맞게 무상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교육은 철저히 국가의 간섭에서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즉, 다양성의 교육을 위해 사적자치의 원칙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오히려 국가지원이 아닌 자립적 자원마련의 여러 방법들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공립기관의 재정지원과 관리감독은 국가의 의무이며, 사립대학의 경우 (지원없이)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옳다.

[문제 2]

[찬성]

- ① 기부금입학의 허용 여부는 '사립대학'의 학생선발권과 관련해 논의되는 것이고, 기부금입학 허용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사립대가 진다는 점이다. 또 기부금입학은 광범위한 의미의 기여입학제도 중 하나로, 대학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하여 정원 외에 별도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돈만 많이 내면 무조건 원하는 대학교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부금입학생 때문에 내 자녀의 입학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 ② 대학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각 분야에 우수인력을 배출하는 것이다. 평등(equity) 대 우수성(excellence) 간의 교육이념 논쟁은 초·중등교육에 적용되는 것이며, 대학교육은 후자를 지향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물론 양자가 항상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이 좋은 인재를 뽑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불우하거나 소외된 계층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결과, 사회 전반적인 평등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후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불과하다
- ③ 교육 경쟁력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다.
- ④ 만약 기여 입학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여 입학제로 인해 들어온 돈을 가난한 학생 쪽으로 돌리게 한다면 교육의 평등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다
- ⑤ 세계의 대학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은 필수적이다.

[반대]

- ① 대학입학에 실력이 아닌 다른, 특히 금전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 사이의 위화감을 조성할 뿐이다.
- ②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공공성의 영역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교육은 분명히 공공성의 영역에 속한다. 교육에 기부된 재산은 공공성을 갖는다. 이 공공성이 개인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 ③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대학재정확충을 통한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필요로 하지만 이것이 곧 기여입학제를 정당화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부족한 것은 기존의 교육정책과 대학의 현실에서 유래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여입학제가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담보해주는 것은 아니다.

095 인재양성(충북,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

충북도와 11개 시군의 출연과 기탁금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충북인재양성재단(이사장 이시중 충북지사)은 지난 7일 충북지역 일반고 7~9곳을 뽑아 진로·진학, 학력 향상 등을 위해 최대 1억5천만원씩을 지원하는 교육 경쟁력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재단은 지원 분야로 △대입 맞춤형 지원 △학생 수준별 프로그램 지원 △체계적 진로·진학 컨설팅 △교원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수능 특강, 국어·영어·수학 집중 수업, 학생부 종합 전형 대비를 위한 차별 교육 과정 운영, 상위권 학생 심화학습·중위권 학생 보충학습, 외부 유명강사 초빙, 입시 컨설팅(상담)·학습 지도, 대학 정보 제공, 전국 우수학교 벤치마킹(견주기) 등이다. 재단 관계자는 “지원금 사용은 대입 대비 학원 강사 초빙 족집게 강의, 외부 입시 전문 상담(컨설팅) 인력 교육 현장 투입 등 모든 제한·제약을 풀고 학교 자율에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 평가하라.

[답변예시]

특권 의식을 조장.

충북도과 인재양성재단의 교육 경쟁력 사업은 자사고 설립 논란을 빚어온 이시종 충북지사의 시대착오적 교육관을 반영하는 학교를 찾아 입시 경쟁 교육을 하게 하고, 돈을 대는 특혜다. 당장 철회하고, 폐기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현 교육제도의 문제이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096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 (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출생아 수 추이는 2018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약30만 명 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출생아 수 기준 약 16만 명으로 약9% 감소했다. 지난 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 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에는 앞자리수가 바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한 올해 혼인건수 또한 작년동기대비 -10.9%로 감소했다. 통계청의 출생아 수 분석을 보면 2000년 7월대비 2020년 7월, 지난 20년간의 출생아 수 감소율이 -52.3%로 절반가량 떨어졌다. 꾸준한 출산률 저하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나)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 상승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OECD 국가들 중 유난히 한국 청년들에게 취업한파가 심하게 몰아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OECD 37개국 중 청년실업률이 증가한 국가는 6개국으로, 이 중 우리나라보다 실업률 증가폭이 큰 국가는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 이탈리아 뿐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지난달 실질 청년 체감 실업률은 25.4%로 4명 중 1명은 실업상태인 것으로 관련 통계 작성 후 최악 수준이다. 고용 한파가 '역대급'이란 비명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문제 1]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라.

[문제 2] 고령화 사회에 맞춰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평가하라.

[답변예시]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 책임이 크다면 그만큼 권한도 커져야 할 것이다.

승차운임 면제를 전면 시행한 해인 1984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3.9%였는데 반해, 31년이 지난 2015년 현재 65세 이상은 전체 인구의 13.2%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필연적인 결과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노령화가 심화될 앞으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고령화 시대가 20%가 넘으면 또 다시 노인 연령을 올릴 것인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들간의 형평성 문제이다. 차별철폐의 노력 의무는 우리의 헌법정신이기 때문이다. 소수의 노인은 지하철 역세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짜로 쉽게 타고 다니는데 어떤 노인은 시내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환승하느라 혹은 버스만 타고 다녀 손해를 보는 경제적 차별이 발생하고, 지하철이 없는 지방도시와 시골의 노인은 공짜지하철 이용을 아예 하지 못해 고스란히 이동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니 그 경제적 차별은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무임승차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르신 무임승차 비용보다 훨씬 큰 사회적 비용인 어르신 건강기능 증진을 위해 어르신들을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나와 돌아 다니시게 하는 일이 노령화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 중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후세들을 기르고 과도한 비용을 들여 자녀들 결혼까지 시키며, 노후가 보장되지 못한 채 노년을 맞이 하였으며, 지하철 승차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재력가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러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여 어르신들에게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이 시행된 것이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의 폐지는 복지의 역행을 의미하며, 무임승차의 폐지는 노인들의 유료승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이용을 안함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재정회복에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보자.(노인연령 상향과 같은 문제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책임을 부가하는 것이다. 그만큼 권한도 비례해서 상향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현실에서 노인들의 권한 상향의 영역은 국민연금의 수령비용을 늘리는 등의 방안 또는 노인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또 다른 계층인 청년들의 책임을 가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즉, 노인에게 책임을 부가하는 정책은 청년에게 책임을 부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다시 청년들의 권리를 상향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즉,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것이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정책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청년실업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70세로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만큼 권리영역에 대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의 문제는 일시적인 수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분리시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저출산 문제는 각 생애주기에 따른 구조적 대책(유아기 → 학령기 → 대학 → 취업 → 주택 및 결혼 → 양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출산 장려금 등은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간단히만 살펴봐도 교육제도의 개선없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어려운 것이다.

고령화 문제는 일자리 문제와 맞닿아 있다. 노인일자리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후 안정대책은 국민연금이다. 그러나 수령액이 노후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결국 국민연금도 빈익빈 부익부의 결과물이 되고 있다.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로 세수를 확보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것이다. 청년의 일자리를 눈높이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아니다. 임금격차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또는 임금격차 해소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의료)

097 연명의료결정법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충남 천안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56)의 기도에 삽관된 벤틸레이터(인공 호흡장치)를 손으로 완전히 뽑아 제거해 저산소증으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참여재판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A씨는 같은 해 5월 29일 오후 노인전문병원에서 아내와 함께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중 빈 병실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다. 곧바로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치료를 받게 했지만 아내가 쓰러진 원인이나 병명은 밝혀지지 않았다. 아내는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해 인공호흡장치 설비가 있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여전히 병명이나 쓰러진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이에 같은 달 31일 아들이 사는 천안 지역의 한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아내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에도 인공호흡기에만 의지하고 있어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하루에 20~30만원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된다고 판단, 호흡기를 떼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아내와 함께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중환자들이 연명치료를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삶을 이어가는 모습, 가족 모두가 심리적·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말했다.

[문제] 사례가 시사하는 바에 대해 논거하라.

.....
[답변예시]

경제적 불평등 = 의료수혜 불평등 = 생명연장의 불평등

사람은 누구나 살고자 한다. 내일 죽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죽고자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는가?

또한 환자의 가족들 또한 환자가 조금이라도 더 살기를 원할 것이다.

연명을 중단하려는 이유는 둘로 나뉘볼 수 있다.

환자입장에서도 고통이며, 환자가족 입장에서의 고통이다.

의료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의 물리적 고통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며, 가족의 고통은 경제적 고통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적부조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두 주체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누구 죽음을 선택하겠는가?

연명의료결정법은 죽음을 선택하게 하는 권리이다. 삶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함께 주어져야 할 것이다.

즉,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법 제도(호스피스 시스템의 확보)와 함께 시행될 때 정당화 될 것이다.

설령 안락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워'는 안락서를 인정할 요건이 되지 않는다(국가의 책임).

사안에서 A씨의 책임을 묻기 이전에 국가의 책임부터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098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의사 국가고시(국시) 거부를 중단했으나 국시 응시 의사를 밝히지 않아왔던 전국 의과대학 4학년 학생들이 국시를 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24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본과 4학년은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환경 정립에 있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끝으로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는 국가의 신뢰 문제”라며 “국가가 정한 기본 원칙과 약속은 굳건히 지켜져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며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제] 의사국가고시 재시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라.

.....
[답변예시]

공공의대에 대한 정책에 대한 반대와 국시거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험의 응시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며,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예측가능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시 응시 기회를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면 법적 착오이다)

또한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국가 또한 국민적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책임전가일 뿐이다.

또한 의협에서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오는 28일까지 응답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함을 의미한다.

예외적으로 국가는 공공의대에 대한 논란에 따른 국시거부의 따라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바 있다.

099 코로나19 구상권 청구

제주도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다량의 해열제를 복용하면서 제주 여행을 강행한 관광객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도는 경기 안산시 거주 ㄱ씨가 제주여행 기간에 몸살과 감기 기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지만 검사를 받지 않고 제주여행을 강행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50분께 제주도에 입도해 3박4일 동안 전세버스를 이용해 제주도내 유명 관광지 및 맛집 등 단체 관광을 한 뒤 18일 오전 12시35분 제주를 떠났다.

ㄱ씨는 제주도에 도착한 다음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껴 여행 기간 이틀 동안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면서 10여 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다.

도는 이와 관련해 ㄱ씨 일행 접촉자 57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와 확진자 방문 장소 21곳에 대해 방역소독을 했다.

한편 광주시는 거짓진술로 감염확산을 초래한 ㄱ씨를 감염병 예방법 제18조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ㄱ씨는 지난 15일 송파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도 역학조사에서 지난 10~12일 광주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ㄱ씨의 친인척의 신고를 받고 역추적해 17일야 ㄱ씨가 연쇄감염의 연결고리라는 사실을 찾아냈다. 이에 1억1200만원(건당 14만원)과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700만원 등 직접비용만 2억2000여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이를 물리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 귀하가 판사하면 사안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
[답변예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다른 사람이 갚아야 할 돈을 대신 갚아주고 원래 빚이 있는 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검사 및 치료비용을 우선 부담하기 때문에 나중에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코로나19를 전파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손해배상'이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구상권이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면, 손해배상은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코로나19 전파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었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는 등의 손해를 입은 개인도 코로나19 전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그 위법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과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하다.

(반려동물)

100 반려동물등록세, 반려동물 허가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약 29.4%라고 한다. 이는 곧 국민 5명 중 1명이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반려동물의 수만큼이나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동물보호센터에 구조·보호된 유기동물은 12만 1,077마리로 2017년(10만 2,593마리)보다 18%나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유기동물이 늘어나면서 구조·보호 비용을 포함한 운영비도 전년(155억 5000만원)에 비해 28.9%가 증가한 200억 4000만원이 소요되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7월 발간한 ‘반려동물 정책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에서 ‘지방세로 반려동물 등록세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소유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반려동물 등록세는 일종의 ‘목적세(특정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징되는 조세)’ 개념이라고 한다.

우리보다 앞서 반려문화가 정착된 유럽 등의 해외 국가에서는 이미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반려동물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이 가장 대표적인 나라이다. 도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반려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위험견종(맹견)으로 지정된 개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일반 반려견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된다. 오스트리아도 상황은 비슷하다. 반려동물에 대한 연간 세금이 부과되며, 2마리 이상의 반려동물부터는 2배 이상의 세금이 부과된다.

한편 아시아 국가 중에는 싱가포르의 반려동물 허가제도가 눈에 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와는 조금 달리 싱가포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년에 약 5만 7000원 정도의 발급비가 부과되며, 허가증은 3년 주기로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허가증을 갱신할 때도 새롭게 갱신비가 부과된다.

[문제] ‘반려동물등록세’와 ‘반려동물 허가제’에 대해 검토하라.

.....
[답변예시]

권한과 책임의 문제이다.

반려동물등록제는 신고제라고 할 수 있다.

등록세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 놀이 공간, 향후 소각장, 납골당 등의 건립 및 이용에 대한 혜택을 줌으로써 책임에 대한 권한을 옹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반려동물 허가제는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목수침법으로 검토하면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권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목적이라면 정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여부에 대해 평가해보면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누릴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여지는 있으나 오히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권리(유기 등을 방지)를 옹호하고자 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동물의 생명권(공익)도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만족하여 종합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아울러 강아지 공장이나 펫숍 등에 대한 규제도 필요할 것이다.

